
2027 경제계 정책의견

2026. 10

[요 약]

1. AI 대전환 및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 하늘색 음영: 소관 부처, 파란색 글씨: 소관 상임위원회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1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 과기정통부 과방위	• 피지컬 AI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 • AI·로봇·자율주행 등 분야별로 법률이 분산되어 종합적 지원체계 부재	•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
2	AI 시설 및 R&D 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 확대 재경부 재경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도 투자세액공제 배제 • 민간 데이터센터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AI 투자 위축 우려	• 과밀억제권역 내 국가전략기술 관련 AI 사업화시설 및 R&D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허용
3	AI 데이터센터 전력조달을 위한 직접 PPA 특례 범위 확대 기후부·과기정통부 과방위	• AIDC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직접 PPA 특례만 규정 • LNG·집단에너지 등 안정적 전원이 배제되어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 취지 약화	• 직접 PPA 특례 대상에 LNG 및 집단에너지 사업자 포함
4	메가특구/AIDC 특별법상 이동통신 네트워크 지원 근거 마련 과기정통부·산업부 과방위·산자중기위	• AI 데이터센터특별법·메가특구는 전력·용수·부지·인허가 등 기반시설 지원에 집중 • AI 인프라 간 실시간 연계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체계 미흡	• AIDC특별법·메가특구법상 지원 대상에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고도화 포함 • 5G 신규 주파수 적기 할당 및 재정·세제 인센티브 마련
5	AI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노동부 기호한노위	•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는 반도체·소부장 등에 한해 인정되며 AI 연구개발은 미포함 • 모델 개발·학습 등 특정 단계에 인력 투입이 집중되나 탄력적 대응 곤란	• AI 연구개발 근로시간 특례 신설(근로기준법 개정) • 법 개정 전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 지침에 'AI' 추가
6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저작권 규제 개선 문체부 문체위	• 주요국은 AI 학습 목적 저작물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나, 국내는 면책조항이 없으며 공정이용 해당 여부 예측 곤란 • 권리처리 비용·시간 부담으로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 어려움	• AI 학습(TDM) 목적의 저작물 이용 특례 신설(저작권법)
7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제공요구 금지조항 AI 활용 개선 공정위 정무위	• 원수급사업자 간 협업자료의 AI 활용이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AI 도입 이전 기준으로 설계 • AI 활용 목적의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 및 비밀유지계약상 이용 범위 판단 곤란	• 일반 자료와 핵심 기술자료 구분 기준 마련 • 보안체계를 갖춘 경우 'AI 업무 활용'을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로 인정

8	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 [복지부·개인정보위] [복지위·정무위]	- 의료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생명윤리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있음 -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데이터 제공 유인도 미흡	- 의료데이터 활용을 총괄하는 「의료데이터 활성화 특별법」 (가칭) 제정 - 의료데이터 표준(KR-CDI) 조기 의무화 및 의료데이터 제공 대가 근거 마련
9	감염병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의 민간 연구 활용 제고 [복지부·개인정보위] [복지위·정무위]	- 보건당국은 예방접종 이력·이상반응 등 감염병 연구에 필수적인 데이터 보유 - 감염병 데이터의 민간 신청·심사 절차가 불명확해 기업의 활용 제한	민간 기업이 학술·공익 목적으로 감염병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및 기준 마련
10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미통위]·[과방위]	- OTT·UGC 등 온라인 시청각미디어까지 방송 유사 규제를 확대하는 입법 논의 진행 - 매체 특성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방송 수준 규제 적용 시 비례성 논란 및 중복규제 우려	- 기존 법률과의 중복 여부 점검 및 신규 규제 최소화 -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수준 차등화
11	3G 서비스 조기 종료를 위한 정책 지원 [과기정통부]·[과방위]	- 이동통신사가 3G 서비스 종료에 착수했으나 이용자 보호·전환 지원 기준 부재 - 종료 승인 지연이 우려되고, 차세대 망 투자로의 연계를 위한 정책 유인도 부족	3G 종료 승인을 위한 이용자 보호·전환 지원 기준 구체화 - 망 현대화 정책과 연계한 투자 인센티브 마련

2.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 하늘색 음영: 소관 부처, 파란색 글씨: 소관 상임위원회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12	항공·우주 : 핵심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발 인프라 조성 [과기정통부]·[과방위]	- 한국의 우주항공 사업예산은 6억\$로 미국의 0.78% 수준에 불과 - 발사체 대형엔진 기술 등 핵심기술 수준이 주요 선진국 대비 미흡	- 위성통신 산업 집중 육성 및 연 1.5조원 이상 예산 확보 - 민간 주도 우주개발 전환 및 공공 우주정보 민간 개방
13	반도체특별법 타당성재조사 면제 근거 신설 [산업부·기획처] [산자중기위]	- 반도체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만 두고 타당성재조사 면제 근거 부재 - 추가 국비지원 시 타당성재조사(최대 18개월)로 반도체 인프라 적기 구축 차질	국비를 지원받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추가 지원 시 타당성재조사 면제 근거 마련
14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허가 패스트트랙 및 배후시설 특례 확대 [국토부·산업부] [국토위·산자중기위]	- 건축허가·환경·안전 협의가 순차 진행되어 첨단전략산업 투자 지연 - 신속처리 특례가 특화단지 조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기업 신증설 및 주거 등 배후시설 지원에 한계	- 신속처리 대상을 배후 정주시설까지 확대 - 공장 고도제한 완화 및 임시 사용승인 전 설비 선반입 허용

15	반도체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한 비영리재단 출연 과세특례 신설 재경부·산업부 재경위·산자중기위	- 반도체 테스트베드(트리니티팹) 운영재단의 증여세 비과세 특례 신설 추진 - 출연기업 측 과세특례가 없어 출연금· 시설·인력 제공에 따른 세 부담 발생	- 출연기업의 현금·시설·인력 출연분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 반영 - 시행일 이전 증여분 소급 적용
16	트리니티팹의 혁신도전형 R&D 지정 및 조달절차 특례 부여 과기정통부·산업부·기획처 과방위	- 소부장 양산검증 테스트베드(트리니티팹, '27년 예정)의 첨단 장비의 적기 구축 필요 - 일반 경쟁입찰 중심 조달절차로 장비 도입 지연 및 구매조건 악화 우려	트리니티팹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지정하여 수익계약 허용 및 도입절차 신속화
17	국가전략기술 이차전지 분야 확대 :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BESS) 재경부·산업부·기후부 재경위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BESS 보급 확대 추진 - BESS 시설은 국가전략기술이 아니어서 투자세액공제율이 1%(대기업)에 그침	- BESS 설치·운영 관련 기술· 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투자 보조·용자 지원 확대
18	배터리업계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평가시설 구축 산업부·산자중기위	- ESS 보급 급증으로 안전·성능 검증 수요 증가, 중국은 대규모 시험시설로 시장 선점 - 국내에는 실규모 시험·인증 기반이 없어 해외 기관 의존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	- 국제표준과 연계된 ESS 실규모 공동평가시설 구축 - 국가 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MRA) 체계 마련
19	국가전략기술 바이오 분야 확대 : 합성 의약품 재경부·복지부·재경위	-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은 백신·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지정 - 합성의약품은 미지정되어 신약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한계	국가전략기술 지정 범위를 합성의약품(합성신약·원료의약 품)까지 확대
20	방산: R&D·생산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재경부·재경위	- 방위산업은 국가전략기술보다 지원 수준이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원 - 낮은 영업이익률로 국방 R&D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계약금액이 사후 확정돼 부가세 산정 및 정산에 애로	-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방산 분야 추가 - 국방연구개발 연구·생산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1	우주기술 기술료 부담 완화를 통한 산업체 기술 활용 활성화 과기정통부·과방위	- 정부 R&D 우주기술 이전 시, 실제 수익 발생 이전에 고정 선급 기술료 부담 - 정부 공공사업에 R&D 성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술료 부담 발생	- 매출사업화 수익과 연계한 성과연동형 기술료 방식 확대 - 공공사업 활용 시 기술료 면제·감면 기준 마련
22	위성용 태양전지·PVA 등 우주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체계 마련 산업부·산자중기위	- 위성용 태양전지·PVA는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기존 R&D는 지상용 중심 - 공급망·수출통제 리스크가 크고 우주 전용 R&D·실증 지원 부족	- 우주용 태양전지 셀·PVA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지정 - 개발~궤도실증 연계 전용 R&D 트랙 신설

23	드론 시험공역·시험비행장 구축 국토부·국방부·방사청 국토위·국방위	• 국내 드론 시험공역은 수 km급에 그쳐 장거리 군용 무인기 임무성능 검증 곤란 • 비가시권·야간 시험마다 별도 승인과 군·민 공역 조정 필요	• 국가급 무인기체계(UAS) 시험장 및 장거리 시험회랑 지정 • 민·군 공동 시험통제 체계 구축
24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국방부·산업부 국방위·산자중기위	• 대기업 연구기관은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 및 전직이 원칙적으로 제한 • AI 분야만 한시적으로 대기업 배정이 허용되어 반도체·이차전지 등은 제외	• 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기업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허용 • 대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제한 완화
25	각종 부담금 감면을 통한 첨단산업 비용 부담 완화 산업부·기획처 산자중기위·재경위	• 특화단지 부담금 감면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 감면 항목도 일회성이고 사업시행자 위주로 구성되어 실효성 저하	• 부담금 감면 적용 대상을 대기업 포함 • 전력산업기반기금·물이용부담금 등을 감면 항목에 추가
26	산업단지 내 증설 건축물의 별도 건축허가 특례 마련 국토부·국토위	•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별도 증설·대수선 시 기존 허가의 변경으로만 처리 •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인허가가 순차 진행되어 공사 지연	•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 내 증설 건축물은 기존 허가와의 분리하여 별도 허가 허용
27	산업단지 산업용지의 분할·처분 및 임대 특례 확대 산업부·산자중기위	• 산업용지 분할·처분 및 임대사업 입주 계약은 공장설립 완료신고 이후로 제한 • 반도체클러스터 협력사 부지 공급과 SPC를 통한 팹 건설·임대 곤란	• 첨단전략산업 분야 공동출자 법인의 생산시설 건설·임대 허용 • 완료신고 전 협력사 부지 분할·처분 허용
28	정책펀드 공동출자법인의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인정 행안부·행안위	•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은 취득자의 직접 사용(중소기업 임대 예외)에 한정 • 공동출자법인(SPC)이 공장을 건설·임대 하는 구조는 감면 제외	• 공동출자법인의 임대에도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인정 • 사업회사가 공동출자법인에 매각·임대 시 추징 제외
29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 권역 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원 국토부·국토위	•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 면제 및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도 과밀억제권역과 동일 기준을 적용받아 민간투자 위축	•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50% 경감 • 기반시설 설치비 50% 지원
30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한 하수재이용 관련 지원 확대 기후부·산업부·기획처 기후환노위·산자중기위 재경위	• 반도체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하수재이용시설은 주로 민자(BTO) 방식과 일부 국비 보조로 추진 • 민자 절차 장기화와 낮은 국비 지원(총사업비 40%)으로 적기 용수 확보 곤란	• 반도체클러스터·특화단지 하수재이용시설 민자 절차 단축 • 하수재이용시설을 필수 용수 공급시설로 명시하고 지원 확대

31	수용재결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 개선 국토부·국토위	- 수용재결 불복 시 이의재결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직행 가능 - 실무상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이 동시 진행되어 사업시행자 대응 부담 가중 및 보상 조기 종결 곤란	- 이의재결 신청 시 결정 전까지 행정소송 제기 제한 - 행정소송 제기 후 이의재결 신청 불허
----	--	--	---

3.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 하늘색 음영: 소관 부처, 파란색 글씨: 소관 상임위원회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32	유화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유휴설비 철거·폐쇄 지원 근거 마련 산업부·산자중기위	-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 생산능력 감축 및 사업재편 추진 중 - 폐쇄 설비의 철거·환경 복구 비용 지원 근거가 없어 재편 유인 저하 및 설비 방치	사업재편에 따른 설비 철거·위험물 처리 비용 지원
33	무탄소에너지 인증 및 거래체계 마련 기후부·기후환노위	- 공급망 탄소 배출량 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등으로 전력부문 탈탄소 요구 증대 -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의 생산·소비·거래 관련 제도 부재	- 무탄소에너지 정의 및 인증 규정 신설 - 무탄소에너지 개념의 국제 표준화 추진
34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 확대 재경부·기후부·재경위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30년 100GW)와 현재 설비용량 간 격차가 큰 상황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이 낮아 투자 유인 부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구간(20~30%) 신설
35	GHG 프로토콜 전력 시간단위 매칭 기준 강화 기조 대응 기후부·기후환노위	- GHG 프로토콜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조달 인증 기준에 시간·지리적 매칭 기준 강화 전망 - 전력데이터 인프라가 미흡한 국내 기업은 재생에너지 활용에 한계	- 개정 동향 모니터링 및 유예기간·단계적 적용 등 정부 공식 의견 제시 - 시간단위 재생에너지 데이터 인프라 구축
36	직접 PPA의 N:N 계약 방식 허용 기후부·기후환노위	- 직접 PPA 계약은 1:1, N:1, 1:N 형태로만 제한 - 중소·중견기업과 소규모 발전설비의 PPA 참여가 제약되어 RE100 활성화 저해	- 다수 발전소와 다수 전기사용자 간 N:N 직접 PPA 허용 - 공공기관의 집합(pooling) 중개 검토
37	대수력 발전의 직접전력거래(PPA) 허용 및 정산기준 마련 기후부·기후환노위	- 대수력은 단·중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 수단이나 전력거래소 급전지시에 따른 중앙급전발전기로 운영되어 PPA 활용 제약 - 직접전력거래 계약분 정산 및 급전제약 처리 기준 미비	- 계통 안정성 유지를 조건으로 대수력 PPA 단계적 허용 - 계약분 정산 및 급전지시 처리기준 마련

38	PPA 부대비용 경감 및 인센티브 확대 기후부·기후환노위	•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주요국 대비 1.5~3배 수준 • PPA 부가정산금·거래수수료 등 시스템비용이 추가되어 기업의 RE100 이행 부담 가중	• RE100 이행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PPA 부대비용 한시 면제 및 지역·시간대별 망이용요금 차등 할인
39	전기 사용자의 PPA 가격구조 선택권 확대 기후부·기후환노위	• 직접 PPA 거래단가 변경 시 효력발생 1개월 전까지 변경신고 필요 • 전력요금·시장지표 연동 등 단가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계약 불가	• 가격 산식을 최초 신고 시 확정된 경우 산식에 따른 단가 변동은 사전 변경신고 없이 적용
40	전기사용자 투자연계형 직접 PPA 인센티브 제도 도입 기후부·기후환노위	• RE100 이행수단으로 직접 PPA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 • 전기사용자가 발전사업에 지분투자해 위험을 분담해도 일반 직접 PPA와 동일한 부가비용 부담	• 일정 지분 이상 투자한 전기사용자의 PPA 수수료·부가비용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41	지분 보유 PPA 초과발전량에 대한 Banking 제도 도입 기후부·기후환노위	• 직접 PPA 초과발전량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거래 • 전기사용자가 발전소 지분을 보유해도 초과발전량 활용 권한 제한	• 일정 비율 이상 지분 보유 시 초과발전량을 예치 후 사용하는 Banking 제도 도입
42	석유화학제품 품질·안전·환경 관리체계 고도화 산업부·산자중기위	•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저가 수입제품이 늘며 품질·안전·환경 기준의 중요성 증가 • 원료·제품별 관리가 개별 법령에 분산되고 일부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음	• 국내산·수입산에 동일 적용되는 품질·안전·환경 기준 단계적 고도화
43	석유화학 전용부두 접안능력 재평가·합리화 산업부·해수부·산자중기위·농해수위	• 일부 석유화학 전용부두는 준공 당시 기준으로 접안능력이 설정됨 • 대형선 접안이 가능해도 기존 접안능력 기준에 묶여 운송비 절감 곤란	• 산업부·해수부 공동 전용부두 접안능력 일괄 재평가 • 안전성 확인 시 접안 선박 규모 신속 조정
44	도시가스사업법 내 LNG 냉열이용자 정의 개편 산업부·산자중기위	• LNG 재기화 시 발생하는 미활용 냉열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 • 현행법은 냉열이용자를 LNG 대량수요자로 한정해 천연가스를 직접 구매·소유하지 않는 사업자는 미포함	• LNG 냉열을 회수하여 발전·냉열 공급을 영위하는 자도 냉열이용자에 포함
45	기화 후 천연가스 반환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산업부·산자중기위	• 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 과정의 천연가스를 자기소비하거나 법적 대상에게만 처분 가능 • 기화된 천연가스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명확	• 기화 후 천연가스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처분'에서 제외

46	LNG 제조소 경계 외부 냉열 배관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산업부] [산자중기위]	• LNG 미활용 냉열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 • LNG 제조소 외부로 냉열을 공급하는 배관의 설치, 안전기준이 미비	• 제조소 외 냉열 배관 안전기준 신속 정비 • 규제샌드박스·유권해석 신속 처리
4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적용대상 내 미활용 냉열 포함 [기후부] [기후환노위]	• LNG 재기화 과정의 미활용 냉열을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폐열에 해당 냉열 포함 여부가 불명확해 지원 근거 부재	• 폐열 정의에 LNG·액화수소 미활용 냉열 포함
48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한 합리적 보전 체계 마련 [기후부] [기후환노위]	•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체계를 열 부문으로 확대하는 열에너지법 제정안 계류 중 • 바이오매스를 열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연료비 보전 체계 부재	• 열에너지법 조속 제정 • 하위법령에 바이오매스 열원 비용 보전 체계 마련
49	소각시설 탄소포집활용(CCU) 설비 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 [기후부] [기후환노위]	• 폐기물 부문은 '30년까지 46.8% 감축 필요, 소각시설 배출 비중이 약 40% • CCU 설비는 경제성이 낮고 지원 기준이 없어 설치 사례 미미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CCU 설비를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50	친환경 : 생분해 플라스틱 처리 기술을 신산업으로 육성 [재경부] [재경위]	•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퇴비화 기술은 미포함 • 글로벌 시장 고성장 전망에도 인센티브 미비로 기술개발 난항	• '생분해 플라스틱 퇴비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
51	기후대응기금 활용체계 보완 [기후부] [기후환노위]	•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주 재원이며, '26년 운용 규모 2.9조원 • 예산에 비해 활용분야가 광범위해 목적성이 불분명하고 투입 효과 미약	• 기금을 탄소감축 설비 투자에 우선 활용 • 기존 투자건에 대한 OPEX 및 초기시장 형성 지원
52	고효율 가전 환급 사업 전국민 대상 확대 시행 [기후부] [기후환노위]	• 고효율 가전 환급 사업은 복지할인 가구와 소상공인만 지원 • 제한적 대상·예산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내수진작 목표 달성 곤란	• 전국민 대상 환급 사업 시행('25.6월 사업예산 수준) • 지원 품목 확대

4. 서비스·콘텐츠 산업 육성

* 하늘색 음영: 소관 부처, 파란색 글씨: 소관 상임위원회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53	서비스업 도약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재경부 재경위	- 제조업은 종합 지원법과 투자지원 장치가 있으나 서비스산업은 개별 법률만 존재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63.4%)이 주요 선진국(70% 이상) 대비 저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정
54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산업부 산자중기위	-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및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거래(구매·배송)도 금지 - 타 온라인 채널과의 형평성 위배 및 소비자 후생 감소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제외
55	관광특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용 제외 문체부·산업부 문체위	- 방한 외국인의 주요 쇼핑 채널인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에도 의무휴업 규제 적용 - 주말·공휴일 의무휴업으로 관광객 쇼핑 편의 및 관광특구 활성화 효과 저하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적용을 제외 (관광진흥법)
56	가맹점 점포 규제 완화로 유통서비스업 활성화 산업부 산자중기위	- 대기업 등의 체인사업형 점포는 준대규모 점포로서 대형마트와 동일한 영업규제 적용 - 운영 주체가 소상공인인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점포는 준대규모점포 범위에서 제외
57	공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재경부 재경위	- 영상콘텐츠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콘서트·뮤지컬 등 공연콘텐츠는 제도 부재 - 단발성 보조금 위주 지원으로 민간 자본 유입 및 대규모 투자 유도에 한계	공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58	한국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규제 완화 중기부 산자중기위	- 대기업집단 소속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벤처투자회사(VC) 투자는 원칙 제한되며, 중소기업 수익지분 요건만 한시 완화 - 요건 완화(60%→20%)가 3년 한시 조치이고 운영기준도 불명확해 투자 활성화 효과 제한	- 중소기업 수익지분 요건 완화규정 상시화 - 세부 운영기준 명확화

5. 공급망 재편·경제안보 대응

* 하늘색 음영: 소관 부처, 파란색 글씨: 소관 상임위원회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59	공급망 보안강화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공정위·산업부 정무위·산자중기위	- 중소 협력사 대상 사이버 침해 및 기술유출 증가로 협력사에 대한 보안 지원 필요성 확대 - 협력사 보안 지원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상 경영간섭으로 해석될 우려	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공급망 보안 강화 조치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예외 규정 마련

60	통신 분야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전문위원회 운영 합리화 [산업부] [산자중기위]	• 상용화·표준화가 진행된 LTE-5G 일부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관리 • 해외 AI 활용·공동연구에 시간·행정 부담이 크고 전문위원회 대응 부담 발생	• 성숙한 LTE-5G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검토 • 전문위원회 정기 심사를 서면심사로 간소화
61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개선 [재경부] [재경위]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는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에 한정되고 공제율도 3% • LNG 액화·수송, 핵심광물 정제·제련 등 후속 설비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공제대상 확대: 사업용 자산·정제·제련시설 투자 등 • 세액공제율 확대(3%→10%) 및 핵심광물 개발 추가 공제
62	고위험국 특별계정 금융지원 적용범위 확대 [재경부] [재경위]	•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은 신규 사업 중심으로 운용 • 불가항력적 사유로 중단된 기존 계약사업의 정상화 지원에 한계	• 불가항력으로 중단된 기존 계약사업도 금융지원 확대
63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추진으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재경부·산업부] [재경위·산자중기위]	• 한국은 WTO 민간항공기협정(TCA)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관세법상 항공기 부품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28년) • 일몰 시 원산지 증명 곤란으로 FTA 활용이 저조해, 관세 면제 종료 시 항공사 수익성 악화 우려	• WTO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 • 단기적으로 관세 면제 일몰 연장('28→'30년)
64	국가 식량안보 개념 명문화로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확립 [농식품부] [농해수위]	• 중국·일본은 식량안보 개념을 법제화했으나, 현행 농업식품기본법상 식량안보 개념 부재 • 곡물 자급률(19.5%)이 주요국 대비 낮아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 시급	• 농업식품기본법 목적 조항에 국가 식량안보 개념 명문화

6. 기업 제도의 합리적 정비

* 하늘색 음영: 소관 부처, 파란색 글씨: 소관 상임위원회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65	규제 도입 전 사전심사 절차 마련 [국조실] [정무위·운영위]	•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영향분석·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미적용 • 체계적인 검토 없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양산 우려	• 의원입법 규제안도 규제영향분석 실시 • 규제입법안 공청회 원칙적 의무화 등 속의 절차 마련
66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경제인 배임죄 개선 [법무부] [법사위]	• 불명확한 '임무 위배' 구성요건으로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수사·기소 빈번 • 주요국 대비 과도한 처벌로 모험적 투자와 경영판단 위축	• 배임죄 폐지 • 대체입법 시 목적범·침해범화 및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67	'경영판단의 원칙' 상법 명문화 [법무부] [법사위]	• 경영판단의 원칙이 상법에 명문화되지 않고 판례로만 인정 • 법원의 소극적 적용으로 기업인의 위험 감수와 적극적 투자 결정 위축	•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 • 충분한 정보·선의의 판단·합리적 신뢰 등 요건 명시

68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 확보 법무부·법사위	•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주요국이 인정하는 방어수단은 미도입 •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경영권 공격수단만 지속 강화되어 분쟁 대응 비용 증가	•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도입 • 상장사 차등의결권주식 발행 허용
69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개선 공정위·정무위	• 담합·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외 경제력집중 규제까지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OECD 중 한국이 유일 • 정부의 형벌 정비에 일부 분야에 그침	• 공정거래법 벌칙 규정 삭제 • 행정제재(과태료·과징금 등) 부과 후 불이행 시 형벌 부과
70	형벌 폐지와 과징금 상향의 동시 입법으로 제재 중첩 해소 공정위·정무위	• 형벌 폐지(24개 유형)는 입법이 지연되는 반면, 과징금고시는 상향 시행('26.4월) • '26.1~8월 과징금 약 2.5조원, 일부는 영업이익의 3~8배로 제재 중첩	• 과징금 상향과 형벌 폐지 동시 입법, 벌금액의 과징금 공제 규정 신설 • 과징금 최종 상한 법정화
71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명확화·처벌체계 합리화 노동부·기후환노위	• '경영책임자등' 정의와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등이 불명확해 의무 예측 곤란 • 처벌은 과중하나 의무 이행 노력에 따른 감경·면책 기준 미흡	•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책임주체·범위 명확화 • 감경·면책조항 신설 및 형량 합리화
72	승강기 유지관리비 '최저가격제' 도입 행안부·행안위	• 표준유지관리비는 권고에 그쳐 실제 계약가는 권장가의 절반 수준 • 저가 계약으로 점검 인력·시간이 축소되어 부실 점검·고장 반복	• 유지관리비 최저가격제 법제화 • 유지관리업체 자격요건 강화 및 적격업체 중심 계약 문화 확산
73	승강기 '중대한 사고' 판단기준 합리화 행안부·행안위	• 부상자 1명(1주 이상 입원 등)만 발생해도 중대한 사고로 분류 • 산안법·건진법 대비 과도한 기준으로 경미한 사고에도 행정력 분산	• 부상기준을 산안법·건진법 수준으로 조정
74	Negative 전환을 통한 규제 시스템의 혁신 국조실·정무위	• 행정규제기본법상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권고적 규정에 그쳐 네거티브 전환 미흡 • 포지티브 규제와 한시적 규제특례 의존으로 신산업 시장 진입 제약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강행규정화 • 신기술 관련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개선 의무화
75	규제개혁 추진체계 일원화 및 규제 차르(Czar) 임명 국조실·정무위	• 역대 정부마다 별도 규제개혁 기구를 신설하여 병행 운영 • 추진체계 분산과 비상임 위원 위주 운영으로 실효성 저하	• 규제합리화위원회 중심으로 추진체계 일원화 • 상임 '규제 차르'를 두는 상설 체계로 법제화

76	신산업 진입규제와 '덩어리' 규제의 혁파 국조실, 정무위	• 기존 산업을 전제로 한 규제가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규제로 작용 • 여러 부처·법령이 얹힌 덩어리 규제는 개별 규제 개선만으로 해소 곤란	• 일몰 규제 원점 재검토 및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부처 간 조정 기능 강화 • 부처 성과평가를 기업 체감도 중심으로 개편
77	갈라파고스 규제 개혁 및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최소화 공정위·법무부·금융위, 정무위·법사위	•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금산분리 등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규제 존재 • 자산규모별 차별규제가 61개 법령 342개로, 기업의 성장 기피 유발	• 국제기준과 차이가 큰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사후규율로 전환 • 규모별 차별규제 전면 재검토 및 원칙적 폐지
78	지주회사 출자·소유 규제 완화 공정위, 정무위	• 일반지주회사는 여신금융사 보유 금지, 비지주 계열사는 CVC 피투자기업 지분 인수 제한, 복수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 • 그룹 차원의 신산업 투자와 자금 운용 효율성 저해	• 일반지주회사의 여신금융사 보유, 비지주 계열사의 CVC 피투자기업 지분 인수, 복수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 사전적 지분율 규제 폐지
7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완화 공정위, 정무위	•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원칙 금지 • 금융사의 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과 공익법인 주식 기부 위축	• 금융·보험사의 금융 유관업 계열사 주식 의결권 허용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 폐지
80	동일인관련자 범위 개선 공정위, 정무위	• 계열회사비영리법인 임원은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하게 동일인관련자에 일률 포함 • 동일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독립이사·검직 임원까지 규율하는 과잉 규제	• 동일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독립이사와 비영리법인 등기임원은 동일인관련자 범위에서 제외
81	하도급법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 형벌규정 개선 공정위, 정무위	• 원사업자의 경영상 정보 요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대상 정보가 고시로 규정되고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 경영상 정보 요구행위에 대한 형벌규정 삭제 • 과징금·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
82	하도급법 자진시정 면책제도 확대 적용 공정위, 정무위	• 자진시정 감면은 주로 대금지급 위반에 적용되고 서면 미교부 등 절차 위반은 면책 근거 불명확 • 실질적 피해가 없는 경미한 절차 위반도 제재 대상이나 자진시정 유인 부족	• 서면 교부·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도 자진시정 시 면책 • 실질적 피해 없는 경미한 절차 위반은 경고 또는 사건 종결
83	산재은폐행위 형벌규정 개선 노동부, 기후환노위	• 산재 은폐는 형사처벌, 산재 미보고는 과태료로 각각 제재 • 은폐·미보고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공상처리까지 은폐로 판단될 우려	• 산재 은폐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제재를 과태료로 일원화

84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기부금 수증 시 공시의무 완화 [공정위]·[정무위]	•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1주라도 기부받으면 사전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 발생 • 기부는 수시로 발생해 사전 의결·공시가 현실적으로 곤란	• 계열회사 주식 수증 시 사후공시로 변경 • 기부금 수증은 공시의무 제외
85	보험회사 수직계열 자회사 관련 이중규제 해소 [공정위·금융위]·[정무위]	• 보험업법상 승인·신고를 거친 자회사와의 거래에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규제 적용 • 분사 후 거래가 규제 대상이 되어 분사 효과 퇴색, 주요국은 모자회사 간 거래 미규제	• 개별법상 감독을 받는 경영효율 목적의 수직계열 모자회사는 부당지원 규제 적용 제외
86	가업승계 목적 신탁주식 의결권 제한 개선 [금융위·재경부]·[정무위·재경위]	• 신탁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5% 초과분 의결권 행사 제한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도 불명확해 가업승계신탁 활용 미미	• 가업승계 목적 신탁주식의 완전한 의결권 행사 허용 • 신탁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명확화

7. 투자 R&D 세제 경쟁력 강화

* 하늘색 음영: 소관 부처, 파란색 글씨: 소관 상임위원회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87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 [재경부]·[재경위]	• 세제개편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을 태양광·반도체 등 6대 분야로 한정 • 미래차·바이오의약품·SMR(소형모듈원자로) 등 핵심 전략산업은 대상에서 제외	• 미래차, 바이오의약품·백신, SMR, 액화수소, SAF(지속가능항공유), 히트펌프 등으로 분야 확대
88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개선① : 국내판매 요건 제외 [재경부]·[재경위]	• 국내 생산과 함께 국내 판매를 요건으로 하여 수출분은 제외 • 미국, 일본의 유사 제도는 판매 지역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적용	• ‘국내 판매’ 요건 삭제
89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개선② :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재경부]·[재경위]	•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미공제액의 환급이나 제3자 이전 미허용 • 대규모 선행투자·초기 적자 기업은 공제받을 법인세가 없어 지원효과 제한	• 일정 요건 충족 시 현금 직접환급 도입 • 공제액의 제3자 이전 또는 조기 현금화 허용
90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개선③ : 중복적용 허용 [재경부]·[재경위]	• 국내생산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제한 • 적용 시 기존 투자공제 취소 및 이자 상당액 납부로 자금 부담 발생	• 투자와 생산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지원하는 만큼 두 공제의 중복적용 허용

9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재경부 재경위	• 대기업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3~6%(‘13년)에서 0~2%로 축소 • 기업 규모별 과도한 차등으로 일반 R&D 투자 유인 저하	• 일반 R&D 공제율 확대 (대기업 0~2%→5%, 중견기업 8%→15%)
92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관 확대 재경부 재경위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위탁연구 개발비 공제 대상기관에 산학협력단 명시 • 동일 대학 연구임에도 계약 상대방 (대학·산학협력단)에 따라 공제율 상이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위탁연구개발비 공제 대상기관에 산학협력단 명시
93	국가전략기술 등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재경부 재경위	•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고율 세액공제를 허용하나 최저한세로 효과 제한 • 중소기업 R&D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 규모별 차별	• 대기업의 국가전략·신성장 원천 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 제외
94	국내 최저한세율 인하 재경부 재경위	• 국내 대기업 최저한세율 17%(지방세 포함 18.7%)는 글로벌 최저한세(15%)보다 높음 • 대규모 투자 기업일수록 공제효과 제한	•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분 최저한세율 인하(17%→15%)
95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한 연장 재경부 재경위	• 주요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은 10년 • 대규모 선행투자 후 장기 적자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은 기간 내 공제 활용 곤란	•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10년→20년, 국가전략기술 우선)
96	핵심 자산인 토지·건물 투자 세제혜택 대상 포함 재경부 재경위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토지·건축물, 항공기·선박 등 제외 • 첨단산업 시설투자의 30~50%를 차지하는 토지·건물이 제외되어 실효성 저해	• 1안)사업용 토지·건물·항공기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 • 2안)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 산업에 한해 허용

8. 노동시장 안정과 일자리 지원

* 하늘색 음영: 소관 부처, 파란색 글씨: 소관 상임위원회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97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근무지 이전 제외 노동부 기후환노위	• 노동부 지침상 공장 신설·이전에 따른 근무지 이전 등 배치전환을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제시 • 인력 적기 배치를 둘러싼 노사분쟁 상시화로 공장 가동 및 투자 지연 우려	• 사업장 이전·신설에 따른 근무지 이전은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아님을 노조법에 명시

98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정책 마련 노동부, 기후환노위	- 여당 정년연장 특위 중심으로 65세 정년 연장 입법 추진 중이며, 연내 입법 전망 - 획일적 정년연장은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 - 퇴직 후 재고용·정년연장 등 기업의 선택권 부여
99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후속 과제 노동부, 기후환노위	-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일부 경영상 결정도 교섭대상 포함 가능, 정부가 판단 지침 발표 -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통상적 인력배치도 교섭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어 노사분쟁 우려	경영·인사권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노조법 개정)
100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노동부, 기후환노위	- 주요국은 연장근로를 월·년 단위로 관리하나, 한국은 주 단위로 관리 - 경영환경 변화 및 근무형태 다변화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 조절 애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로 확대
101	고소득 전문직종 근로시간 제한 면제 노동부, 기후환노위	- 농림수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52시간 등 근로시간 규정 획일 적용 - 특별연장근로,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보완제도는 요건이 복잡하여 활용에 한계	- 일정 직종·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고소득 전문·사무직에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우선 적용
102	중소기업 대상 청년 채용·역량개발 지원 연계 강화 노동부, 기후환노위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기업에 1년간 인건비를 보조하는 성격에 그침 - AI 확산으로 초기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채용지원만으로는 청년 역량개발 유도 한계	청년에게 직무훈련·AI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 지급
103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 재경부, 재경위	- 세제개편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 대기업 공제는 이미 제한적이나, 일률 제외 시 청년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 유인 약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현행과 같이 유지

9. 자본시장 활성화

* 하늘색 음영: 소관 부처, 파란색 글씨: 소관 상임위원회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104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금융투자업자 결제·수탁 근거 마련 금융위, 정무위	-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단계 규율에 집중 - 금융투자업자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취급할 수 없어 온체인 결제 구현에 제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토큰증권 결제수단 활용 및 금융투자업자 결제·수탁 근거 마련

105	기금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진입 여건 마련 [노동부] [기후환경] [노후] [기금]	•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형 퇴직연금 설계 과정에서 수탁법인 수를 제한(5~8곳)하는 방안 논의 • 기존 사업 규모 기준으로 제한 시 역량 있는 기관의 진입이 막히고 가입자 선택권도 축소	• 재무건전성·전문인력·운용실적 등 실질적 운영역량 중심의 객관적 인가기준 마련
106	폐쇄형 사모펀드의 멀티클로징 허용 [금융위] [정무위]	• 폐쇄형 펀드는 추가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해외에서 일반적인 멀티클로징 (투자자 추가 모집) 활용 곤란 • 최초 모집 시 필요자금 전액을 확보해야 해 유망 투자 기회를 해외 운용사에 상실	•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 폐쇄형 펀드에 한해 멀티클로징 허용
107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금융위] [정무위]	• 보험회사 자회사는 법령에 열거된 업무만 영위 가능 • 데이터·AI 등 신산업 업무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신규 서비스 개발 지연	•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 확대
108	보험회사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 합리화 [금융위] [정무위]	• 보험사의 자회사 주식·채권 보유는 자기자본 60%와 총자산 3%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 • 자본 여력이 충분해도 총자산 3% 한도에 묶여 국내 금융회사 인수·지분투자 곤란	• 자회사 투자한도 중 총자산 3% 기준 삭제 또는 상향
109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금융위] [정무위]	• IFRS17 도입과 함께 신설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신계약에서도 계속 적립되어 약 3년간 25조원 증가 • 이익잉여금 소진으로 주주환원 여력 축소 및 K-ICS 기본자본 감소 우려	• 전환 이후 신계약과 변액보험을 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 • K-ICS 산정기준 연계 정비
110	예금보험료율 합리적 조정 [금융위] [정무위]	•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추진, 저축은행은 0.40%→0.54% 인상안 제시 • 이미 은행의 5배 요율을 부담하는 저축은행 요율 추가 인상 시 서민금융 공급 위축 우려	•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 지양 • 불가피한 경우 단계적 조정 및 충분한 경과기간 부여

10. 지역 및 국민생활 안정

* 하늘색 음영: 소관 부처, 파란색 글씨: 소관 상임위원회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111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금융위·재경부] [정무위·재경위]	•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액의 6%(우대형 12%)를 정부기여금으로 매칭 • 많이 저축할수록 기여금이 커지는 구조로 저축 여력이 낮은 취약청년은 실질 혜택에서 소외	• 저액 납입구간에 높은 매칭률을 적용하는 소득구간별 누진매칭 방식으로 개편
112	국민 투자 자산 형성 지원: ①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 ②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 도입 [재경부] [재경위]	•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고배당기업에 한정되고 한시적으로 운영 • 최고 49.5%의 배당소득 세부담과 장기보유 세제혜택 부재로 장기투자 유인 부족	•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및 상시화 • 일정 기간 이상 보유 주식 배당소득에 세제혜택 부여

113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재경부]·[재경위]	• 지방기업 세제지원은 신규 투자·생산 및 본사 이전 중심으로 운영 • 비수도권에 장기간 정착한 기존 기업에 대한 지속적 세제 유인 부족	• 비수도권 본사 법인에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 (예: 10% 감면)
114	산업위기지역·인구감소 지역 등 세액공제 시 지방우대 강화 [재경부]·[재경위]	• 세제개편안은 R&D·투자·국내생산·세액공제에 지역별 지방우대계수 적용 • 세부지역 일률 구분 시 산업위기지역 등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	• 산업위기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지방 우대계수 최고 수준(1.5) 적용
115	산업위기지역 활력 부여 : 설비투자 세제혜택 강화 [재경부]·[재경위]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시설 유형별로 공제율 차등 적용 •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위기 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미흡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 • 위기지역 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116	산업위기대응지역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기후부]·[기후한노위]	• 산업위기대응지역 전력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다수 계류 중 • 전력다소비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원가 경쟁력 지속 악화	• 산업위기대응지역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117	청주국제공항 민간자본 유치사업 지원 실효성 제고 [국토부]·[국토위]	•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계류 중 • 민간사업자 지원 여부나 토지개발 사업권의 구체적 범위가 불명확해 자금조달에 한계	• 민간자본 유치사업 지원요건 및 절차 명시 •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규모 및 산정원칙 구체화
118	노인복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복지부·국토부·금융위] [복지위]	• 고액 임대보증금을 장기 예치하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증가 • 현행 보호제도는 최소 가입기준과 가입 예외 등으로 보증금 전액 보호에 한계	• 사업자의 반환책임 강화 • 노인복지주택 특성에 맞는 전용 보증상품 또는 특례 마련
119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재경부]·[재경위]	•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12년 이후 14년간 동결(AI 제품만 4배 상향) • 물가 상승으로 2단계경쟁 대상이 늘어 수요기관 행정부담 증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2억원, 그 밖의 제품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

〈 목 차 〉

I. 한국경제 현황과 과제

1. 2026년 성과	1
2. 경제 리스크	3
3. 2027년 대응 방향	10
4. 한국경제 비전: 지속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	12

II. 2027년 경제계 정책건의

[1] AI 대전환 및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1.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	15
2. AI 시설 및 R&D 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 확대	16
3. AI 데이터센터 전력조달을 위한 직접 PPA 특례 범위 확대	17
4. 메가특구/AIDC 특별법상 이동통신 네트워크 지원 근거 마련	18
5. AI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19
6.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저작권 규제 개선	20
7.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제공요구 금지조항 AI 활용 개선	22
8. 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	24
9. 감염병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의 민간 연구 활용 제고	26
10.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28
11. 3G 서비스 조기 종료를 위한 정책 지원	30

[2]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 12. 항공·우주 : 핵심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발 인프라 조성 ·32
- 13. 반도체특별법 타당성재조사 면제 근거 신설 33
- 14.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허가 패스트트랙 및 배후시설 특례 확대 ·35
- 15. 반도체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한 비영리재단 출연 과세특례 신설 ·37
- 16. 트리니티팍의 혁신도전형 R&D 지정 및 조달절차 특례 부여 40
- 17. 국가전략기술 이차전지 분야 확대: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42
- 18. 배터리 업계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평가시설 구축 44
- 19. 국가전략기술 바이오 분야 확대 : 합성 의약품 46
- 20. 방산 R&D·생산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48
- 21. 우주기술 기술료 부담 완화를 통한 산업체 기술 활용 활성화 ·51
- 22. 위성용 태양전지·PVA 등 우주 핵심부품 국산화 자원체계 마련 52
- 23. 드론 시험공역·시험비행장 구축 53
- 24.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55
- 25. 각종 부담금 감면을 통한 첨단산업 비용 부담 완화 57
- 26. 산업단지 내 증설 건축물의 별도 건축허가 특례 마련 58
- 27. 산업단지 산업용지의 분할·처분 및 임대 특례 확대 60
- 28. 정책펀드 공동출자법인의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인정 63
- 29.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원 ·66
- 30.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한 하수재이용 관련 지원 확대 67
- 31. 수용재결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 개선 69

[3]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32. 유화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유휴설비 철거·폐쇄 지원 근거 마련	71
33. 무탄소에너지 인증 및 거래체계 마련	72
34.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 확대	73
35. GHG 프로토콜 전력 시간단위 매칭 기준 강화 기조 대응	76
36. 직접 PPA의 N:N 계약 방식 허용	77
37. 대수력 발전의 직접전력거래(PPA) 허용 및 정산기준 마련	79
38. PPA 부대비용 경감 및 인센티브 확대	82
39. 전기 사용자의 PPA 가격구조 선택권 확대	84
40. 전기사용자 투자연계형 직접 PPA 인센티브 제도 도입	85
41. 지분 보유 PPA 초과발전량에 대한 Banking 제도 도입	86
42. 석유화학제품 품질·안전·환경 관리체계 고도화	87
43. 석유화학 전용부두 접안능력 재평가·합리화	88
44. 도시가스사업법 내 LNG 냉열이용자 정의 개편	90
45. 기화 후 천연가스 반환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91
46. LNG 제조소 경계 외부 냉열 배관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92
4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적용대상 내 미활용 냉열 포함	93
48.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한 합리적 보전 체계 마련	94
49. 소각시설 탄소포집활용(CCU) 설비 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	95
50. 친환경 : 생분해 플라스틱 처리 기술을 신산업으로 육성	96
51. 기후대응기금 활용체계 보완	97
52. 고효율 가전환급 사업 전국민 대상 확대 시행	98

[4] 서비스 · 콘텐츠 산업 육성

53. 서비스업 도약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100
54.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101
55. 관광특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용 제외	102
56. 가맹점 점포 규제 완화로 유통서비스업 활성화	103
57. 공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104
58. 한국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규제 완화	106

[5] 공급망 재편 · 경제안보 대응

59. 공급망 보안강화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108
60. 통신 분야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전문위원회 운영 합리화	109
61.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개선	110
62. 고위험국 특별계정 금융지원 적용범위 확대	112
63.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추진으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114
64. 국가 식량안보 개념 명문화로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확립	115

[6] 기업 제도의 합리적 정비

65. 규제 도입 전 사전심사 절차 마련	117
66.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경제인 배임죄 개선	118
67. '경영판단의 원칙' 상법 명문화	119
68.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 확보	120
69.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개선	122
70. 형벌 폐지와 과징금 상향의 동시 입법으로 제재 중첩 해소	124

71.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명확화 · 처벌체계 합리화	126
72. 승강기 유지관리비 ‘최저가격제’ 도입	129
73. 승강기 ‘중대한 사고’ 판단기준 합리화	131
74. Negative 전환을 통한 규제 시스템의 혁신	133
75. 규제개혁 추진체계 일원화 및 규제 차르(Czar) 임명	134
76. 신산업 진입규제와 '덩어리' 규제의 혁파	135
77. 갈라파고스 규제 개혁 및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최소화	136
78. 지주회사 출자 · 소유 규제 완화	138
7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완화	139
80. 동일인관련자 범위 개선	140
81. 하도급법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 형벌규정 개선	141
82. 하도급법 자진시정 면책제도 확대 적용	142
83. 산재은폐행위 형벌규정 개선	143
84.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 기부금 수증 시 공시의무 완화 ..	145
85. 보험회사 수직계열 자회사 관련 이중규제 해소	147
86. 가업승계 목적 신탁주식 의결권 제한 개선	149

[7] 투자 R&D 세제 경쟁력 강화

87.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	151
88.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개선① : 국내판매 요건 제외	152
89.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개선② :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153
90.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개선③ : 중복적용 허용	155
9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156

92.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관 확대	158
93. 국가전략기술 등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159
94. 국내 최저한세를 인하	160
95.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한 연장	161
96. 핵심 자산인 토지·건물 투자 세제혜택 대상 포함	163

[8] 노동시장 안정과 일자리 지원

97.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근무지 이전 제외	166
98.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정책 마련	167
99.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후속 과제	168
100.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169
101. 고소득 전문직종 근로시간 제한 면제	171
102. 중소기업 대상 청년 채용·역량개발 지원 연계 강화	172
103.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	173

[9] 자본시장 활성화

104.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금융투자업자 결제·수탁 근거 마련 ..	176
105. 기금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진입 여건 마련	177
106. 폐쇄형 사모펀드의 멀티클로징 허용	178
107.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180
108. 보험회사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 합리화	181
109.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182
110. 예금보험료를 합리적 조정	184

[10] 지역 및 국민생활 안정

- 111.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 186**
- 112. 국민 투자 자산 형성 지원 : ①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
②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 도입 ..188**
- 113.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90**
- 114. 산업위기지역·인구감소지역 등 세액공제 시 지방우대 강화 ..191**
- 115. 산업위기지역 활력 부여 : 설비투자 세제혜택 강화 192**
- 116. 산업위기대응지역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194**
- 117. 청주국제공항 민간자본 유치사업 지원 실효성 제고 195**
- 118. 노인복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196**
- 119.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198**

I. 한국경제 현황과 과제

1 2026년 성과

□ 한국 경제는 연초 우려를 딛고 3% 이상 성장을 달성 확실시

○ 주요 기관의 '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연초 2% 안팎으로 예상되었으나 연중 수출·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3%대 성장 달성이 가시화

* [예측 시기별 주요 기관 '2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OECD) 2.1('25.12월)→ 2.4('26.3월)→ 2.6('26.7월)→ 3.7('26.9월)

(한국은행) 1.8('25.11월)→ 2.0('26.2월)→ 3.3('26.8월)

(KDI) 1.8('25.11월)→ 1.9('26.2월)→ 2.5('26.5월)→ 3.2('26.8월)

○ 3%대 성장률은 1%대 중후반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팬데믹
기저효과가 반영된 '21년(4.7%)을 제외하면 '18년(3.2%) 이후 최고 수준**

*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 : 1.66%(OECD, '26.6월), 1.8%(NABO, '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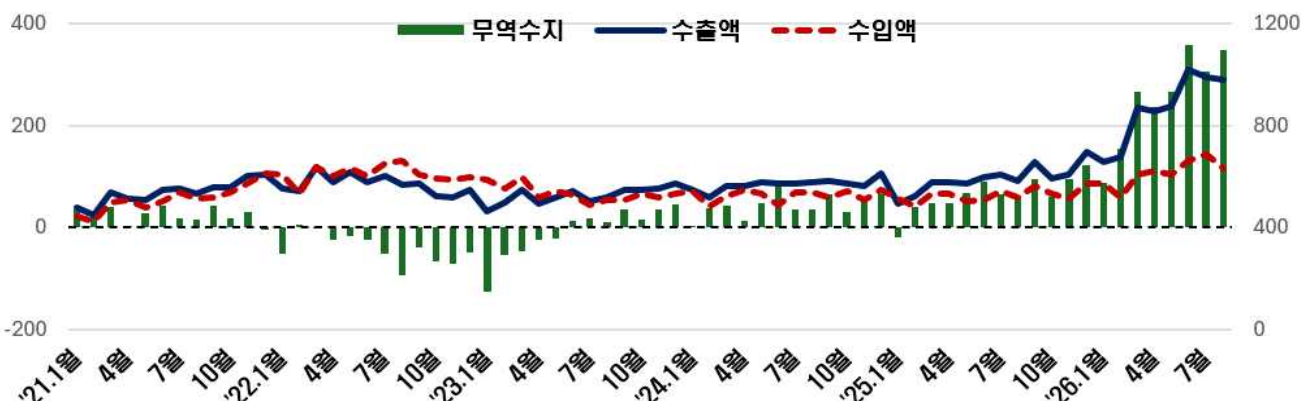
** 한국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 한국은행) : 3.2('16년)→ 3.4('17년)→ 3.2('18년)→ 2.3('19년)→ △0.7('20년)→ 4.7('21년)→ 2.9('22년)→ 1.5('23년)→ 2.2('24년)→ 1.1('25년)

○ 특히 수출은 9월 기준으로 8,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경신*, 수입이 확대되었음에도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 해외 수출액 추이(십억달러, 국가데이터처) : 644('21년)→ 684('22년)→ 632('23년)→ 684('24년)→ 709('25년)→ 815('26.1-9월)

** 무역수지 추이(십억달러, 국가데이터처) : 29('21년)→ △48('22년)→ △10('23년)→ 52('24년)→ 77('25년)→ 168('26.1-7월)

〈 월별 무역수지 및 수출입액 추이(10억 달러) 〉



*출처 : 국가데이터처

□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기 호조가 수출 및 설비투자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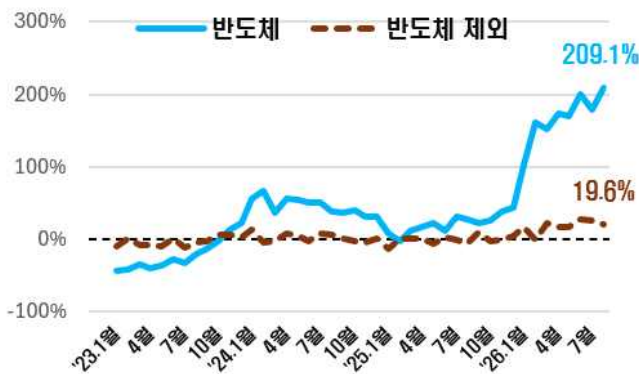
○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

* 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비, 무역협회) : △23.7('23년)→ 43.9('24년)→ 22.2('25년)→ 139.1('26.1Q)→ 181.7(2Q)→ 178.8(7월)→ 209.1(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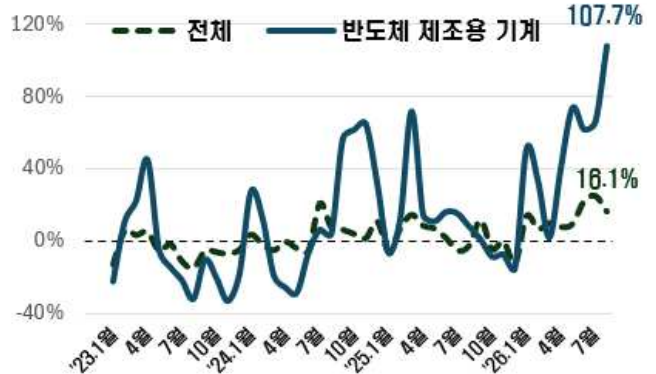
○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높은 증가세*

* 반도체 제조용 장비 설비투자지수(% , 전년동기비, 국가데이터처) : △10.0('23년)→ 11.0('24년)→ 7.2('25년)→ 22.9('26.1Q)→ 58.0(2Q)→ 65.8(7월)→ 107.7(8월)

〈 품목별 수출 증가율(% , 전년동월비) 〉



〈 설비투자 지수 증가율(% , 전년동월비) 〉



*출처 : 국가데이터처, 무역협회 이용해 한경협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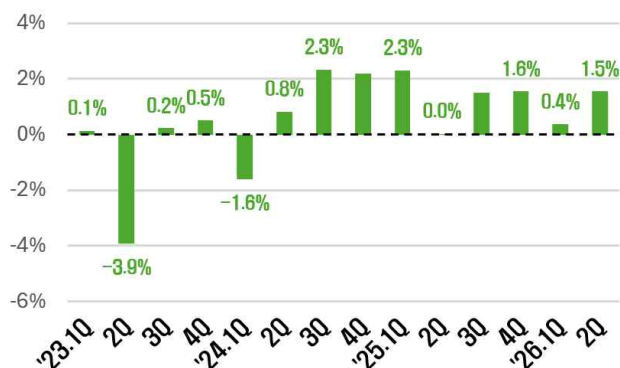
□ 실질소득 개선에 힘입어 민간소비도 완만하게 회복

○ 실질소득 증가*에 힘입어 민간소비도 '25년 하반기 이후 2%대 증가율을 보이며 완만하게 회복**, 반도체 중심 성장을 민간소비 회복이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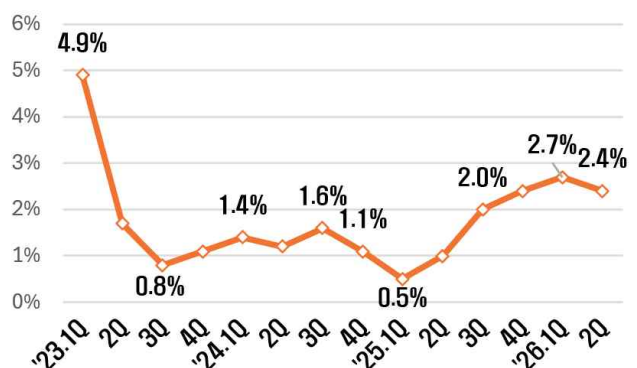
* 가구당 소득 추이(% , 전년동기비, 실질, 국가데이터처) : △3.9('23.2Q)→ 0.8('24.2Q)→ 0.0('25.2Q)→ 1.5('26.2Q)

** 민간소비 (% , 전년동기비, 실질, 한국은행) : 2.1('23년)→ 1.3('24년)→ 1.5('25년)→ 2.7('26.1Q)→ 2.4('26.2Q)

〈 가구당 소득 증가율(% , 전년동기비, 실질) 〉



〈 민간소비 증가율(% , 전년동기비, 실질) 〉



*출처 :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② 경제 리스크

1) 꺼져가는 성장엔진

□ [잠재성장률 악화] 경제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

*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25년 1%대에 진입, 최근 호황에도 불구하고 '27년 잠재성장률 역시 1.5% 수준으로 추정**

* 잠재성장률 하락은 일시적 경기부진과 달리 노동·자본·생산성 등 성장여력의 구조적 악화 의미

** 잠재성장률 추이(% , OECD) : 5.4%('00년)→ 3.7%('10년)→ 2.5%('20년)→ 1.5%('27년)

〈 잠재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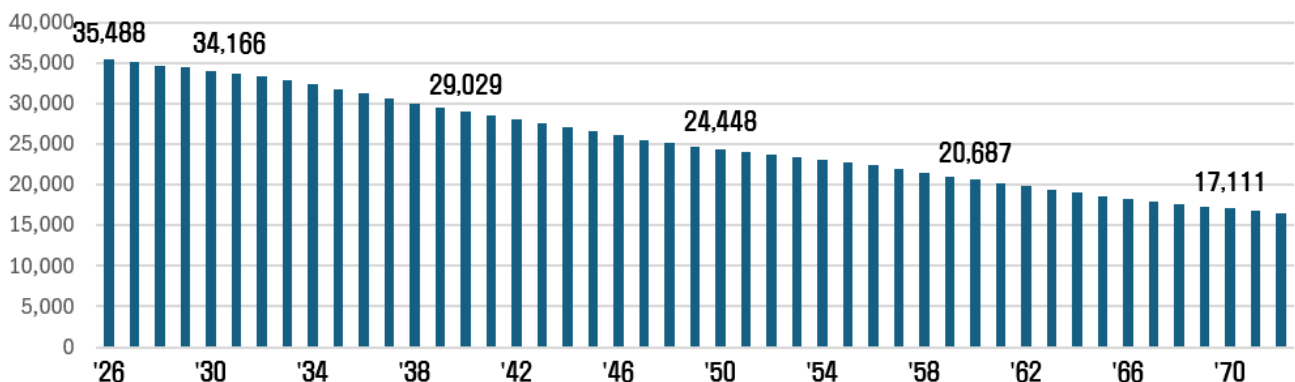


*출처 : OECD

□ [생산가능연령인구 감소] 누적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도 빠르게 감소해 추후 노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

○ 한국의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는 '26년 약 3,549만명에서 지속 감소해 '39년 3,000만명 아래로, '62년에는 2,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

〈 생산가능연령 인구 추이(천명) 〉



*출처 : 국가데이터처, '23.12월 추계 기준

2) 누적되는 민간부문 부채리스크

□ [민간부채] 고금리 여파 누적으로 기업·가계 금융부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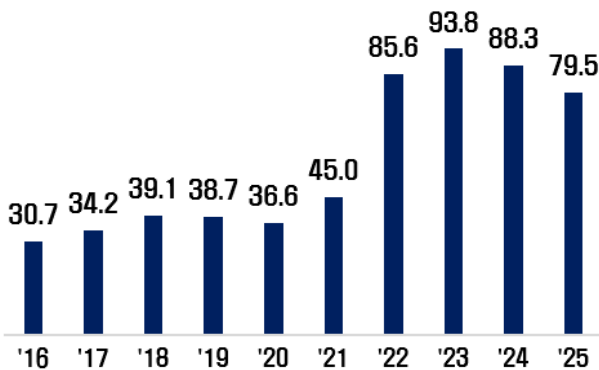
○ '22~'23년 고금리기*를 거치며 민간 금융부담 확대 및 '24~'25년 금리 인하에도 기업**과 민간*** 모두 과거 수준까지 완화되지 못한 상황

* 기준금리 추이(기말기준) : 0.50('20년)→ 1.00('21년)→ 3.25('22년)→ 3.50('23년)→ 3.00('24년)→ 2.50('25년)→ 3.00('26.9월)

** 연간 기업 이자부담액 추정(조원, 한국은행 이용해 한경협 계산) : 36.6('20년)→ 45.0('21년)→ 85.6('22년)→ 93.8('23년)→ 88.3('24년)→ 79.5('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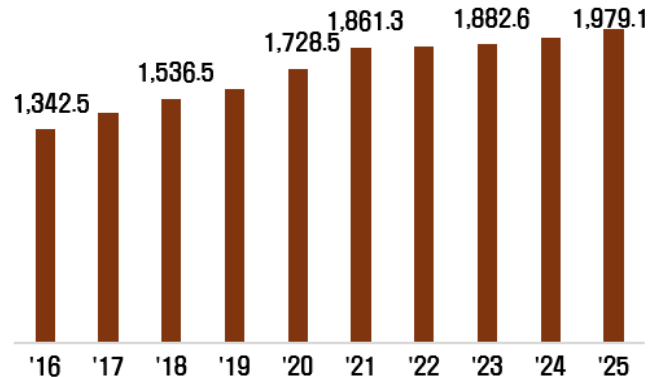
*** 가계신용 추이(조원, 한국은행): 1,861.3('21년) → 1,865.4('22년) → 1,882.6('23년) → 1,922.4('24년) → 1,979.1('25년)

〈 연간 기업 이자부담액 추정(조원) 〉



*출처 : 한국은행 이용해 한경협 계산

〈 가계신용 추이(조원) 〉



*출처 : 한국은행

○ 기업·가계 대출 연체율은 '22년 이후 지속 상승해왔으며 추후 부실 위험 확대

* 연체율(%), 연체대출채권을 전체대출채권으로 나눈 값, 금융감독원 이용해 한경협 계산)

[기업] 0.37('21.1Q)→ 0.26('22.1Q)→ 0.35('23.1Q)→ 0.48('24.1Q)→ 0.62('25.1Q)→ 0.68('26.1Q)

[가계] 0.18('21.1Q)→ 0.17('22.1Q)→ 0.31('23.1Q)→ 0.37('24.1Q)→ 0.41('25.1Q)→ 0.40('26.1Q)

〈 기준금리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 기업 및 가계 대출 연체율 추이(%) 〉



*출처 : 금융감독원 이용해 한경협 계산

3) 더딘 민생경제 회복

□ [물가 부담 재확대] '25년 하반기까지 둔화되던 물가상승세가 재차 확대되며 '26.4월 이후 3% 안팎을 지속, 가계의 실질구매력 회복을 제약

* 소비자물가 추이(% , 전년동월비, 한은) : 2.1('25.1Q)→ 2.1(2Q)→ 2.0(3Q)→ 2.4(4Q)→ 2.1('26.1Q)→ 3.0(2Q)→ 2.8(7월)→ 3.2(8월)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전년동월비) 〉



*출처 : 한국은행

□ [자영업 · 소상공인 어려움 지속] 자영업 폐업은 소폭 감소했지만 주로 소상공인에 집중되었으며 비자발적 폐업 비중은 오히려 확대

○ '25년 전체 폐업 사업자는 97.6만개로 전년(100.8만개)에 비해 감소했으나,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은 75.1만개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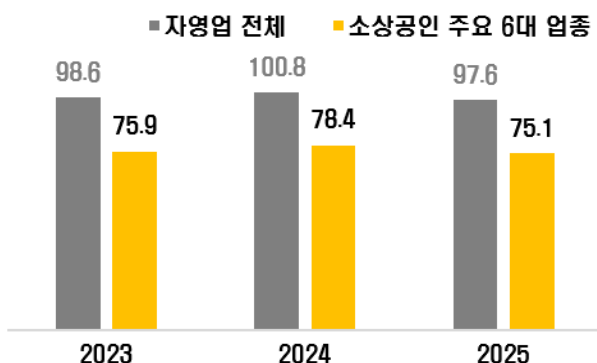
*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중기부) :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 특히 경영상 어려움을 의미하는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 비중*이 지속 상승하는 등 자영업 · 소상공인 폐업의 질적 악화는 오히려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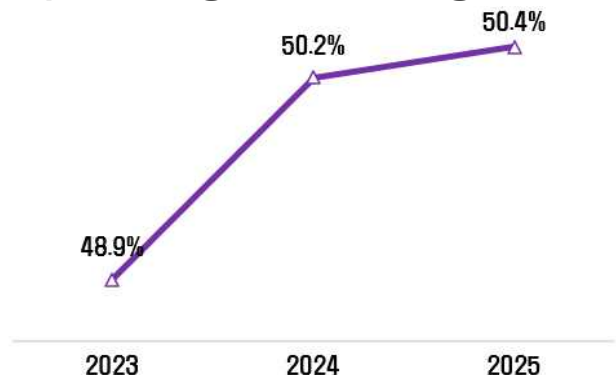
* '사업 부진' 폐업 비중(% , 중기부) : 48.9('23년)→ 50.2('24년)→ 50.4('25년)

** 사업 부진 폐업 비중 증가는 버티지 못해 닫는 비자발적 폐업 증가(중기부, '26.6월)

〈 자영업 폐업자 수(만명) 〉



〈 폐업 사유 중 '사업부진' 비중 추이(%) 〉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4) 좁아진 청년층 경제활동 사다리

□ [청년고용 위축] 전체 고용지표의 개선에도 청년 고용은 감소세

○ 전체 고용률이 '23년 이후 회복하는 국면에서도 청년층(15~29세)은 하락

* 연령별 고용률 추이(% , 국가데이터처)

[15-64세] 69.2('23년)→69.5('24년)→69.8('25년)→69.3('26.1분기)→70.1(2분기)→70.3(7월)→70.4(8월)

[15-29세] 46.5('23년)→46.1('24년)→45.0('25년)→43.5('26.1분기)→43.8(2분기)→44.2(7월)→44.1(8월)

〈 연령별 고용률(%) 〉



*출처 : 국가데이터처

□ [노동시장 이탈] 구직활동 없이 취업을 미루는 '쉬었음 청년'이 팬데믹 이후에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기록, 경력 형성 지연 및 장기 이탈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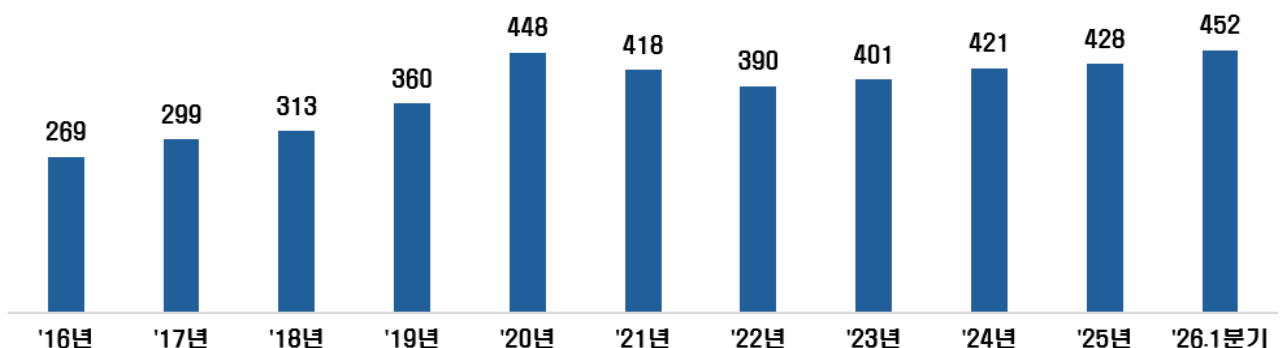
○ 팬데믹 이후 쉬었음 청년의 숫자는 '26.1분기 45.2만명으로 역대 최대*

* 쉬었음 청년 추이(천명, 15-29세 기준, 국가데이터처) : 269('16년)→ 313('18년)→ 448('20년)→ 418('21년)→ 390('22년)→ 401('23년)→ 421('24년)→ 428('25년)→ 452('26.1분기)

○ '쉬었음' 장기화는 경력형성 지연 및 노동력 미활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야기

* '쉬었음' 청년의 미취업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19-'23년 누적 44.5조원, '23년 한 해 9.6조원으로 추정(한경협, 「쉬었음 청년의 경제적 비용 및 정책과제」, '25.8월)

〈 쉬었음 청년(15-29세 기준, 천명) 〉



*출처 : 국가데이터처

5) 글로벌 반도체 경쟁 격화

□ [반도체] '26년 수출 및 생산 증가가 AI·반도체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호황사이클 종료 시기 및 현재 경쟁력의 지속 가능성 불확실

○ 최근 반도체 업계 호황은 AI·고성능 메모리 수요에 집중*되어 있어, 메모리 업황 변화에 대한 국내 경제 민감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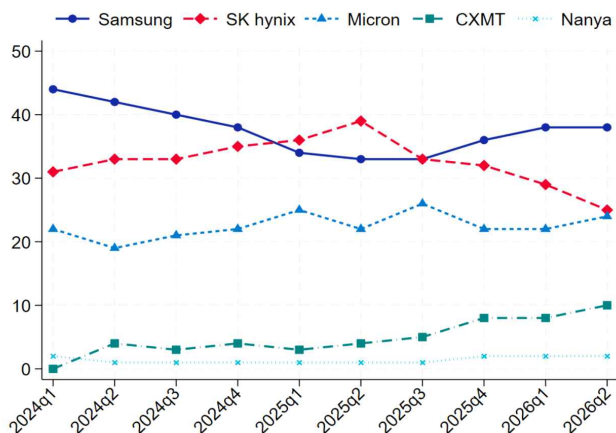
* 한국의 반도체 수출 중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 : 52.1('23년) → 62.2('24년) → 68.6('25년) → 85.4('26.1~7월)

○ 시장 확대에도 국내 기업의 D램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사 점유율은 상승하는 등 글로벌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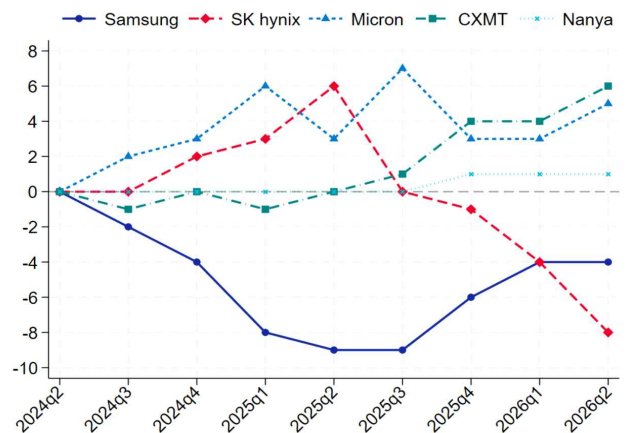
* '24.2Q 대비 '26.2Q D램 시장점유율 변화(%p) :

삼성전자(△4) 하이닉스(△8) vs. 마이크론(+5) 창신메모리반도체(+6)

〈 글로벌 반도체 D램 시장 점유율(%) 〉



〈 '24.2분기 대비 D램 시장 점유율 변화(%p) 〉



*자료 : Trendforce, Counterpoint

1% 미만 점유율로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던 CXMT의 '24.1분기 값은 0으로 처리

○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신기술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중국 기업의 경우, 연내 국내 기술을 뛰어넘는 제품 개발 발표

*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아직 연구 단계인 차세대 서버용 반도체 기술 제품을 2년 앞당긴 '26년말 출시할 계획

○ 반도체는 누적 생산과 공정 경험이 생산성·수율 개선으로 이어지는 학습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호황기에 생산·R&D 역량 확충 투자 필요

* 반도체 D램 산업은 누적 생산량이 두배로 늘어날 때 평균 생산비용이 약 20% 감소, 타기업 보다 자사 누적 생산경험에서 얻은 학습효과가 약 3배 큼(Irwin·Klenow,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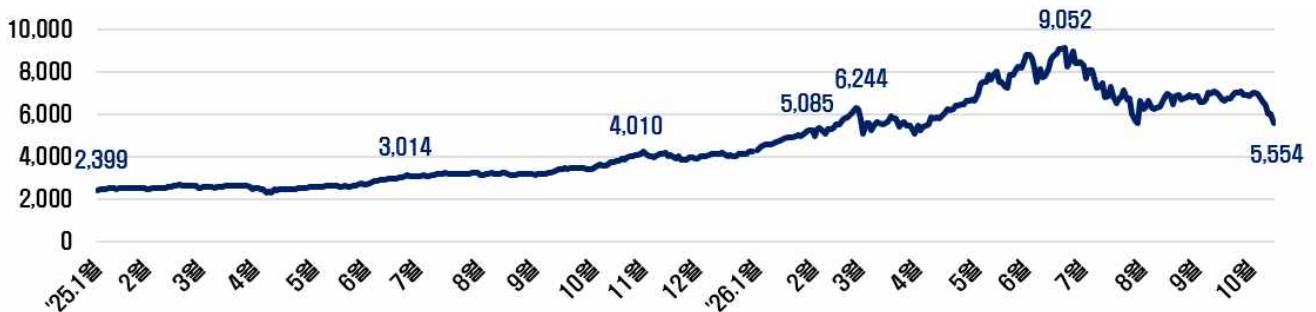
6) 자본시장 불안 고조

□ [증시 급등락]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는 최근 큰 폭으로 조정

○ '26년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급등했으나, 이후 중국 기업의 기술 추격,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단기간 큰 폭 하락

* KOSPI 추이(월평균) : 4,807('26.1월)→ 8,469(6월)→ 6,633(8월)→ 5,554(10.15일 종가)

〈 KOSPI 지수 추이 〉



*출처 : 한국증권거래소

□ [불확실성] 주가 변동성 및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심화

○ 주가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위험회피 심리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

* KOSPI 200 변동성 지수(KRX, 월중 최고) : 20.71('25.1월) → 96.94('26.6월) → 48.53(10월)

○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방향 역시 '26년 8월 이후 순매도로 전환되는 등 국내 증시의 수급 불확실성 가중

* 외국인 월별 순매수액(KRX, 10억원) : 588.0('26.5월)→ 196.88(7월)→ △31.0(8월)→ △263.5(9월)

○ 증시 불안정은 가계의 금융자산 가치와 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 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 회복을 제약

〈 KOSPI200 변동성지수 〉



*자료 : 한국증권거래소

〈 외국인 순매수 추이 〉



7) 구조화 · 상시화된 대외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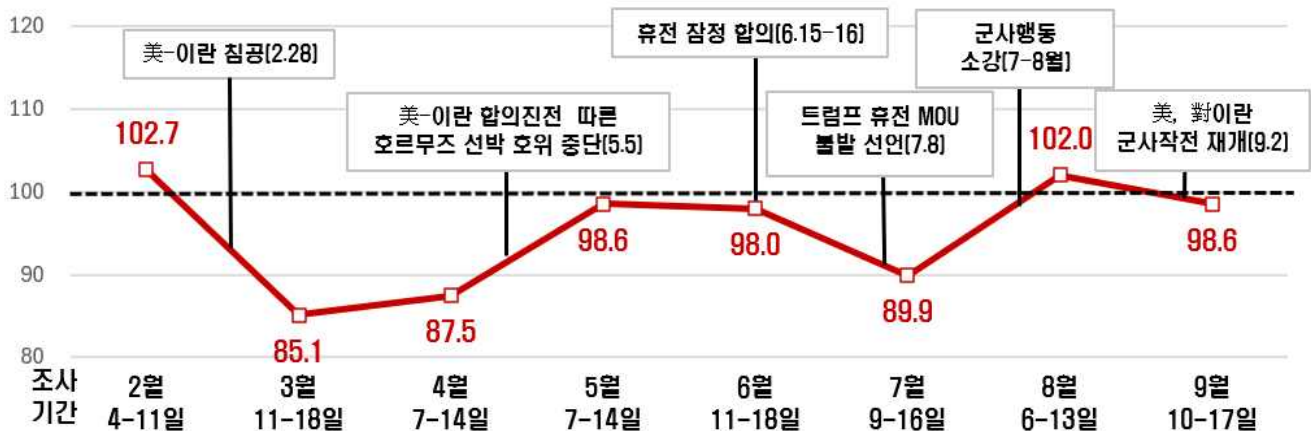
□ [지정학 리스크] 중동사태의 확산 · 휴전 여부에 따라 기업 심리가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등 대외 충격이 기업 경영의 상시 변수로 부상

○ 기업경기전망(BSI)*은 중동사태의 확산과 완화 흐름에 따라 민감하게 등락**하며 지정학 리스크가 기업심리에 직접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

*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익월 경기 예측 등을 설문한 지표, 긍정응답이 부정응답에 비해 많을 경우 지수값이 100을 초과

** BSI 전망치 추이(한국경제인협회) : 102.7('26.2월 조사, 3월 전망)→ 85.1(4월 전망)→ 87.5(5월)→ 98.6(6월)→ 98.0(7월)→ 89.9(8월)→ 102.0(9월)→ 98.6(10월)

〈 2026년 조사기간별 매출액 600대 기업의 익월 경기전망(BSI) 〉



*출처 : 한국경제인협회

*주) 지수가 100을 초과할 경우 600대 기업 재무담당자 중 익월 경기가 긍정적인 것이라 예상한 응답자가, 100 미만일 경우 부정적인 것이라 예상한 응답자가 더 많음을 의미

□ [통상 불확실성] 주요국 관세 · 수출규제 강화가 대응할 상시 정책 변수로 구조화되고, 정책 변동 폭도 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부담 확대

○ 미 · 중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관세 · 수출통제 · 공급망 관련 정책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수출 · 투자 의사결정 불확실성 확대

○ 반도체 · 자동차 · 배터리 등 주력 수출 산업은 글로벌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접근과 공급망 운영 부담이 지속

* 대외거래 비중(한국은행, '24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결과 분석, '26.9.30) : 26.4%('20년) → 31.1%('24년), 4.7%p 증가, 대외거래 비중은 (수출+수입)/총공급(총수요)

③ 2027년 대응 방향

- ◆ **[기본 방향]** '26년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성장 모멘텀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역량 강화로 연결하고, 성장 확산을 위한 토대 마련
 - '26년 3%대 성장은 AI 수요 확대, 반도체 수출 호조에 의존한 결과로 잠재성장률 하락, 민간부채 누적, 민생·고용 부진 등 구조적 리스크 심화
 - 호황기 확보한 투자 여력을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하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성장-안정 선순환' 구조 정착 필요
 - 3대 대응 방향을 기반으로 10대 분야의 경제계 정책과제 도출
 - ①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 ②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기업 투자 활력 제고
 - ③ 일자리 활력 회복과 민생·지역경제 안정

①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 한국 경제는 주력 제조업 성장 둔화와 거센 후발국 추격, 일부 산업에 편중된 성장, 인구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의 복합 위기 직면
 - 첨단 주력산업의 초격차를 지키는 동시에 서비스·콘텐츠 등 새로운 성장축을 육성해 '집중'과 '다변화'를 함께 추구하는 성장 전략 추진
-
- ① **[AI 대전환 및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전 산업 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위한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지원
 - ②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방산 등의 전략기술 초격차 경쟁력 확보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 확대
 - ③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원전·무탄소에너지(CFE)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
 - ④ **[서비스·콘텐츠 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제조업에 편중된 성장 구조를 다변화하고 내수 확대 기반 조성

②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기업 투자 활력 제고

- 미·중 경쟁,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 관세·수출 통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로 수출과 공급망에서 전례 없는 불확실성 직면
 - 기업이 경쟁국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적기에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 규제 합리화, 세제 지원 등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 ⑤ **[공급망 재편·경제안보 대응]**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핵심 광물·소재·부품 도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 기반 강화
- ⑥ **[기업 제도의 합리적 정비]** 글로벌 표준과 괴리된 갈라파고스 규제와 성장을 가로막는 기업 규모별 차별을 해소하고 과도한 경제형별 합리화
- ⑦ **[투자·R&D 세제 경쟁력 강화]** 기업의 설비·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투자 환경 조성

③ 일자리 활력 회복과 민생·지역 경제 안정

-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청년 고용이 위축되는 등 노동시장 활력 저하, 고물가 등으로 가계 구매력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도 한계
 -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통해 적재적소의 인재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민생 부담 완화, 지방 투자를 통해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⑧ **[노동시장 안정과 일자리 지원]** 산업 구조 전환에 맞춰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 보상,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일자리 확대
- ⑨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기업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분야 신사업 투자 활성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활력 제고
- ⑩ **[지역 및 국민생활 안정]** 인구감소위기지역 등 지방을 우대하는 세제 지원·규제 특례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지원제도 마련

4 한국경제 비전 : 지속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2027년 반등을 넘어 지속성장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 ① AI 대전환 ·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 ②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 ③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 ④ 서비스 · 콘텐츠 산업 육성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기업 투자활력 제고

- ⑤ 공급망 재편 · 경제 안보 대응
- ⑥ 기업 제도의 합리적 정비
- ⑦ 투자 · R&D 세제 경쟁력 강화

일자리 활력 회복
민생 · 지역경제
안정

- ⑧ 노동시장 안정과 일자리 지원
- ⑨ 자본시장 활성화
- ⑩ 지역 및 국민생활 안정

경제

여건

- 반도체 수출 · 투자 호조에 힘입은 3%대 성장 가시화
- 수출액 역대 최대(월 \$8,000억), 설비투자 확대

- '25년 잠재성장률 1%대 진입, 생산가능인구 감소
- 민간부채 리스크, 청년고용 악화, 민생경제 회복 지연

II. 2027년 경제계 정책건의

[1] AI 대전환 및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1.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관련 법령 :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

□ [현황] 피지컬 AI*의 연구개발, 실증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과방위) 계류 중

* 물리적 환경을 인식·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시범지역 내 유관 법률의 규제 완화 및 적용 배제, 피지컬 AI 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포함

구분	세부내용
컨트롤 타워 설치	·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위원장 : 국무총리)
신속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시범지역* 내 일부 법률**의 규제 완화 및 적용 배제 * 피지컬 AI 연구·시범운영 촉진을 위해 지정된 구역 ** 대상 법률과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규제 특례 신청 시 과기부에 일괄 신청 · 규제 특례 신청 시 60일 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특례지정으로 간주
개인정보 활용 특례	· 개인정보 등을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 배제 *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영상·음성정보 수집·이용 특례 마련
산업 육성 지원	· 학습데이터 구축사업 시행 및 구축 데이터 민간에 무상 제공 ·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 [문제점] 국내 제조업의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고려해 피지컬 AI를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요구되나,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미흡

* 국가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세계은행, '24년) : 韓 25.2%, 中 24.8%, 日 18.1%, 美 10.1%

○ 현행 법체계는 AI·로봇·자율주행 등 산업 분야별 법률로 분산되어 있어 피지컬 AI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부재

○ 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규제 개선, 학습 데이터 개방, 인프라 구축 등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본격화

* 중국 : 「항저우시 체화지능 로봇산업 발전 촉진 조례」 시행('26.5월)을 통해 공공 데이터 개방, 고품질 학습데이터 구축 및 실증기지 조성 등을 지원

** 일본 : 「AI 로봇틱스 전략」 수립('26.3월)을 통해 AI·로봇 실증 확대, 분야별 실증 로드맵 및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

□ [개선방안]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별법 연내 통과

2. AI 시설 및 R&D 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 확대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제130조

□ [현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규정으로 인해, AI 분야 관련 수도권 설비·시설 투자에 제약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시설에 해당하더라도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제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서울 및 일부 인천·경기지역)

□ [문제점]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AI 투자지원 실효성 제약

○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중 74.8%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도권 내 AI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은 관련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

*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의 74.77%가 수도권에 소재(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26년)

** 정부는 '22년부터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추진 중이나, 서비스 지연 문제, 지방 인프라의 부족과 초기 투자비용 등 현실적 제약에 대한 보완은 미흡한 상황

□ [개선방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AI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예외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세액공제 배제의 예외에 AI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시설 및 R&D 설비·시설 투자 포함

3. AI 데이터센터 전력조달을 위한 직접 PPA 특례 범위 확대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관련 법령 : 인공지능데이터센터산업 특별법 제20조

□ [현황] AIDC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직접 PPA)하는 특례 규정

○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대규모 안정적 전력공급이 요구되며, 24시간 365일(24/7) 안정적 전력망 운영의 필요성 증가

※ 123대 국정과제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 [문제점] 집단에너지(구역전기) 및 LNG 등 안정적인 전원이 제외되며, 산업단지 인근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의 활용 불가

○ 전력 조달수단을 제한해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취지를 약화

□ [개선방안] 직접 PPA 특례 대상에 LNG 및 집단에너지(구역전기) 사업자를 포함하여 AI 데이터센터 대상 전력 공급 안정성 제고

4. 메가특구/AIDC 특별법상 이동통신 네트워크 지원 근거 마련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데이터센터특별법), 메가특구법(안)

□ [현황]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핵심 AI 인프라 구축 및 민간투자 지원정책을 추진

○ AI 데이터센터특별법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 부지,
인허가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 메가특구를 통해 첨단산업 투자에 필요한 규제특례,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투자지원 방안도 추진 중

□ [문제점] AI 인프라 간 연결을 담당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

○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간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기 위해
초저지연·대용량 통신이 가능한 고도화된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필수

○ 현행 지원정책은 전력, 용수, 부지, 인허가 등 기반시설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이동통신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지원체계는 미흡

□ [개선방안] AI 관련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핵심 인프라에 포함하여
투자지원 강화

○ AI 데이터센터특별법 및 메가특구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를 포함

○ AI 관련 이동통신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 세제 등 인센티브 마련

○ AI 서비스 확산과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G 신규 주파수 할당을 적기에 추진

○ 주파수 할당 시 할당대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투자 확대 효과 등을 함께 고려

5. AI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 소관 : 고용노동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 [현황] AI 기술 경쟁 심화로 집중적인 연구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일부 분야에 AI 연구개발은 미포함

○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한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

○ 정부는 일부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별도 지침을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하고 있으나, AI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특례 신설안** 상임위 계류 중

* 현재 연구개발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에 한해 인정(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 및 관련 업무처리 지침)

** 1) 김위상 의원(국) 대표발의('26.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181호): 반도체·AI·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신설

2) 고동진 의원(국) 대표발의('25.1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5512호): AI 산업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업무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신설

□ [문제점] AI 연구개발 특성상 모델 개발·학습, 성능 검증 등 특정 단계에 인력 투입이 집중되나 현행 근로시간 제도 하 탄력적 대응이 어려움

○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는 주요국에 비해 경직적*이어서, 급변하는 첨단 산업 경영환경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 주요국은 연장근로시간을 월·연 단위로 관리하는 반면, 한국은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예측이 어려운 산업현장 인력 수요 대응에 한계

○ 단기간에 AI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가 어려운 만큼, AI 연구개발 분야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필요

□ [개선방안] AI 연구개발 근로시간 특례의 조속한 입법

○ 근로시간 특례 신설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 통과

○ 법 개정 전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 개정을 통해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항목에 ‘AI’를 추가, 단기적으로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 유연성 보완

6.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저작권 규제 개선

❖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35조의5 등

□ [현황] 주요국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반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저작물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고 고품질 데이터 확보 어려움

○ 일본·EU 등 주요국은 저작권에 대한 실질적 침해가 없는 경우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허용

**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 변형 등의 행위는 사전 허가 없이도 허용

*** EU DSM 저작권 지침 제3·4조:원칙적으로 저작물 사용을 허용하나,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옵트아웃(opt-out)’ 선언을 통해 사용 제외

○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면책 규정*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사안별 종합판단이 필요해 적법성 예측이 어려움

* 저작권법 제35조의5 : 저작물의 일반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저작물 이용 허용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26.2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대한 해석 기준을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 이용의 시장 영향으로 제시

□ [문제점]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 부담 지속

○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범위가 불명확해 기업의 학습데이터 수집·활용 단계부터 저작권자 개별 동의 등 권리처리를 위한 비용과 시간 부담 가중

○ 양질의 AI 학습데이터의 절대량이 부족하며, 특히 신문, 도서, 논문 등 고품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비용 부담

○ 혁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과 데이터 공개에 따른 법적 책임 우려로 학습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에 있어 어려움 가중

□ [개선방안]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TDM 공정이용 허용

○ AI 모델 개발·학습을 위한 TDM 목적의 저작물 이용 특례를 「저작권법」에 신설(제35조의6, 제35조의7 신설 및 제136조 개정)

※(개선안 예시) 저작권법 제35조의6, 제35조의7 신설 및 제136조 개정

- 제35조의6(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과 관련한 저작물 이용)

①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 및 저장할 수 있다.

② 본 1항에서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및 적법한 권한이 있는 개인에 의한 행위도 허용된다.

- 제35조의7(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1.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할 것

2.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공중이 특별한 접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표된 저작물에 접근하는 등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것. 적법한 접근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아래 각 호의 저작물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제1항에 따라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1.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저작물 또는 공유 플랫폼에 등록된 저작물

2. 대한민국의 역사나 문화 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교과서, 공영방송의 영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하는 자는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물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기간, 보안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7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이하 생략)

7.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제공요구 금지조항 AI 활용 개선

❖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하도급법 제12조의3

□ [현황]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켜야 할 보호 절차를 규정

○ (현행 절차)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전협의·서면 교부·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부담

* 기술자료: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비공개 자료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정보 등을 의미

** 비밀유지계약에는 기술자료의 범위, 자료를 제공받을 임직원 명단,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등을 포함

○ (AI 수요) 원·수급사업자 간 협업자료를 AI로 분석·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AI 도입 이전 기준으로 설계

* 제조업 협력사 AI 전환 지원 방식: 생산·품질·설비·물류 데이터 연계 및 표준화(34.4%), 공동 파일럿·실증(23.8%) 등(한경협, '26.8월)

□ [문제점] 협업자료를 AI에 활용할 때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과 계약상 이용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협업 위축·분쟁 우려

○ (계약 요건) AI가 기술자료를 학습하고 다수가 이용하면 비밀유지계약상 '자료 보유 임직원', '목적 외 사용금지'의 범위가 불명확

○ (정당성 기준) AI 활용 목적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정상적인 협업 목적의 자료 요청도 법 위반으로 판단될 우려

□ [개선방안] 기술자료 해당 여부와 사내 AI 활용에 관한 기준 마련

○ (판단기준) 작업 현황·품질·물량·일정 등 일반 자료와 고유 핵심 기술자료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에 세부 기준 명시

○ (AI 특례) 외부 유출 차단, 접근권한 통제, 로그 관리 등을 갖춘 경우 'AI 업무 활용'을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로 인정

* 비밀유지계약상 '보유 임직원 명단'은 사내 AI 시스템 운영·관리 책임자 지정 및 접근 권한 통제 방식으로 대체

○ (저위험 결과물) 원본을 재현하지 않아 유출 위험이 낮은 통계·집계형 결과물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구체화

8. 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

❖ 소관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 [현황]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데 국내 의료데이터 활용은 저조하며, 주요국은 데이터 활용 기반을 정비 중

○ (의료비 부담) '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3%(국가데이터처)의 초고령사회로, 의료비가 GDP 대비 8.5%를 초과(OECD)

○ (활용 저조) 국내 주요 병원은 연간 2~5PB의 의료데이터를 생성하나 97% 이상이 병원 내부에 머뭇(AWS 서밋, '25.5월)

○ (주요국) 표준화·공공DB·특별법 등으로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 (美) 의료정보 교류를 위한 국가 핵심데이터 표준(USCDI) 구축 / (EU) 유럽건강데이터공간 규정으로 연구 목적 2차 활용 체계 마련

** (英) UK Biobank가 50만명의 유전·건강정보를 국내외 연구자에게 제공 / (日) 차세대의료기반법으로 익명 의료정보의 연구개발 활용 제도화

□ [문제점] 규제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고 표준화와 데이터 제공 유인이 미흡해 의료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곤란

○ (규제 산재)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생명윤리법 등 여러 법률에 관련 규정이 흩어져 있어 일괄적인 개선에 한계

○ (표준 미흡) 한국 의료데이터 표준(KR-CDI)을 구축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에 그쳐 병원 간 데이터 호환성 미흡

* AI 학습에 필수적인 유전체·영상 원본 데이터 표준은 KR-CDI에 미포함

** 국가 DB별로 표준이 달라 호환성이 낮고, 향후 코드 전환 비용도 증가 예상

○ (유인 부족) 의료정보 제공 대가가 가공·전송 등 실비 수준으로 산정돼 정보제공자가 데이터를 공유할 유인이 미흡

* 가명 진료정보는 가공·전송·관리 비용 기준으로 산정(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인체유래물·유전정보는 무상 제공 원칙(생명윤리법 제43조)

□ [개선방안] 의료데이터의 연계·공유와 연구·산업 목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표준·보상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특별법) 의료데이터 축적·활용을 총괄하는 「의료데이터 활성화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관련 규제를 일괄 정비

*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포괄적 사용동의 제도', '가명 데이터의 연구 목적 국외 이전 허용' 등 포함

○ (표준 의무화) KR-CDI의 EMR 인증 필수기준 전환('28년 목표)을 앞당겨 조기 의무화하고, 병원의 표준 코드 전환 비용 지원

*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위해 국가 표준 적합성을 검증해 부여하는 제도

○ (인센티브) 의료기관이 의료데이터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

9. 감염병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의 민간 연구 활용 제고

- ❖ 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현황] 보건당국은 예방접종 이력과 이상 반응 등 감염병 대응 연구에 필수적인 데이터 보유 중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연구를 목적으로 보건당국이 보유한 가명 정보 활용 및 전문 기관을 통한 기관 간 데이터 결합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예방접종 이력, 감염병 발생정보, 이상반응 정보와 건강보험 진료정보 등을 연계한 연구도 일부 가능

○ 질병관리청도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 중

※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 [문제점] 보건당국이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제도 및 기준이 미흡하여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제한

○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감염병 데이터의 민간 신청·심사·안전 분석 절차가 불명확

* 기업이 별도 연구 수행 시 표본이 작고 추적관찰 기간이 짧아 장기 안전성·효과 근거 확보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보건당국이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유인이 큰 상황

○ 데이터 활용 제한은 백신의 임상적 근거 축적을 지연시켜 국가예방접종 백신 국산화율 제고 목표 달성에도 악영향

* '30년까지 백신 2종 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을 ('25년) 27.3% → ('30년) 36.4%로 제고

□ [개선방안] 민간 기업이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감염병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및 기준 마련

○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감염병 데이터의 민간 활용 경로를 제도화 중인 만큼 이를 참고한 제도 및 기준 마련 시급

〈 주요국 감염병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제도화 사례 〉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
운영 주체	질병통제 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	국민보건서비스 (NHS)	유럽 건강데이터 공간(EHDS)	후생노동성· 디지털청
활용 방식	대유행 기간 중 민간에 감염병 데이터 제공	상업기관도 신청 가능 (공익성 심사 후 제공)	회원국 간 표준화된 보건데이터 통합	가명화·안전관리 조치 전제, 연구자·기업의 의료데이터 2차 활용 확대

* 출처: (美)질병통제예방센터·(英)국민보건서비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日)후생노동성

10.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 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관련 법령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 [현황] OTT·UGC*·FAST** 등 온라인 시청각미디어까지 방송 유사 규제를 확대하는 입법 논의 진행

* UGC:User Generated Content의 약어로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elevision의 약어로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뜻함

○ 법안은 온라인 콘텐츠·플랫폼서비스에 신고, 공적책임, 콘텐츠 심의 등 방송과 유사한 규율 체계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

* 법안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전송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영상 서비스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통합 규율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한국방송공사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343·19347)

○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적 방송과 달리 주파수 희소성·제한된 채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현재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문제점] 매체 특성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방송 수준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규제 정당성·비례성 논란과 중복규제 우려

○ 방송 규제의 주요 근거인 희소한 주파수 이용과 제한된 채널 등의 특성이 온라인 서비스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방송 수준의 공적책임 부과에 신중한 검토 필요

* 실시간 서비스 여부만으로 규제 수준을 달리할 경우 서비스의 실질적 영향이나 매체 특성과 무관한 규제 차등이 발생할 가능성

○ 과도한 심의·제재 및 경영정보·알고리즘 관련 의무는 콘텐츠 창작·플랫폼 혁신 및 영업비밀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 우려

* 특히 소규모 제작자·크리에이터와의 협력 축소 등 K-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

- [개선방안]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논의 시 기존 규제체계와의 정합성 및 산업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소규제 원칙에 따른 단계적 제도 설계 필요
- 현행 개별 법률의 규율 범위와 중복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기존 제도의 보완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은 신규 규제 신설을 최소화
- 공적 자원 사용 여부, 서비스 유·무료, 재원 구조, 이용자 선택권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수준을 차등화
- *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등 해외사례도 참고하되 국내 시장·법체계와의 차이를 감안해 적용

11. 3G 서비스 조기 종료를 위한 정책 지원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 [현황] 이동통신사가 3G 서비스 종료 절차에 착수했으나, 종료 시 이용자 보호·전환 지원에 관한 명확한 기준 부재

* 3G 가입자('26.6월): SKT 13.4만, KT 6만, MVNO(알뜰폰) 13.4만

** SKT는 '27년 말 종료 목표('26.8.20일 신규가입 중단), KT도 추이를 보아 중단 예상

□ [문제점] 이용자 보호 기준이 없어 종료 승인 지연이 우려되고, 3G 종료가 차세대 망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 (기준 부재) 이용자 보호·전환 지원 기준이 불명확해 통신사는 보호계획 수립에, 이용자는 서비스 전환 준비에 어려움

* 2G 종료 때도 잔존 가입자가 많고 이용자 보호계획이 미흡해 승인 지연('11.4월 방통위 승인 요청 → '11.11월 최종 승인)

○ (투자 연계 미흡) 3G 종료를 단순한 서비스 종료로만 다뤄, 회수 주파수를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로 잇는 정책 유인 부재

□ [개선방안] 3G 종료 시 이용자 보호·전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3G 종료를 국가 차원의 망 현대화 정책과 연계

○ (승인 기준) 종료 승인을 위한 이용자 보호·전환 지원 기준을 구체화

* (예) 잔여 가입자 10만명 이하, 단말기 구입비 10만원 지원 등

○ (망 현대화) 3G 종료를 미래 네트워크 투자로 이어지는 망 현대화 정책으로 접근해, 투자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수립

[2]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12. 항공·우주 : 핵심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발 인프라 조성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관련 법령 :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

□ [현황] 우주항공기술 개발과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해 우주항공청을 설립('24.5월)해서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사업 추진 중

○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경제 가속화, 글로벌을 선도할 미래기술 선제 확보, 국민이 함께 누리는 우주항공 문화 조성을 위해 7대 핵심과제* 추진

* ①우주항공 혁신 기반 마련, ②우주항공경제 생태계 조성, ③민간주도 우주 수송으로 전환, ④첨단위성 개발·발사로 우주산업 기회 확대, ⑤글로벌 우주과학탐사 본격화, ⑥항공 전략기술 확보, ⑦국제협력 주도·다변화로 글로벌 진출지원

□ [문제점] 글로벌 우주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 및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수준도 선진국 대비 미흡한 실정

○ '24년 기준 미국의 우주 예산은 773억\$, 중국 173억\$, 일본 49억\$, 러시아 32억\$에 달하나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미국의 0.78% 수준)에 불과

* 한국의 GDP 대비 우주 예산 비중도 0.032%로 주요국(美 0.269%, 中 0.092%, 日 0.122%, 露 0.147%) 대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우주항공청,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 2025)

○ 우주발사체 핵심 기술인 대형 엔진 기술 수준이 미국(100%)에 비해 59.0% 수준에 불과하고, 중국(89.0%), 일본(80.0%), EU(80.0%)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우주관측센싱 기술은 미국(100%)에 비해 65.0% 수준에 불과하고, EU(90.0%), 중국(85.0%), 일본(80.0%)보다 기술 수준이 낮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4년도 기술수준평가)

□ [개선방안] 위성통신 관련 사업에 집중하면서 우주예산 확충, 민간 중심 우주개발, 정부 보유 우주정보 민간 개방, 지원제도 강화 등 정책 개선 필요

○ (전략) IT제조 강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산업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 장비, 위성통신 서비스 등 위성통신 산업을 집중 육성

○ (예산) '27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최소한 연 1.5조원의 우주 예산 확보

○ (사업방식) 국책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민간으로 파격적으로 이전하고, 우주개발을 국책연구소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 (지원방안) 안보와 관련 없는 정부 및 공공 영상 민간 공개, 위성·발사체·관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등

13. 반도체특별법 타당성재조사 면제 근거 신설

❖ 소관 : 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국가재정법 제38조·제50조

□ [현황]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등 국비지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추가 지원에 따르는 타당성재조사 면제 근거는 미비

○ 현행 반도체특별법 제24조의 면제 범위는 예비타당성조사에 한정돼, 기존 국비지원 사업의 추가 지원에 따르는 타당성재조사 면제는 부재

*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 타당성재조사: 기 추진 중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도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타당성재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심사 절차 필요

* 총사업비·국비지원 규모가 예타 기준에 미달할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할 경우 타당성재조사 대상

□ [문제점] 추가 국비지원 과정에서 타당성재조사가 요구되는 경우 반도체 산업기반시설의 적기 구축과 지원 일정에 차질 발생 우려

○ 반도체 인프라는 팹 건설 일정에 연계돼 특정 시기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며 지원 적시성이 중요하나, 타당성재조사에 장기간 소요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0조제3항상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 이내가 원칙이나, 1회 연장 시 최대 18개월까지 소요 가능

○ 국가재정법상 타당성재조사 면제사유도 반도체 인프라의 적기 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어 원용 곤란

* 국가재정법 제50조제3항의 면제사유: 매몰비용 과다, 상위계획 변경, 지역 균형발전·긴급 대응, 재해·안전 등

□ [개선방안] 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 타당성재조사 면제 특례 신설

○ 이미 국비를 지원한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 추가 지원 시 타당성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반도체특별법에 근거 마련

* 적격 사업비 범위, 심사기한, 준공 후 유지관리 책임을 함께 규정

현 행(반도체특별법)	개 선 안
제24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4조(예비타당성조사 <u>및 타당성재조사</u> 에 관한 특례)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서 이미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한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추가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상,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상,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허가 패스트트랙 및 배후시설 특례 확대

❖ 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 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 [현황] 첨단전략산업 투자 시 인·허가와 배후시설 조성에 장기간 소요

○ 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과 짧은 제품 전환주기로 적기 투자·가동이 경쟁력의 핵심이나, 건축허가·환경·안전 관련 협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투자 지연

* 건축허가 및 안전관리 승인 등에 약 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생산설비 발주·반입·시 운전도 지연

○ 공장 가동에 필요한 주거·보육·의료·교육 등 배후시설도 용도지역 변경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해 공장 준공과 정주 인프라 공급 간 시차 발생

○ 공장 고도 제한 및 임시사용승인 이전 설비 반입 제한됨

* 일부 입지에서 공장 높이가 약 40m 수준으로 제한되고, 생산설비는 임시사용승인 이후 반입이 원칙

※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문제점] 현행 특례가 특화단지 조성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생산시설 가동과 인력 정주 지원에는 한계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인·허가 신속처리는 특화단지 조성·운영 관련 인·허가 중심으로, 기업의 신·증설 및 배후지원시설에는 적용범위가 제한적

*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인·허가 신속처리는 특화단지 조성·운영 관련 인·허가 중심이며 전략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보육·의료·교육 등 배후 시설은 미적용

○ 사업장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서는 주거시설 등 배후 정주 시설이 필수이나, 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인 경우 고층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

* 상향 절차가 2년 이상 소요되면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춘 주거 공급이 어려워져 인력 확보 지연 리스크 발생

○ 공장 고도의 40m 제한과 임시사용승인 이전 설비 반입이 제한되어 건축공사와 장비 설치의 병행이 어려움

□ [개선방안] 생산시설부터 배후 정주시설까지 전 과정 패스트트랙 적용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 신속처리 대상을 배후지원시설까지 확대

- * 특화단지 및 인접지역의 종사자 주거·보육·의료·교육시설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추가, 배후 주거지의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패스트트랙 적용

○ 생산시설의 적기 가동을 위한 맞춤형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 * 특화단지 내 신·증설 사업에 대해 건축허가, 환경·안전 관련 협의, 안전관리 승인 등의 기간을 2개월 내로 단축해서 운영

○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공장 고도제한을 최대 60m 수준으로 완화

- * 대형 생산설비 수용이 필요한 경우 입지·안전성 검토를 전제로 높이 규제 특례 적용

○ 임시사용승인 이전 생산설비의 제한적 선반입 허용

- * 구조·소방 등 필수 안전요건 충족을 전제로 건축공사와 설비 설치 병행 허용

15. 반도체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한 비영리재단 출연 과세특례 신설

- ❖ 소관 :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정부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현황] 비영리재단을 운영 주체로 하는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트리니티랩)을 구축 중이며, 정부는 운영재단의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신설 추진

- * 테스트베드: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시험·신뢰성 평가·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반

○ 트리니티랩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개발제품 성능과 양산 가능성 검증을 지원할 예정

- * 예타 기준 사업비는 약 4,470억원(국고 3,736억원·지방비 577억원·민자 156억원)이며, 민간 건축·시설부대경비 약 4,200억원은 별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5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를 신설해 테스트베드 운영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익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를 추진 (세제개편안, '26.8월)

- * (비과세 요건) ①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테스트베드 이용 허용, ② 공무원·국가·지자체 추천자·공공기관 임직원이 이사의 50% 이상, ③산업통상부장관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협약 체결 및 국가·지자체의 사업비 출연·보조

□ [문제점] 정부안은 운영재단의 증여세만 비과세하고 출연기업 측 과세특례는 반영하지 않아, 기업의 출연 유인이 부족

○ 기업은 민관 공동 운영구조에 따라 재단에 현금·시설·인력을 출연하나,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거나 과세를 면제하는 특례가 없어 세 부담 증가

- * 운영재단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출연금이 기부금 손금 대상에서 제외(비지정기부금)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법인세법 제24조)
- * 기부금을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해 시설 임대나 인력 파견 같은 용역의 무상 제공은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고(법인세법 제24조제1항), 출연기업이 재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무상 제공분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위험(동법 제52조)

○ 아울러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7년부터 '31년 사이 증여분에만 비과세가 적용돼(제19조의2제1항), 사업 착수 후 '26년 이전 출연분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

□ [개선방안] 공익 실증시설에 대한 출연을 공익적 행위로 인정해
출연기업과 운영재단의 과세 위험 해소

○ 출연기업 과세특례 반영(조세특례제한법(정부안) 제19조의2)

- * 출연한 금전과 무상으로 기증·임대한 시설·장비, 무상 파견한 전문인력과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배제
- * 대가 없이 공급한 재화·용역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실증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 이용대상 제한기준을 민관 공동 실증 참여구조에 맞게 정비(특례 대상 범위는 정부안대로 정부 지정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으로 한정, 시행령 제17조의2)

- * 출연기업의 협력사가 이용자에 포함되더라도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시행일(' 27.1.1.) 이전 증여분에도 소급 적용

- * 제19조의2제1항의 적용 개시일('27.1.1.)을 삭제하고, 증여세 비과세 적용기한('31년말)은 테스트베드 운영기간에 맞춰 연장
- * 시행일('27.1.1.) 전 증여분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례 병기

현 행(조특법 세제개편안)	개 선 안
제19조의2(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9조의2(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삭 제> 2031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안과 같음)
<신 설>	③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테스트베드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금전을 출연하거나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시설·장비 등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임대하거나 반도체 관련 전문인력을 무상으로 파견하거나 그 밖에 반도체 실증에 필요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아 같은 조를 적용한다.

현 행(조특법 세제개편안)	개 선 안
	④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출연한 금전, 무상으로 기증·임대하거나 파견한 재산 또는 인력,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⑥ 테스트베드 지정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반도체 양산 타당성 검증 등 반도체 실증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⑦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 행(조특법 시행령 세제개편안)	개 선 안
제17조의2(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테스트베드의 이용을 허용할 것 <후단 신설> 2.~3. (생략) <신설>	제17조의2(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테스트베드의 이용을 허용할 것. 다만, 출연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이 이용자에 포함되더라도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3. (정부안과 같음) ② 법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트리니티팹의 혁신도전형 R&D 지정 및 조달절차 특례 부여

-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관련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 [현황] 트리니티(테스트베드)팹은 소부장 기업의 양산 검증을 지원하는 실증시설로, '27년 조기 가동을 위해 첨단 연구장비의 적기 구축 필요

- 트리니티팹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신기술·제품에 대한 양산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양산 연계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
 - * 사업기간 '25.12~'31.12, 총사업비 8,746억원(국비 3,736억원 등), '27.5월 팹 개소 예정
- 반도체 장비별로 공정·기술사양이 상이하고 공급 가능한 제조사가 제한적인 데다 제작·납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장비 발주·계약이 중요
-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른 입찰·계약 절차를 거쳐야 해 장비 도입에 상당한 기간 소요
- 한편 현행 제도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지정된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제조·구매·임차 시 수의계약을 허용
 -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연구개발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 및 고시에 따라 지정하는 사업의 집합

□ [문제점] 일반 경쟁입찰 중심의 조달절차가 첨단 반도체 장비의 특수성과 맞지 않아 장비 도입 지연 및 구매조건 악화 우려

- 반도체 장비는 사양이 복잡하고 공급 업체가 제한적이어서 제조사와 사양·가격·납기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조달절차상 탄력적인 협상에 제약
 - * 해외 장비업체는 다수 서류 제출 등 국내 공공입찰 참여를 기피하고 대리점을 통한 공급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단가 상승 및 사후관리·품질보증 조건 악화 가능
- 입찰공고, 평가, 계약 등 조달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장비 반입·설치와 공정 구축이 순차적으로 지연돼 트리니티팹 가동 일정에 차질 우려

□ [개선방안] 트리니티랩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특례를 적용하고 장비 도입절차 신속화

○ 트리니티랩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으로 조속 지정

* 사업기간 중 장비 구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내 지정 필요

○ 첨단 반도체 연구장비에 대한 수의계약 특례 적용 및 관련 절차 신속화

* 현행 고시상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도입인정’ 또는
‘조건부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관련 심의 신속 추진 필요

** 연구기관이 회사의 장비 사양 검토, 공급업체 선정, 가격 협상 및 납기관리 등 자체 구
매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검토

17. 국가전략기술 이차전지 분야 확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 소관 :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별표7의2, 시행규칙 별표 6의2

□ [현황]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BESS 보급 확대 추진

○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는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 완충, 전력망 안정화,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한 후 필요한 시간대에 공급하여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을 완충하고 계통 주파수를 안정시키는 설비

○ 기후부는 중앙계약시장* 확대와 장기 저장장치 육성을 추진 중이며,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저장장치 보급을 확대할 계획

* 중앙계약시장 : 전력거래소 등이 단일 구매자가 되어, 경쟁 입찰을 통해 발전 사업자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자와 장기로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시장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38년까지 장주기(장기) 저장장치 23GW가 필요한 것으로 산정하고, 중앙계약시장을 통해 '29년까지 2.22GW 확보 계획

□ [문제점] 수요는 공공 입찰이 견인하는 반면, 공급을 위한 민간 투자 유인이 부족하여 국내 생산 기반 확충에 한계

○ BESS 설치·운영시설은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지 않아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이 1~10%(대기업 1%) 수준에 그쳐 초기 투자 부담 완화에 한계

○ 미국·캐나다는 저장장치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직접 지급·양도·환급 등을 통해 공제액의 현금화를 지원, 투자유인 제고

구분	미국	캐나다
제도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IRC §48E)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CT ITC)
대상	저장장치를 포함한 발전·저장시설	배터리 저장장치를 포함한 청정기술 설비
공제율	투자비의 6%, 요건 충족 시 30% 이상	투자비의 30%
현금화	면세기관: 직접지급, 과세기업: 제3자 양도	납부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전액 환급
적용기한	'32년과 배출기준 달성 연도 중 늦은 해 이후 단계적 축소(100%→75%→50%)	'33년 가동분까지 30%, '34년 가동분 15%, '35년부터 폐지

- * 자료: 미국 연방법전(IRC §48E), 미국 국세청 및 현지 로펌·회계법인 해설, 캐나다 재무부
- * 공제율 적용 시점 : 미국은 공사 시작 시점, 캐나다는 설비 사용 시작 시점 기준으로 적용

□ [개선방안]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설치, 운영 등 관련 기술과 시설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및 투자지원 확대

○ 정부의 미래형 에너지 분야 개편과 연계하여 저장장치 관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포함을 병행 검토

- * 시행령 별표 7의2 및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관련 기술·시설 반영

○ 국민성장펀드·전력산업기반기금 연계 투자 보조·용자 프로그램 병행

현 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 선 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 2. 이차전지 <신 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 2. 이차전지 <table border="1"> <tr> <td>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운영 최적화 기술</td><td>재생에너지 출력변동 대응, 장주기 운전 또는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하여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충·방전 시점과 출력을 제어하며 상태진단·열관리·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기술</td></tr> </table>	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운영 최적화 기술	재생에너지 출력변동 대응, 장주기 운전 또는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하여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충·방전 시점과 출력을 제어하며 상태진단·열관리·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기술
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운영 최적화 기술	재생에너지 출력변동 대응, 장주기 운전 또는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하여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충·방전 시점과 출력을 제어하며 상태진단·열관리·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기술		

현 행(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 선 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 2. 이차전지 <신 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 2. 이차전지 <table border="1"> <tr> <td>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운영 최적화 기술</td><td>재생에너지 출력변동 대응, 4시간 이상 연속 방전 또는 주파수 조정·예비력 제공 등 전력계통 안정화 용도로 설치되고, 배터리·전력 변환장치·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되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시설</td></tr> </table>	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운영 최적화 기술	재생에너지 출력변동 대응, 4시간 이상 연속 방전 또는 주파수 조정·예비력 제공 등 전력계통 안정화 용도로 설치되고, 배터리·전력 변환장치·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되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시설
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운영 최적화 기술	재생에너지 출력변동 대응, 4시간 이상 연속 방전 또는 주파수 조정·예비력 제공 등 전력계통 안정화 용도로 설치되고, 배터리·전력 변환장치·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되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시설		

18. 배터리 업계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평가시설 구축

❖ 소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현황]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급성장으로 안전·성능 검증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요국은 시험·인증체제로 시장 선점

○ (국내) ESS 보급 물량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실제 규모로 안전·성능을 검증해야 하는 대상 물량도 함께 빠르게 증가

* ESS 중앙계약시장은 '23년 이후 3차례 입찰을 통해 1,196MW 규모의 사업을 선정했고, '26년 1,180MW 규모의 4차 입찰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26.9.22일)

○ (중국) 대규모 개방형 시험시설을 통해 인증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 지위 유지

*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은 샤먼시와 공동으로 약 10만㎡, 총투자 약 30억 위안 규모의 에너지저장 시험·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가동('26.5월)

○ (미국·유럽) UL·IEC 등 국제표준·인증체계와 긴밀히 연계해 시험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뢰도 높은 평가시스템 운영

*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의 시험·인증기관 /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 제정기구

< 해외 사례 >

구분	중국	미국·유럽
형태	대규모 공동 시험·검증 플랫폼	UL 및 IEC 등 국제표준·인증체계와 연계
효과	인증기간 단축·비용 절감	시험결과의 국제 통용성 확보

* 자료: 中 CATL 발표자료·UL Solutions·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문제점] 업계가 공동 활용할 실규모 시험·인증 기반이 없어, 기술력에 비해 인증 기간·비용 부담이 크고 신제품 검증에도 한계

○ (시험기반 부재) 대용량 ESS는 열폭주·화재확산·폭발, 장주기 운전, 계통연계 성능을 실규모로 반복 검증해야 하나 국내 기반 부재

- (해외 의존) 국내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실규모 시험·인증을 해외 기관에 의존해 시험 일정과 비용 측면의 부담 발생
- (신기술 검증) 나트륨·바나듐 등 비(非)리튬계 장주기 ESS 육성을 추진 중이나, 새 화학조성의 안전·성능 검증체계는 구축 단계
- [개선방안] 정부 주도로 국제표준과 연계된 ESS 실규모 공동평가시설을 구축하고, 국가 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체계 마련
- (공동평가시설) ESS 화재 평가·인증과 전력망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부 주도 실규모 공동평가시설 구축
 - * 컨테이너급 화재·열폭주 시험, 장주기 충방전, 계통연계·보호기능 검증과 표준화·인증 데이터 축적을 지원
 - ** 초기 투자는 크나 구축 후 업체 부담이 줄고, 평가 대기시간·신제품 출시기간 단축
- (국제표준 연계) 시험은 ISO·IEC 등 국제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인증은 UL 등 국내외 시험·인증기관과 연계해 추진
- (상호인정) 국가 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협정(MRA) 체계를 구축해 중복시험을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입장벽 완화
 -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협정이 정한 시험항목·지정기관의 결과를 상대국이 인정하는 제도

19. 국가전략기술 바이오 분야 확대 : 합성 의약품

❖ 소관 :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시행령 별표7의2, 시행규칙 별표 6의2

□ [현황] 제약·바이오 국가전략기술은 백신·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지정

○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의 보건안보와 직결되며, 글로벌 신약 개발은 신시장 창출과 기술수출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지정되어 있으나, 합성의약품 분야는 미지정

*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은 '21.7월 백신 최초 지정 이후 '23.7월 바이오의약품 추가 지정

* 의약품은 제조방식을 기준으로 바이오의약품과 합성의약품으로 구분

□ [문제점] 합성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미지정으로 신약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에 한계

○ 개발 경험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하기 위한 R&D 세제지원 강화 필요

○ 글로벌 빅파마는 바이오의약품 외에도 합성의약품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파이프라인 다각화에도 적극적으로 투자

* 국내 기업도 지속적인 합성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수출(L/O) 성과 창출 중

○ 합성의약품은 신약 개발과 기술수출 등의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국가 전략기술에서 제외되어 국내 기업의 R&D 투자 및 경쟁력 확보 제한

□ [개선방안] 국가전략기술의 바이오 분야 기술 지정 범위를 합성의약품까지 확대하여 신약 개발 지원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상 백신·바이오의약품 중심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범위를 합성의약품 분야(합성신약 및 원료의약품)까지 확대

○ 합성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장기 R&D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신약 개발 및 글로벌 기술수출 촉진

현 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 선 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 3. 백신 7. 바이오의약품 <u><신 설></u>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 3. 백신 7. 바이오의약품 <table border="1" data-bbox="812 434 1439 743"> <tr> <td data-bbox="812 434 986 743">9.합성 의약품</td><td data-bbox="986 434 1439 743">합성신약 및 원료의약품</td></tr> </table>	9.합성 의약품	합성신약 및 원료의약품
9.합성 의약품	합성신약 및 원료의약품		

20. 방산: R&D · 생산 활력 제고를 위한 법 · 제도 기반 마련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제105조

□ [현황] 방위산업은 현재 국가전략기술*의 하위 단계인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원 중이며,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국가전략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R&D·시설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

* ex. R&D 세액공제: 일반기술 0~2%, 신성장·원천기술 20~30%, 국가전략기술 30~40%)

○ 방산물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는 방산업체의 투자여력을 높이고 민수기업의 방산시장 진입을 촉진해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 방산물자 영세율 적용은 세수 감소라는 영향이 있으나, 동시에 정부의 조세 지출 감소라는 양면성을 갖기에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또한 동 제도는 국방예산 증액 효과가 있어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력 강화라는 공익에 부합

□ [문제점 ①] 방산 분야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정부 지원 필요

○ 추진체계, 군사위성 등 방산기술은 전 세계에서 일부 국가만 보유한 핵심기술로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이 긴요

*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미확보 시 기술 경쟁력 하락, 수출통제 등으로 자주국방력 강화와 방산 수출에 제약 발생

첨단 항공엔진 기술 분야 사례

- 우리나라는 4.5세대 전투기 시험비행에 성공
-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파키스탄 참여), 인도('25년 시제기 출시 목표), 스웨덴 등은 5세대 전투기 개발 진행 중
- 일본(영국·이탈리아 참여)은 '35년까지, 독일(프랑스·스페인 참여)은 '29년 첫 시험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30년 F-22 대체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 진행 중

□ [문제점 ②] 방산은 규제산업적 특성 및 국민 세수에 의한 사업으로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음

국방연구개발의 정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국방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나.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라.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마.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 방위산업은 기존의 독점적 구조에서 벗어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세수에 의한 사업을 이행하는 만큼 예산 제한까지 겪는 상황
- 방산 분야는 규제산업적 속성, 방산원가제도라는 특유의 가격결정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업체들의 방산시장 신규 진입도 어려움
 - * 방위산업은 체계업체 중심의 방산 수출로 이익 확대를 모색 중이나, 그 효과가 아직은 제한적
- 최근 급변하는 국방환경에서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적인 획득은 국방연구개발 본연의 목적 달성 및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

□ [문제점 ③] 국방연구개발 계약 특성상 사전에 명확한 계약금액 산정이
어려워 관련 부가가치세 조정계약 추진에 애로

- 최근 신속한 군수품 획득과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 체계개발·양산 통합 등 국방획득체계*가 유연화되는 추세**
 - * 국방획득체계: 군수품을 시기적절하게 조달·운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조직·절차·문화의 총칭
 - ** 예시: '19년 이후 통합계약(체계개발+양산단계 통합) 확대, '21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등
-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발·양산단계가 통합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감액계약을 체결해야 함
- 연구개발 방산계약은 대부분 일반개산계약* 형태로 체결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에 대한 원가와 품목별 계약금액 산정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산정에 애로
 - * 일반개산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 이행 후 정산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원가자료 획득이 어렵고 다른 계약방법 적용이 어려울 때 사용

□ [개선방안] ①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방산 분야를 추가하고, ② 국방연구개발에 의한 연구·생산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 확대

현 행(조세특례제한법)	개 선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생략)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u>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u>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좌동)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u>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을 하는 물자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u>

21. 우주기술 기술료 부담 완화를 통한 산업체 기술 활용 활성화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 [현황] 정부 R&D로 개발된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를 위해 기술 실시계약 및 기술료 제도를 운영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하고 우주기술의 민간 활용을 허용

* 우주항공청 소관 R&D의 기술료 납부·유예·감면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서 규정

□ [문제점] 사업화 성과가 불확실한 초기 단계의 기술료 부담이 기업의 우주기술 도입·사업화를 저해할 우려

○ 실제 매출·수익 발생 이전에 고정적인 선급 기술료를 부담하는 경우 기술검증·제품화에 추가 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초기 사업화 부담 가중

* 특히 우주산업은 기술 실증부터 실제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기술 활용 성과와 연계된 기술료 체계 필요

○ 정부 R&D 성과를 다시 정부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술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R&D 성과 확산·활용 촉진이라는 정책목표와 상충

* 현행법상 정부·지자체가 최종사용자인 경우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할 필요

□ [개선방안] 우주기술의 사업화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료를 성과연동형으로 개선하고 공공사업 활용 시 감면제도 활성화

○ 정부 R&D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시 초기 고정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고 실제 매출·사업화 수익과 연계한 기술료 방식 확대

○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정부 R&D 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현행법상 감면 근거를 적극 적용하고 구체적인 면제·감면 기준 마련

*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에 공공사업 활용, 초기 사업화 기업 등 기술료 감면사유와 적용절차를 구체화

○ 기술료 제도를 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 확보뿐 아니라 R&D 성과의 확산·사업화와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

22. 위성용 태양전지·PVA 등 우주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체계 마련

❖ 소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제12조

□ [현황] 저궤도 위성군·감시정찰위성 및 궤도상 AI 컴퓨팅 확대로
위성용 태양전지 셀·태양전지판(PVA)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 위성 등 우주 궤도상의 장비에서 관측 데이터를 AI로 직접 분석·처리하는 기술

○ 위성용 태양전지는 위성 전력계의 핵심부품이나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해 셀부터 패키징·패널까지 해외 기술·제품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우주용 부품은 개발 이후 우주환경 검증과 궤도실증 등의 확보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기존 태양전지 R&D는 지상용 중심으로 운영

* 방사선·열주기·진공 등 우주환경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필요해 지상용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

□ [문제점] 해외 핵심부품 의존이 지속될 경우 공급망·수출통제 리스크가
커지고, 국산화가 지연될수록 기술격차가 고착화

○ 특히 국방·안보용 위성은 핵심 전력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경우
안정적 조달과 우주산업 자립 기반이 취약해질 우려

* 위성의 대형화·고전력화에 따라 태양전지 효율과 단가가 위성 질량·발사비·운용 경제성까지 결정

○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주용 전용 R&D와 실증지원이
부족해 기술개발 이후 실제 탑재·사업화 단계로 연결하는 데 한계

* 신규 부품은 실증 이력이 없으면 위성 제작사가 채택하기 어려워 초기 시장진입 장벽이 높음

□ [개선방안] 우주용 태양전지 셀·PVA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개발부터 궤도실증까지 연계하는 전용 R&D 지원체계 마련

○ 셀뿐 아니라 우주용 패키징·PVA를 함께 핵심전략기술로 지정

*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 선정 시 전략안보적 중요성, 국내 기술수준, 시장성장성 등을 종합 고려 가능

○ 지상용과 구분된 우주용 전용 R&D 트랙을 신설하고 소재·셀 설계,
패키징·패널 제작, 우주환경 검증 및 궤도실증까지 패키지 지원

* 평가지표도 단순 효율·단가 외에 내방사선성, 열주기 내구성, 질량당 출력(W/kg), 궤도실증 여부 등을 반영

○ 국내 기반이 취약한 패키징·패널 분야의 전문기업 육성 및 공동 시험·
인증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여 우주 전력계 국산화 생태계 조성

23. 드론 시험공역 · 시험비행장 구축

❖ 소관 : 국토교통부·국방부·방위사업청 / 국토교통위원회·국방위원회

❖ 관련 법령 :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현황] 국내 드론 시험인프라는 영월 · 보은 등 6개 드론비행시험센터의 기체 비행안전성 · 운용성능 시험 중심으로 운영

○ 항공안전기술원이 레이더 · 비행추적 카메라 · 주파수 스캐너와 시험 · 정비시설을 갖추고 드론 연구개발 · 성능시험 지원

* 시험센터(6개소): 영월·보은·고성·화성·인천·의성

** 영월 시험공역: 반경 3NM(약 5.5km), 지표면~1,500ft AGL(약 450m)

○ 민간 드론의 야간 · 비가시권(BVLOS) 비행은 특별비행승인이 필요하며, 군용 무인비행장치에는 항공안전법 특례 적용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특별비행승인 신청),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군용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

□ [문제점] 기존 시험공역은 수 km급에 그쳐, 수십~수백 km급 군용 무인기(UAV)의 임무성능을 실제 거리에서 반복 검증 곤란

○ (공역 규모) 지휘통제(C2), 정보감시정찰(ISR), 위성통신(SATCOM), 탐지 · 회피(DAA) 등 장거리 임무성능 시험에 필요한 공역과 환경 부족

* 고도 5km 이상, 항속·임무반경 수백 km급 기체는 기존 수 km·수백 m급 시험공역과 요구조건 차이가 큼

○ (특수시험) 발사 · 분리, 모의탄두 운용, 대드론(C-UAS) 요격, 군집비행, GNSS(위성항법) 재밍 · 스푸핑 등을 상시 반복할 전용 시험환경 제한

* 무장·요격형 UAV 시험은 비행공역 외에 안전격리구역, 추적·통제, 전파관리, 비상종료 체계가 함께 필요

○ (절차) 비가시권 · 야간 시험마다 별도 승인과 군 · 민 공역 및 관계기관 간 조정이 필요해 신속한 반복시험 여건 확보 곤란

* 법 적용 특례와 별개로 공역 확보·예약, 안전통제, 주파수 사용 등 조정 필요

○ (운영체계) 민간 시험센터와 군 훈련공역·사격장·전자전 시험자산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임무시험장(Mission Test Range) 체계 미비

□ [개선방안] 국가급 무인기체계(UAS) 시험장을 지정하고 민·군 공동 운영체계 마련

○ (전용공역) 방산기업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국방 UAS 시험공역을 지정하고, 기존 6개 시험센터는 기본성능 시험 기능 유지

* 美 연방항공청(FAA)은 9개 UAS 시험장을 운영('26년)

○ (장거리·고고도) 장거리 시험회랑(Corridor)과 고고도 공역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되, 육상보다 위험이 낮은 해상축 중심으로 후보공역 발굴

* (목표 예시) 시험회랑 50km→100km→200km 이상(장기 500km급 검토), 수직공역은 5km급 우선 확보 후 7km 수준까지 확장

** 美 뉴멕시코는 197km×197km(약 38,800km²)·지표면~약 5.5km MSL(평균해수면 기준고도), 인디애나는 320km 이상 BVLOS 시험회랑을 군 시험장과 연계

○ (통합통제) 민간 시험시설과 군 훈련공역·사격장·전자전 시험자산을 연결하는 민·군 공동 시험통제(Range Control) 체계 구축

* 전자전(EW), 위성항법 거부환경(GNSS-Denied), 무장·요격형 UAV 특화 시험구역을 단계적으로 운영

24.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 소관 : 국방부(병무청)·산업통상부 / 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36조·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0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 [현황]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인재가 연구 공백 없이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이나, 대기업 연구기관 배정·전직은 원칙적으로 제한

○ (제도) 이공계 석·박사가 대학·기업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해 연구 경력 단절 없이 복무

* 복무기간은 현역보다 길지만 급여를 받으며 연구를 이어갈 수 있어 이공계 인력의 선호도가 높음

○ (대기업 제한) 대기업 연구기관은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과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직이 모두 원칙적으로 제한

* (배정) 병역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병무청 관리규정 제20조제1항

** (전직) 병역법 시행령 제85조는 병무청장이 고시한 대기업 연구기관을 전직 대상에서 제외('21.1월 편입자부터 적용)

○ (예외) AI 분야에 한해 대기업 연구소 배정을 한시 허용('27~'29년)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선정 우대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

* AI 분야 석사 전문연구요원 연 240명 중 120명을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배정(「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26.6월)

** (우대 근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4조제3호

□ [문제점] 우수 연구인력의 첨단전략산업 유입·정착 효과가 제한적

○ (인력 확보 곤란) 대규모 투자와 연구 인프라를 갖춘 첨단전략산업 대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제도 활용 유인도 저하

○ (대상 제한) AI 분야 석사만 대기업 연구소 배정이 허용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수요 불일치)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는 소규모·실무인력 중심이어서 박사급 연구인력 활용 여건이 제한적

- * 부설연구소 연구인력 중 박사 비중: 중소기업 5.7%(194,536명 중 11,109명), 중견기업 4.6%(63,862명 중 2,941명)
-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37,485개 중 2~4인 규모가 23,553개(62.8%)로 다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6.3월)

□ [개선방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기업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확대하고 타 기관으로부터의 전직 제한을 완화

- (인원배정) 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기업 연구기관을 배정 제한에서 제외
 - * 유용원 의원안('26.4월):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분야의 대기업에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 미적용
 - ** 고동진 의원안('24.7월): 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기업·대기업 연구기관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하고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허용
- (선정 우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대상에 포함(첨단전략산업법 제24조)
- (전직) 대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제한 완화(병역법 시행령 제85조)

25. 각종 부담금 감면을 통한 첨단산업 비용 부담 완화

❖ 소관 : 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 [현황] 현행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대상이 협소

○ 국가·지자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 등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입주기업 (중소·중견기업 한정)에 대해 부담금 감면 가능

* 감면 대상 부담금 : ▶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 [문제점] 감면 대상 범위가 협소하여 부담금 감면 제도 실효성 저하

○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선도하는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기업은 부담금 감면을 지원하지 않음

* 세액공제·인프라 지원 등 타 지원 혜택은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대비

○ 감면 부담금 항목들이 일회성이고, 이마저도 특화단지 입주 업체가 아닌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

□ [개선방안] 부담금 감면 특례 대상 및 감면 항목 확대

○ 부담금 감면 특례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

○ 전력산업기반기금·물이용부담금 등 납부 규모가 큰 부담금 항목을 감면 대상에 추가

* 경쟁 관계인 미국, 일본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물이용부담금 미부과

현행(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 선 안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u>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u>)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5. (생략) 6. < 추 가 > 7. (생략)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 삭 제 >)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5. (좌 동) 6. 「한강수계법」, 「금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 「섬진강수계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7. (현행 제6호와 같음)

26. 산업단지 내 증설 건축물의 별도 건축허가 특례 마련

❖ 소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위원회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1조·제16조

□ [현황] 사용승인 전 기존 허가 건축물에 별동을 증설하거나 대수선(내부 구조 변경)하려면 신규 허가가 아닌 기존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필요

○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별동을 증설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기존 허가 및 신고사항을 변경해야 함

* 건축법 제16조제1항: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외)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도 동일 허가 건에 대한 변경 인허가를 중복으로 진행할 수 없어 건물별로 순차 처리

□ [문제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여러 동의 증설·변경을 기존 허가의 변경으로만 처리해야 해, 인허가가 순차 진행되면서 공사가 지연

○ 반도체 시설은 하나의 생산라인에 다수의 공정과 부속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어, 인허가를 순차 진행할 경우 공사기간 장기화 불가피

○ 설계변경 처리에 대형 건물은 1~2개월, 일반 건물도 최소 2주가 소요돼, 3개 건물의 연속 인허가에만 최소 1.5~6개월 소요

* 최종 인허가 대상 건물은 순차 처리 기간만큼 공기가 지연되며, 사용승인도 세움터 접수부터 수리까지 2~3주 추가 소요 (※ 건축 허가 절차: 허가 신청 → 건축 허가 → 착공 신고 → 시공 → 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

□ [개선방안]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 내 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신고와 분리해 신규로 허가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서 기존 허가과 별개로 건축물을 추가 건축하는 경우 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민주당 박홍근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25.10월)

** 정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6.8월): “일정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의 경우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별도 허가 가능토록 건축법 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도 기존 허가와 분리된 신규
 허가 병행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현행 (건축법)	개선방향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략) <신설>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2(대규모 산업단지 건축허가의 특례) 신설: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 내 대지에서 기존 허가·신고 건축물과 별개로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증설)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기존 허가·신고와 분리하여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u> ※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25.10.24일) 참고, 대상 면적 등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27. 산업단지 산업용지의 분할·처분 및 임대 특례 확대

❖ 소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9조의2

□ [현황]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증설로 협력사 부지 공급 수요가 발생하나, 현행법은 산업용지 분할·임대사업 입주계약 시점과 조기 처분을 제한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기 확보한 가스플랜트 부지 등을 향후 선정되는 협력사에 신속히 공급할 필요

* 용인 반도체 팹 2기 대응용 가스플랜트 부지 공급과 추가 공장 건설 일정이 연계

○ 현행 산업집적법은 산업용지의 분할·처분과 임대사업 입주계약을 원칙적으로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이후로 제한

*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의 분할·공유지분 처분을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이후로 제한(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2항)

**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38조), 원칙적으로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임대사업 입주계약 체결을 허용(제38조의2)

□ [문제점] 산업용지의 분할·처분 시점과 임대사업 입주계약 요건이 제한돼 협력사 부지 공급과 특수목적법인(SPC) 활용이 곤란

○ 현행법상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이전 협력사에 대한 부지 직접 매각이 제한돼 가스플랜트 부지 공급과 추가 공장 건설 일정에 차질

*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전이나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같은 법 제39조제1항)

○ 아울러 연접 입주기업체 지원 등 일부 산업용지 임대에만 특례(산업집적법 제38조의3)를 두고 있어, SPC가 산업단지 내 팹을 건설해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방식은 활용이 곤란

□ [개선방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정해 공동출자법인의 생산시설
건설·임대와 협력사 부지의 조기 분할·처분 허용

○ 임대특례 대상에 정책펀드 공동출자법인을 추가해 산업단지 내
생산시설 건설·임대 허용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출자법인으로 한정하고 임차인을
입주기업체로 제한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도 협력사 부지 공급을 위한 분할·처분 허용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에서 전·후방 협력사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관리기관 협의 절차 유지

현 행(산업집적법)	개 선 안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u>공동출자법인을 포함한다</u>)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1.~3. (생략) <신설>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u>공동출자법인을 포함한다</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u>공장</u>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가 참여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이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공장등을 설치하여 해당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려는 경우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생략)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 을 포함한다)를 처분하려는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 을 포함하 <u>되</u> ,

현 행(산업집적법)	개 선 안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생 략)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전·후방 협력기업에 공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분할한 산업용지는 제외한다)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②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②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전·후방 협력기업에 공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전을 포함한다)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8. 정책펀드 공동출자법인의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인정

❖ 소관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위원회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

□ [현황]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부담으로 정책금융 공동출자법인(SPC) 활용 수요가 확대되나,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은 취득자의 직접 사용에 한정

○ 첨단산업은 단일 기업의 자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돼,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이 출자하는 SPC를 활용한 투자 방식 확산

* 사업회사가 보유 부지를 공동출자법인에 매각하고, 해당 법인이 공장을 건설·임대해 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한 뒤 임대차기간 종료 시 사업회사가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구조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되, 취득자 직접 사용을 전제로 함

* 공장 신축용 토지와 신축·증축한 공장 건물이 감면대상이나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감면(제78조 제5항 제2호가목)

□ [문제점] 소유·사용이 분리되는 공동출자법인 구조에서는 해당 법인과 사업회사 모두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금융 활용에 한계 존재

○ (공동출자법인) 공장을 대기업 등 사업회사에 임대하는 경우, 현행법상 중소기업 임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사업회사) 감면받아 취득한 산업용지를 공동출자법인에 매각하면 동 부지에서 임차 형태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더라도 직접 사용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세액 추징

* 취득 후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2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하면 기존 감면세액 추징(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7항)

○ 산업단지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제조업 투자임에도 소유구조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이 증가해 정책금융 활용에 제약

□ [개선방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공동출자법인 투자구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고 사업회사의 추정 사유에서 제외

○ 감면 대상인 임대인 범위에 공동출자법인이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를 추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참여한 공동출자법인으로 대상 한정

○ 사업회사가 공동출자법인에 임대·매각하는 경우를 추정 사유에서 제외(법 제78조 제7항)

* 동일 부지에서 제조업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조성 취지와 의 정합성 확보

○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임대분·매각분부터 적용(부칙)

현 행(지방세특례제한법)	개 선 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⑤ (생 략) 1. 대상 지역 가.~다. (생 략)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⑤ (현행과 같음) 1. 대상 지역 가.~다. (현행과 같음)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같은 법에 따른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취득하여 해당 특화단지의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⑦ (현행과 같음)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현 행(지방세특례제한법)	개 선 안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아니하는 경우(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와 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신 설>	부 칙 제○조(산업단지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추징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동출자법인에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78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동출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9.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원

❖ 소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위원회

❖ 관련 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

□ [현황]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에서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는 제외

○ (분양가 제한)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는 '조성원가+적정이윤'으로 제한되는데도, 준공 후 개발부담금으로 개발이익을 추가 환수

* 적정이윤율은 조성원가의 1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

* (관련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제2항제3호

□ [문제점] 수도권 여부만으로 일괄 배제해, 개발 필요성이 큰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확일적 기준)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산업을 이전·유치하는 지역임에도 과밀억제권역과 동일 기준 적용

*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관리하는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사업성 저하) 분양가가 제한된 구조에서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민간투자 위축

□ [개선방안]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소재 산업단지에 한해 개발 부담금을 경감하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소재 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 50% 경감

○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50% 지원

* (유사 사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율을 수도권 50%, 비수도권 70%로 차등 적용

30.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한 하수재이용 관련 지원 확대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관련 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3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4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5조·제99조·제100조

□ [현황] 반도체 공업용수 확보 수단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부상했으며, 재이용시설은 주로 민자사업(BTO)과 일부 국비 보조로 추진

- *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지자체에 넘기고 일정 기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추진 배경) 반도체 업계는 지역별 용수 부족과 가뭄에 대비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 추진
 - * 정부도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30만톤/일을 광주제1하수처리장 재이용수로 공급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 '26.8월)
 - ** 공장 폐수 내부 재이용은 방류량이 줄어 하류 하천이 마르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방류량을 유지하면서 댐 취수량 감축
- (추진 방식) 환경부 지침이 공업용수 재이용사업을 “가급적 BTO로 추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정사업 추진에 제약
 - * 환경부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하수도 분야)」('25.7월)

□ [문제점] 민자 절차 장기화와 기업·지자체의 비용 부담으로 적기 용수 확보에 한계가 있고, 반도체 지원법령상 지원 범위도 불명확

○ (절차 장기화) 타당성조사, 제3자 공고, 협상·실시협약 등 민자 절차에 장기간이 걸려 반도체 투자 일정에 맞춘 용수 확보 곤란

〈A사 청주사업장 하수재이용 민자사업: 착수~착공 42개월〉

단계	시기	소요기간	규정 기한
사업 착수('17.8월) 이후 타당성조사(공공투자관리센터)	'18.11월	15개월	제안서 검토 60일 (검토의뢰일 기산, 기본계획 제95조·시행령 제7조)
제3자 제안공고	'19.6월	7개월	검토결과 통보 후 1년 이내(제97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9.9월	3개월	공고기간 90일 이상(제99조)
실시협약 체결	'20.9~10월	12~13개월	협상·실시협약 1년(제100조)
실시계획 승인·착공	'21.1~2월	3~5개월	승인 신청 후 3개월(제103조의2)
총 소요 기간		42개월	관계사 집계 기준 제안서 접수부터 44개월

* 자료: 청주시 「시정 주요업무계획」('22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민투법 시행령 등 소요기간은 자체 산출, 관계사 집계는 제안서 접수 기준

○ (지원 근거) 반도체특별법령상 용수공급시설 국가·지자체 부담률은 50~100%이나, 하수재이용시설 포함 여부가 불명확

- * 시행령 제20조제2항은 대상을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용수공급시설'로만 정의해 재이용시설 해당 여부에 해석 여지
- ** 물재이용법 개정('26.12.10일 시행)으로 국가의 직접 설치·운영이 가능해지나, 반도체클러스터·특화단지 우선 선정 근거는 미규정

○ (재정 부담) 국비 지원은 총사업비의 40%에 그치는 반면, 대만은 중앙정부 보조만으로 재생수창 총경비의 72~92% 부담

- * (청주시 '22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총사업비 622억원 = 국비 249억원 + 시비 62억원 + 민간 311억원
- ** 기준보조율은 광역시 30%·시군 60%, 민자사업은 정부부담분의 60~90%만 국비 지원(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34호, 환경부 실무요령)
- *** (대만) 재생수창 건설비 지원: 타이난 용강 72.4%(23.89억TWD), 안평 78%(약 32억TWD), 인덕 92%(약 7.93억TWD)

□ [개선방안] 반도체클러스터·특화단지 하수재이용시설의 민자 절차를 단축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 기업·지자체 부담 경감

○ (절차 단축) 반도체클러스터·특화단지 하수재이용시설의 민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착수~착공 기간 단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 제안서 검토 60일→30일, 적격성조사 210일→120일, 제3자 제안공고 90일 이상→30일, 협상·실시협약 1년→6개월
- ** 반도체특별법 제27조의 신속처리 특례를 민간투자 절차에 준용

○ (지원 명확화) 하수재이용시설을 반도체클러스터의 필수 용수공급시설로 명시하고 국가 지원 확대(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 특화단지(클러스터 지정 전)는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기준보조율 90%를 신설하고, 환경부 실무요령의 민자 국고지원율을 100%로 개정
- (우선 반영)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하수재이용시설은 반도체클러스터·특화단지의 용수 수요를 우선 반영(물재이용법 제23조)

31. 수용재결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 개선

❖ 소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위원회

❖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 [현황]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재결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재결 경우)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이의신청,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 직행)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행정소송 제기

* 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 [문제점]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보상 조기 종결 곤란

○ (절차 중복) 이의재결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를 동시에 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후 다시 이의재결을 신청하는 사례 발생

* 이 경우 법원은 이의재결 결정 전까지 행정소송 판결을 보류

○ (대응 부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직후부터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에 동시 대응해야 하고, 소송 직행에 따른 조기 종결 효과도 상실

□ [개선방안] 이의재결 신청 시 그 결정 전까지 행정소송 제기를 제한하고, 행정소송 제기 후에는 이의재결 신청 불허

[3]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32. 유화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유휴설비 철거·폐쇄 지원 근거 마련

❖ 소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현황]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의 대규모 증설 등에 대응하여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 생산능력 감축 및 기업 간 사업재편 추진

○ 특별법 시행으로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규제특례, R&D·고용지원 등의 기반 마련

□ [문제점] 사업재편에 따라 폐쇄되는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의 철거·환경 복구 비용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 미흡

○ 석유화학 설비는 일반 제조설비와 달리 해체·철거 과정에서 잔존 화학물질 및 위험물 처리, 안전조치, 토양·환경 복구 등으로 기업의 추가 비용부담 발생

○ 정부 정책에 따라 생산능력을 감축한 기업이 설비 폐쇄 이후 철거·복구비용까지 전액 부담할 경우 사업재편 참여 유인이 저하될 우려

○ 노후·유휴설비가 비용부담 등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산업단지 내 안전·환경 위험이 증가하고 유휴부지의 고부가가치 투자 활용도 제약

□ [개선방안] 정부 승인 사업재편에 따라 폐쇄되는 생산설비의 철거·환경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생산설비의 해체·철거, 위험물질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 철거 완료 후 유휴부지를 고부가·친환경 석유화학 설비, 첨단소재 등 신산업 투자에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 우대 검토

33. 무탄소에너지 인증 및 거래체계 마련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 [현황]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탄소 배출량 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등 전력부문의 탈탄소 요구 확대 추세

*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상장사('28년) → 5조원 이상으로 확대('29년)

○ 전력부문의 탈탄소 요구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 대두

□ [문제점] 무탄소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거래 관련 제도 부재로 국내 기업의 전력부문 탈탄소 부담 가중

○ 해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탈탄소 이행수단으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

구분	대상 원전	수요자	계약내용	발표일
원전	TMI	 Microsoft	20년간 공급('27년 공급목표)	'24.9월
재가동	Duane Arnold	 Google	25년간 공급('29년 공급목표)	'25.10월
기존	Clinton	 Meta	20년간 공급	'25.6월
원전	Susquehanna	 amazon	42년까지(연장가능) 공급	'25.6월

□ [개선방안] 무탄소에너지 관련 규정 신설 및 개념의 국제 표준화 노력

○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 및 인증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무탄소에너지의 인정 범위, 조달 수단과 방법, 사용(이행) 실적의 제출과 인정 방법 (검증) 등의 세부적인 내용 포함

○ 무탄소에너지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일반 원칙과 기본 개념을 국제 표준화하는 노력을 통해 국제 통용성 확대 병행 추진

3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 확대

❖ 소관 :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현황] 반도체 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나 공급·비용 부담이 지속돼, 정부는 조달체계 개편과 공급기반 확충을 추진

○ 반도체 기업은 고객사의 공급망 탈탄소 요구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확인 · 증빙 필요

* 애플·구글·MS 등 고객사의 청정에너지 요구에 따라, 반도체 생산 시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수주 조건으로 중요해지는 추세

* 재생에너지 조달단가: 150원/kWh('23년) → 약 190원/kWh('26년) 27% 가량 상승(관계사)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계약시장 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체계 개편과 공급기반 확충 지원을 병행

* 자체 발전·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으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는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보급의무 및 경쟁입찰 기반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중심으로 개편(재생에너지 개정법, '27.1.1일 시행 예정)

* 계약시장 제도: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에너지원별 용량을 공고하고, 장기 고정가격 등으로 낙찰·설치된 설비의 전력을 구매의무자가 구매하는 제도

* 재생에너지 사업용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5항), 산업단지·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사업 지원 대상에 추가(개정법 제27조제1항제2의2, '27.3.16일 시행 예정)

□ [문제점] 보급목표와 현재 설비용량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기업의 발전설비 직접투자가 필요하나, 현행 세제로는 투자 유인이 부족

○ (공급격차) 정부는 '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하나 현재 설비용량은 40GW에 못 미쳐(기후부, '26.10월), 기업이 직접전력거래만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곤란

○ (투자 유인 부족) 일부 태양광 발전시설에 우대공제가 적용되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반에 반도체 사업화시설 수준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 기본공제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순): 일반시설은 1%·5%·10%, 신성장 사업화시설 3%·6%·12%, 반도체 사업화시설 20%·20%·30%

- 정부 세제개편안상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풍력을 지원분야(6대 분야)에 포함해 공급(제조) 생태계를 지원하나, 해당 설비를 소비하는 수요(투자)측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 반감 우려
 - *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해(조특법 개정안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조·투자 양단의 지원이 서로 배타적으로 작동
- (해외 대비 열위) 미국·캐나다는 발전·저장 설비 투자에 높은 공제율과 양도·환급 등 수단을 제공하고 있어 민간투자를 견인

〈 해외사례 〉

구 분	미 국	캐 나 다
제 도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IRC §48E)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CT ITC)
공제수준	기본 6%, 임금·건설 요건 충족 시 최대 30%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액의 최대 30%
현금화	과세기업은 양도, 면세기관 등은 직접지급	적격 투자비의 최대 30% 환급형 공제

※ 자료: 미국 연방법전(IRC §48E), 미국 국세청 및 캐나다 재무부

- * 캐나다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는 소수력·강류식 수력 등 적격 발전설비의 적격 투자비에 대해 최대 30%를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

□ [개선방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별도 공제구간을 신설하고, 국내산 설비 활용 시 우대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별도 공제구간(중소 30%·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25%·그 밖 20%)을 조특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신설
 - * 기업이 자가소비 또는 직접전력거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발전설비로 대상 한정
 - * 적용기한은 국가전략기술 세부시설과 같은 2029.12.31.로 설정하고, 중견기업 별도 구간 없이 “그 밖의 경우”에 포함(반도체 분야와 동일한 30%·25%·20% 수준)
 - * 해외사례를 참고해 기준공제율을 20%(중소기업 30%)로 설정하고, 정부안의 투자지역별 비율(수도권 1.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을 적용해 실효 공제율이 30% 수준에 이르도록 설계
- 국내에서 생산한 설비·기자재를 활용하는 경우 우대공제율을 적용해 투자유인과 국내 공급망 형성을 연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현 행(조특법 세제개편안)	개 선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생 략) 1. (생 략)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과 5)의 비율을 곱한 금액 1)~3) (생 략) <신 설>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정부안과 같음) 1. (정부안과 같음)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1)부터 5)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과 6)의 비율을 곱한 금액 1)~3) (정부안과 같음) 4) <u>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국인이 자가소비하거나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u>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5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20
4) 1)부터 3)까지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가)~라) (생 략) 5) 투자지역에 따른 비율: 제10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 나. (생 략) ②~⑤ (생 략)	5) 1)부터 4)까지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가)~라) (정부안과 같음) 6) 투자지역에 따른 비율: (정부안 5)와 같음) 나. (정부안과 같음) ②~⑤ (정부안과 같음)

35. GHG 프로토콜 전력 시간단위 매칭 기준 강화 기조 대응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황] GHG 프로토콜* 등 글로벌 탄소중립 표준은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산정 기준 강화 추세

* 비영리단체 WRI가 만든 글로벌 표준으로, 정부와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 중 Scope 2 가이드라인은 구매 전력/스팀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시

○ 현재 기준 GHG 프로토콜 개정이 진행 중으로, 기존 연간 단위의 재생에너지 조달 인증 기준에 대해 시간적·지리적 매칭 기준 강화 전망

□ [문제점]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산정 기준이 강화되면 재생에너지 공급 및 데이터 관리 여건이 열악한 지역 내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 활용 한계

○ 재생에너지의 시간 단위 매칭을 위해 전력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가 수반되어야 하나,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제반 준비 미흡

□ [개선방안] 글로벌 표준이 확정되기 전 정부 차원에서 GHG 프로토콜 개정 경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정부·공공기관·산업계 공동으로 GHG Protocol Scope 2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전력시장 여건을 반영한 정부 차원의 공식 의견 제시 및 국제 논의 참여

○ 시간·지역 매칭 적용 시 각국의 전력시장 및 데이터 인프라 수준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 단계적 적용 및 Legacy 조항이 마련되도록 의견 제시

○ 국내에서도 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의 시간단위 발전량·사용량 및 재생에너지 속성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시간단위 재생에너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로드맵 마련

36. 직접 PPA의 N:N 계약 방식 허용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 [현황] 직접 PPA 계약은 전기사용자와 재생e전기공급사업자* 간 직접전력 거래계약과 발전사업자와 재생e전기공급사업자 간 전력공급계약으로 구성

*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직접 PPA를 중개할 수 있는 사업자

○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를 기준으로 1:1, N:1, 1:N 형태의 계약으로 제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계약의 체결) 전기사용자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다음 각호의 유형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

1. 단일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 (1:1 계약)
2. 다수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단일한 전기사용자는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계약은 개별적으로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N:1 계약)
3.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각 전기사용자는 개별적으로 제4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비계통연계형 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의 사용자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 (1:N 계약)

※ 국정과제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중 기업유치를 위한 분산형 모델(재생 e 직접 거래) 및 재생e 요금 강구 등을 명시

□ [문제점] 중소·중견기업(전기사용자) 및 소규모 발전설비(발전사업자)의 직접 PPA 계약 형태의 계약으로 RE100 활성화 저해

○ 한국형 RE100에 등록된 기업의 상당수(47%, '22년)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며, 태양광은 1MW 이하 중소형 설비 중심(82.0%, '23년)으로 구성

○ 소규모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약 형태의 제약은 시장 확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다수의 발전소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PPA가 가능한 N:N 거래 허용

○ 단, N:N 거래 방식은 다중의 채무불이행 위험, 잉여·부족전력 발생 시 대응 책임 소재 문제가 존재해 해당 리스크를 경감해줄 수 있는 주체 필요

* 한국에너지공단, 한전 등 공공에서 집합(pooling)하여 N:N 계약을 중개함으로써 상기 리스크를 경감해주는 방식 검토

현 행	개선안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계약의 체결) 1. _____ 2. _____ 3. _____ <신설>	제8조(계약의 체결) 4. 다수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7. 대수력 발전의 직접전력거래(PPA) 허용 및 정산기준 마련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31조,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2·제5.3.1조

□ [현황] 대수력은 기업이 단·중기에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자원이나, 중앙급전발전기로 운영돼 직접전력거래(PPA) 활용에 제약

○ 태양광·풍력은 계통접속 지연과 입지 제약 등으로 단기간 내 대규모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어 기존 대수력 활용 필요성 증가

* 태양광·풍력은 계통 접속 지연과 입지 제약으로 인해 '30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전력계통 포화로 한국전력이 호남·동해안·제주 변전소 205곳을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24.5월), 호남권은 '32.1월 이후 접속을 전제로 한 발전사업 허가만 가능(산업부 보도자료, '24.5.30일)

○ 대수력은 전력수급 및 계통 상황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중앙급전발전기로 운영

○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수력발전기의 전력시장 거래를 중심으로 정산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직접전력거래를 위한 세부 기준이 미비

* 중앙급전 수력발전기의 직접전력거래 참여 가능 범위와 계약분·시장거래분의 계량·정산, 급전제약 발생 시 처리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문제점] 세부 운영기준 미비로 기업의 대수력 직접전력거래 활용에 제약

○ 발전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물량의 정산 및 급전제약 발생 시 처리방식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워 대수력 PPA 추진에 부담

○ 해외에서는 수력발전소와 최종 전력수요자 간 장기 PPA를 활용 중

*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Mahoning Creek 수력발전소(6MW) 10년 계약 체결('13년)

** (캐나다) 주영 발전사 Hydro-Québec·알루미늄 제련사 Aluminerie Alouette 간 전력공급 양해각서 체결('25.7월, '30.1월~'45.12월 1,035MW 공급)

*** (노르웨이) 국영 발전사 Statkraft·알루미늄 제조사 Norsk Hydro 간 장기('29~'38년) 전력 구매계약 2건 체결('26.4월)

- 중앙급전 자원의 직접전력거래 허용 시 계통 안정성 저하와 저가 전력의 특정 기업 집중 우려가 있으나, 계약 조건 등을 통해 보완 가능
 - * 계약서에 급전지시 우선 적용을 명시하면 계통 운영상 지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 허용 총량 설정과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 의무 부과로 특정 기업 집중 우려에 대응 가능

□ [개선방안] 계통 안정성 유지를 조건으로 대수력의 직접전력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계약분 정산·급전지시 기준 마련

- 계통 안정성 유지를 조건으로 대수력의 직접전력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
 - * 국가전략기술 분야 수출 제조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연도별 허용 총량 설정
 - ** 허용 기업에 국내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의무를 부과해 형평성 확보
- 직접전력거래 계약분의 전력량·용량 정산방식과 급전지시 처리기준 마련

현 행(전력시장운영규칙)	개 선 안
별표 2 정산기준 Ⅰ. 발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나. 수력발전기 ① 발전계획량 이내에서 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거래일의 총 발전계획량 이내에서 실제 발전한 전력량은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발전계획 시간대의 가중평균 MP로 정산한다. <후단 신설>	별표 2 정산기준 Ⅰ. 발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나. 수력발전기 ① 발전계획량 이내에서 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거래일의 총 발전계획량 이내에서 실제 발전한 전력량은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발전계획 시간대의 가중평균 MP로 정산한다. <u>다만,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중앙급전 수력발전기가 해당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가중평균 MP에 의한 전력시장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초과발전량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MP에 의한 정산금을 지급한다.</u>
2.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 나. 수력발전기 수력발전소 용량정산금(CPi,t)은 발전사업자가 입찰시 제시한 발전계획량과 거래시간별 재선언한 발전계획량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한다. <후단 신설>	2.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 나. 수력발전기 수력발전소 용량정산금(CPi,t)은 발전사업자가 입찰시 제시한 발전계획량과 거래시간별 재선언한 발전계획량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한다. <u>다만,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중앙급전 수력발전기가 해당 계약에</u>

현 행(전력시장운영규칙)	개 선 안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량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3.1조(급전지시) ④ 전력거래소는 양수발전기, 수력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거래일의 총 발전계획량을 전력계통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입찰시간대 발전계획량을 초과 또는 미만으로 조정하여 급전지시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3.1조(급전지시) ④ 전력거래소는 양수발전기, 수력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거래일의 총 발전계획량을 전력계통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입찰시간대 발전계획량을 초과 또는 미만으로 조정하여 급전지시 할 수 있다. <u>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된 수력발전기의 발전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발전사업자는 일일 발전가능 전력량을 전력거래소에 통지하고,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간대별 발전량을 결정·지시한다. 이 경우 직접전력거래계약 이행에 필요한 발전량을 우선 고려하되 계통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u>

38. PPA 부대비용 경감 및 인센티브 확대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신재생에너지법

□ [현황] RE100 이행기업은 PPA(전력구매계약) 등 이행수단별 추가비용을 부담

○ RE100 이행기업은 전력망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적인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와 비교해 재생에너지 구매 시 일정 수준의 비용*을 추가 부담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보강 및 유연성 자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대비용 및 부족전력 공급 전기요금 등 시스템비용 증가 전망

※ 기후에너지환경부('26.7월) 『온라인 PPA 중개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 [문제점]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비용은 기업의 RE100 신규 진입 유인을 감소시키며, 기존 이행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

○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주요 경쟁국 대비 1.5~3배 수준으로 평가되며, 국내에서 RE100을 이행하는 데 가장 큰 장벽으로 높은 조달비용 거론**

* 국가별 태양광 발전단가(달러/MWh, '23년 기준) : 인도(26~47), 중국(31~54), UAE(33~47), 프랑스(38~59), 독일(50~69), 미국(52~79), 한국(78~147)

출처: 한국수출입은행('24년)

** 2024 RE100 연간보고서(The Climate Group & CDP, '25년)

○ PPA 계약 시 부가정산금 및 거래수수료 등 시스템비용이 기업에게 추가 부담되어 비용 상승으로 연결

□ [개선방안] RE100 이행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조달 인센티브 부여 및 PPA 부대비용 경감으로 재생e 수요를 촉진하고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

○ RE100 이행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거래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무역보험*료 인하, 정부 공사 입찰 시 가점 부여 및 우선구매제도 시행 등 인센티브 부여

* 수출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 PPA 부대비용을 타국*과 재생e 경쟁력이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면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시스템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 제고

* [대만] '23년부터 PPA 망이용료의 80%를 경감, 할인율을 매년 20%p씩 줄여 '27년에 완전 일몰(0% 할인) 구조로 설계

○ 호남 등 계통혼잡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DR*(수요반응) 참여 성과 우수 기업에 대한 조건부 시스템비용 경감 요청 방안 검토

* 기업이 전력사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력계통 위기 시 전력사용을 줄이거나 늘려 국가 전력망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

○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전기사용자의 위치, 송전거리, 계통혼잡 및 출력 제한 완화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지역·시간대별 PPA 망이용요금 차등 할인 등 인센티브 적용 필요

○ 전력 경부하 시간대(저녁~심야)의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를 위해 풍력·ESS 등 비태양광 자원을 활용한 PPA 공급분에 대한 부대비용 경감 및 인센티브 적용 필요

39. 전기 사용자의 PPA 가격구조 선택권 확대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 [현황] RE100 이행수단으로 기업의 직접 PPA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

○ 전체 PPA 계약용량 1,679MW 중 직접 PPA가 1,661MW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직접 PPA 계약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 출처: 부산연구원(2025), 시민출자 기반의 부산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구축 방안

※ 기후에너지환경부('26.7월) 『온라인 PPA 중개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 [문제점] 현행 직접 PPA 고시에 따르면, 거래단가 변경 시 효력발생 1개월 전까지 변경신고를 요구해, 주기적으로 단가가 변동되는 형태의 계약 불가

○ 해외는 PPA 가격을 고정단가뿐 아니라 전력시장·소매요금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설정(예시. 소매 전력가격 대비 x% 할인된 가격)

□ [개선방안] 한전 전력요금·시장지표 등에 연동되는 가격 산식을 계약 및 최초 신고 시 확정된 경우, 산식에 따른 단가 변동은 별도 사전 변경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사후 정산내역 제출 또는 연 1회 일괄신고 방식 등을 도입하여 전기사용자의 PPA 가격구조 선택권 확대 필요

40. 전기사용자 투자연계형 직접 PPA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황] RE100 이행수단으로 기업의 직접 PPA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

○ 전체 PPA 계약용량 1,679MW 중 직접 PPA가 1,661MW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직접 PPA 계약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 출처: 부산연구원(2025), 시민출자 기반의 부산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구축 방안

※ 기후에너지환경부('26.7월) 『온라인 PPA 중개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 [문제점] 전기 사용자가 발전사업에 지분 참여 또는 자금투자를 통해 사업 위험을 분담하더라도 직접 PPA와 동일한 추가비용을 부담해 유인 감소

○ 인도는 전기 사용자가 발전사업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Captive 발전제도를 운영

→ 일반적으로 26% 이상 지분 보유 및 발전량의 51% 이상 자가소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비용을 면제해 수요기업의 투자를 유도

* 인도 Captive 제도는 직접 PPA와 동일한 제도는 아니지만, 전력소비자의 발전사업 투자와 장기 전력구매를 연계해 비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 개선 시 참고 가능

□ [개선방안] 투자연계형 직접 PPA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수준 이상 지분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투자를 하고, PPA를 통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

○ 거래수수료·정책성 추가비용 감면, 계통접속 또는 사업선정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41. 지분 보유 PPA 초과발전량에 대한 Banking 제도 도입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 [현황] 직접 PPA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초과발전량을 전력 시장에서 거래하고 공급인증서(REC)* 발급 가능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초과발전량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 사업자*의 공급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전력량을 의미

*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직접 PPA를 중개할 수 있는 사업자

※ 국정과제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중 기업유치를 위한 분산형 모델(재생e 직접 거래) 및 재생e 요금 강구 등을 명시

□ [문제점] 전기사용자(기업)가 PPA 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일정 비율 지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발전량에 대한 활용권한 제한

○ 인도는 전기사용자가 발전사업자와 PPA 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에 일정 비율(26%)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Banking 제도*를 통해 초과발전량을 시차를 두고 동일 월(月) 내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 발전량 잉여 시 초과발전량을 ‘예치’ 후 부족 시 ‘인출’하는 제도(출처: Electricity (Promoting Renewable Energy Through Green Energy Open Access) Rules, '22년)

□ [개선방안] 전기사용자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PPA 계약 체결 시 초과발전량에 대한 Banking 제도 도입

○ 또는 유사한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수전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규모를 재생에너지로 최대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42. 석유화학제품 품질 · 안전 · 환경 관리체계 고도화

❖ 소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2조, 제5조, 제15조

□ [현황]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가운데 저가 수입제품 확대와 품질 · 안전 · 환경 기준의 중요성이 동시에 증가

○ 중국 · 중동 등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공급과잉과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생산기반의 부담 확대

○ 미국 · EU 등도 안전 · 환경 · 탄소 등 비가격적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로, 국내 역시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품질 · 안전 · 환경 기준 적용 필요

□ [문제점] 석유화학 원료 · 제품별 품질 · 안전 · 환경 관리가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고 일부 분야는 관리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음

○ 산업표준화법상 KS는 품질관리 수단에 해당하나 모든 석유화학 수입품에 강제 적용되지 않으며, 제품안전기본법도 모든 벌크 석화원료를 포괄적으로 규제하지 않음

* KS: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

○ 화학물질 등록 · 유해성 규제는 국내 제조물질과 수입물질에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입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강화는 통상규범상 제약

* 유해화학물질 취급 탱크·시설의 설치·검사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상 국내 취급시설 규제로, 수입제품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관세 조치와는 구분할 필요

○ PVC(폴리염화비닐) 등의 원료는 다양한 소비재 · 건축자재 등에 사용되므로 최종 용도별 유해물질 · 성능기준을 정교화할 필요

□ [개선방안] 국내산과 수입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품질 · 안전 · 환경 기준을 단계적으로 고도화

○ 석유화학 원료 및 제품별 위해성 · 용도 · 소비자 노출 수준을 고려하여 KS, 안전기준, 화학물질 관리기준 및 시험 · 인증체계 정비

○ 중장기적으로 재생원료 사용, 제품환경성 정보, LCA 기반 탄소정보 등 환경기준을 확대하되 국내외 동종제품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 국제표준을 기초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WTO TBT 협정상 비차별·필요성·투명성 원칙 및 사전 통보 절차 준수

43. 석유화학 전용부두 접안능력 재평가 · 합리화

❖ 소관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관련 법령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현황] 석유화학 산업은 원료 반입 · 제품 반출의 해상운송 의존도가 높아 전용부두의 접안가능 선박 규모가 물류비 경쟁력에 직접 영향

○ 여수·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집적항만의 일부 전용부두는 준공 당시의 선박제원과 설계 조건을 기준으로 접안능력이 설정되어 있어 최신 시설·운항 여건을 반영한 재평가 필요

* 접안능력은 부두 구조강도뿐 아니라 수심, 항로 폭, 선회장, 계선·방충시설, 하역설비 및 선박 조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현행 제도상 기존 전용부두의 접안능력을 일괄 재평가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신속히 조정하는 별도 절차는 미흡

□ [문제점] 실제 시설·수역 여건상 대형선 접안이 가능하더라도 기존 기준으로 접안능력이 제한되면 운송비 절감에 한계

○ 대형선 투입 제한 시 선박 운항 횟수와 하역 횟수가 증가해 톤당 운송비가 상승하고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원가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 동일 물량 운송 시 선박 대형화는 일반적으로 운항 횟수와 단위당 운송비 절감에 유리

○ 접안능력 상향을 위해 기업이 구조안전성·수역조건·하역설비 등을 개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

* 특히 현행 제도는 사업재편에 따른 원료·제품 물동량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산업부·해수부 공동으로 주요 석유화학 집적항만 전용부두의 접안능력을 일괄 재평가, 안전성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접안가능 선박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 구조강도, 수심·항로·선회장, 계선·방충시설, 하역설비 및 최신 선박제원을 반영한 표준 평가기준 마련

○ 현행 안전기준은 유지하되 관계기관 원스톱 협의와 신속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특별법에 접안능력 재평가 및 신속조치 근거 명시

* 기술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시설 증설 없이 접안가능 선박 규모 조정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합리화

현 행(석유화학특별법)	개 선 안
제7조(규제 특례 등 추진)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7조(규제 특례 등 추진)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원료의 반입 또는 제품의 반출에 이용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 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을 전제로 접안능력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접안가능 선박 규모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신속한 조치

44. 도시가스사업법 내 LNG 냉열이용자 정의 개편

❖ 소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 [현황] 수입 LNG를 재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냉열은 탄소 중립 이행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고효율·친환경 사업에 활용 가능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LNG 수입국('25년 기준)으로 재기화 과정에서 해수로 방류되는 미활용 냉열을 전력량으로 환산 시 약 10TWh 규모에 해당

○ LNG 냉열 발전은 추가 연료 연소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무탄소 회수 에너지로서, 탄소중립 이행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고효율·친환경 사업

※ 산업통상부('26.7월)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6~2038)』

□ [문제점]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체계는 천연가스 자체를 소유 또는 소비하지 않고 냉열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 규정 부재

○ 현행법은 냉열이용자를 LNG 대량수요자 중 냉열을 이용하는 자로 한정해 아래 2가지 경우에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 및 사업 지연 발생

① 천연가스를 직접 구매·소유하지 않는 자

② 대량수요자 규모 요건(시설용량 100MW 이상)에 미달하는 자

□ [개선방안] 관련법 개정을 통해 LNG 재기화 냉열을 회수·이용하여 발전 및 냉열 공급을 영위하는 자의 정의를 신설하거나 범위를 확장

현 행(도시가스사업법)	개 선 안
제2조(정의) 9의 4.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란 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 중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이하 “냉열”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9의 4. “ <u>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u> ”란 <u>액화 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이하 “냉열”이라 한다)를 회수하여 발전·냉동·냉각 등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u>
<신 설>	9의 7. “ <u>액화천연가스 냉열사업</u> ”이란 냉열을 회수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냉열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5. 기화 후 천연가스 반환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소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4

□ [현황] 수입 LNG를 재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냉열은 탄소 중립 이행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고효율·친환경 사업에 활용 가능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LNG 수입국('25년 기준)으로 재기화 과정에서 해수로 방류되는 미활용 냉열을 전력량으로 환산 시 약 10TWh 규모에 해당

○ LNG 냉열 발전은 추가 연료 연소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무탄소 회수 에너지로서, 탄소중립 이행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고효율·친환경 사업

※ 산업통상부('26.7월)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6~2038)』

□ [문제점]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체계에 따르면 냉열이용자가 냉열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기소비 또는 열거된 자*에게만 처분하도록 제한

* ①가스도매사업자,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 ③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

○ 냉열이용자가 기화된 천연가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그대로 반환하는 구조이나, 이 거래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불명확

□ [개선방안] 기화 후 천연가스 반환의 성격을 확정해 법적 안정성 확보

현행(도시가스사업법)	개선안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1. 가스도매사업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냉열이용을 위하여 공급받은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켜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제1항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46. LNG 제조소 경계 외부 냉열 배관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소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현황] 수입 LNG를 재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냉열은 탄소 중립 이행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고효율·친환경 사업에 활용 가능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LNG 수입국('25년 기준)으로 재기화 과정에서 해수로 방류되는 미활용 냉열을 전력량으로 환산 시 약 10TWh 규모에 해당

○ LNG 냉열 발전은 추가 연료 연소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무탄소 회수 에너지로서, 탄소중립 이행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고효율·친환경 사업

※ 산업통상부('26.7월)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6~2038)』

□ [문제점] LNG 제조소 경계 외부에 냉열을 반출·공급하는 배관에 대한 안전 및 설치 기준이 미비하여 신사업 투자 제약

□ [개선방안] 제조소 외 냉열 배관 설치에 관한 합리적인 안전 기준을 신속히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 및 유권해석 신속 처리체계 도입

48.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한 합리적 보전 체계 마련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 [현황] 바이오매스는 고온 공정용 열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되는 열병합 발전의 대표적인 재생열연료에 해당

○ 전력 부문에 국한되던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체계를 열 부문으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 중으로, 법 제정 시 재생열인증서 발급 및 거래 가능

*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김주영, '26.6월) 상임위 계류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26.4월)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

□ [문제점] 재생열에 대한 정책적 보전 체계가 미비하여, 바이오매스 열원 활용에 따른 사업자 비용 부담 가중

○ 바이오매스를 통해 전력을 발전하는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적용해 연료비를 일부 보전한 바 있으나, 열원 활용의 경우 보전체계 부재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26.9.18)

□ [개선방안] 열에너지법의 조속한 제정 및 하위법령 설계 시 바이오매스 열원에 대한 사업자 비용 부담 보전 체계 마련

49. 소각시설 탄소포집활용(CCU) 설비 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 [현황]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폐기물 부문은 '30년까지 '18년 대비 46.8% 감축 이행 필요

○ 폐기물 부문은 17.1백만톤('18년 기준)에서 '30년까지 9.1백만톤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요구되며, 이는 연평균 5.1% 수준

○ 폐기물 부문 중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비중은 약 40%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 필요

※ 국정과제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 [문제점]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소각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자원화하는 CCU 설비가 요구되나 경제성 저조 및 지원 기준 미비

○ CCU 설비의 낮은 경제성과 지원 기준 미비로 설치·운영 사례 미미

□ [개선방안] 관련 법령 내 소각시설과 연계한 CCU 설비의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반영

현 행(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 선 안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분해 소각시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2.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하기 위한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50. 친환경 : 생분해 플라스틱 처리 기술을 신산업으로 육성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현황]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 미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 신성장·원천기술 포함 시, 일반 기술에 비해 R&D·시설투자세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ex. R&D 세액공제율 : 대기업 기준 (일반 기술) 0~2%, vs. (신성장·원천기술) 20~30%)

○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생분해 플라스틱 퇴비화 기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문제점] 고성장이 예상되는 생분해 플라스틱 퇴비화에 대한 국제적 지원 트렌드와 달리, 한국은 관련 인센티브 미비로 기술개발 등에 난항

○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능력은 '28년 460.5만 톤으로, '22년(86.4만 톤) 대비 5.3배 성장 전망('22년~'28년 연평균 성장률 32.2%)

* 전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규모 약 30조원 전망('26년 기준)

○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대체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생분해 플라스틱이 대체품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

* 유엔환경계획(UNEP)은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 제정을 목표로,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한 범정부 협상 위원회(INC)’ 구성('22.3월)

** 美 연방 상원은 플라스틱 재활용 및 퇴비화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평가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24.3월)

□ [개선방안]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

○ 해당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세 세액공제 혜택 부여 필요

현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 선 안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8. 에너지·환경 라. 오염방지·자원순환 1)~5) (생 략) 6)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7) < 추 가 >	8. 에너지·환경 라. 오염방지·자원순환 1)~5) (좌 동) 6) (좌 동) 7)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기술 8)~9) (현행 7)~8)과 같음)

51. 기후대응기금 활용체계 보완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 및 제70조

□ [현황]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및 녹색기술 연구개발 등에 활용

*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경매방식을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제도

○ '22년 기금 신설 이래 증가 추세 → '26년도 운용 규모는 2조 9,0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운용규모(억원)	24,594	24,867	23,918	26,217	29,057
총지출(억원)	23,562	24,571	22,629	23,253	25,920

※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중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확충을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과제로 명시

□ [문제점] 예산 수준에 비해 광범위한 기후대응기금의 활용분야로 인해 불분명한 목적성과 기금 투입에 따른 효과 창출 미약

○ 동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이외에도 저탄소생태계 조성, 기후적응, 공정한 전환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전(全) 범위를 포괄

○ 반면 EU(유럽연합)은 혁신기금 및 현대화기금에 대해 각각 기술투자 및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등 기금의 목적성을 별도 설정

□ [개선방안] 기후대응기금의 활용체계 보완을 통해 공공기금 기반 산업 녹색전환 효과성 제고

○ 동 기금의 주(主)재원은 다배출 기업의 배출권 구매 등을 통해 마련되는 점을 고려해, 기금을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에 우선 활용

* (예시) 정부사업 지원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한 가점 적용 등

○ 기진행 투자건에 대해서도 저탄소 시장 미성숙으로 인해 겪는 업체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기금 기반 OPEX 및 초기시장 형성 지원

52. 고효율 가전 환급 사업 전국민 대상 확대 시행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현황] 고효율 가전 환급 사업의 지원대상은 제한적인 상황

○ 현재 한전 복지할인가구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이 운영 중이며 복지할인 대상 가구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함

*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가구(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와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으로 에너지 효율 1등급 기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자

□ [문제점] 지원 대상이 특정층에 한정되어 있어 에너지 효율 개선, 가전산업 회복, 내수진작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움

○ 한전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총사업비 100억 원),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총사업비 388억 원) 모두 '25년 6월 지원사업 대비 제한적인 예산

* ['25.6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사업] 대상: 전국민, 지원방식: 구매가의 10% 환급 (개인별 최대 한도 30만 원) 총사업비: 2,671억 원

○ 주거 및 기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11개 품목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추가 필요

* 기존 지원 품목: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세탁기, 의류 건조기,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유선 진공청소기 등 11개 가전

□ [개선방안] 고효율 가전 환급사업의 예산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가전산업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및 국민 체감 효용 개선

○ '25년 6월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도입

[4] 서비스·콘텐츠 산업 육성

53. 서비스업 도약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 [현황]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지원 필요성 부상

○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제조업 기반 상품 수출에 높은 의존도를 보임

* 상품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 한국은행): ('22년) 48.1→ ('23년) 50.0→ ('24년) 95.0

○ '13년~'23년간 글로벌 GDP에서 상품 수출의 비중은 하락했으나 서비스 수출의 비중은 늘어났으며 서비스 수출성장률이 상품 수출의 2배를 초과

* 제조-서비스 융합 진단 및 수출 확대 방안 ('25년, 한국무역협회)

□ [문제점] 제조업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이 저해

○ 제조업은 전략산업·소부장 특별법과 같은 종합 지원법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산업종 공통 투자지원 장치 존재하나 서비스산업은 부재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 특별법 등이 제조업의 공통 투자지원 제도에 해당하나 서비스산업은 관광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으로 개별적 법률만이 존재

○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의 경우 70% 이상이나, 한국은 60% 내외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저조하며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도 낮은 편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재경부, '23년): 美 81.3%, 英 80.1%, 日 70.3% vs. 韓 63.4%

**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재경부, '23년): 英 83.2%, 美 80.1%, 日 75.3% vs. 韓 70.7%

○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제조-서비스 융합을 통한 제조업 부가가치 고도화, 국내 고용증진 등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

□ [개선방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조속 제정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조속 제정 필요

* 송언석 의원(國), 윤준병 의원(民), 김영환 의원(民), 최은석 의원(國) 발의안 4건 국회 계류 중

54.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 소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현황] 대형마트 등은 의무휴업(2일) 및 심야영업 시간에 온라인 거래 제한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제한 시간(0시~12시 범위 내 지자체장 결정) 및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거래(구매 및 배송) 금지

*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거래 불허('12년, 법제처 유권해석)

□ [문제점] 타 온라인 플랫폼 대비 형평성 위배 및 소비자 후생 감소

○ 대형마트 온라인 구매 상품의 점포배송 또한 해당 법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

○ 시간·공간 제약 없이 새벽 배송 등을 자유롭게 운영 중인 타 온라인 채널(마켓컬리, 쿠팡 등)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소비자 후생도 감소

□ [개선방안] 대형마트 및 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제외

현행(유통산업발전법)	개 선 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u>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u>대규모점포</u> <u>등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u> <u>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u> <u>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u> <u>판매를 하는 경우에</u>

55. 관광특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용 제외

❖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광진흥법

□ [현황] 방한 외국인 증가와 함께 쇼핑이 주요 관광·소비 활동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에도 의무휴업 규제 적용 중

○ 2025년 방한 외국인은 약 1,894만 명이며, 외국인 관광 소비에서 쇼핑 비중이 높고 대형마트도 주요 쇼핑 채널로 활용

* 방한 외국인의 쇼핑 채널별 비중(한국문화관광연구원, '25년) : 시내면세점(26.6%), 대형마트(23.6%)

○ 전국 37개 관광특구 중 9개 관광특구에 대형마트 3사 17개 점포가 위치

※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102.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 [문제점] 관광객 방문이 집중되는 주말·공휴일 의무휴업으로 외래 관광객 쇼핑 편의 및 관광특구 활성화 효과 저하

○ 대형마트 휴업 시 식료품·기념품·생활용품 등의 원스톱 쇼핑이 제한되어 관광객 만족도와 소비 확대에 제약

○ 관광객 유치와 체류·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관광특구의 제도 취지와도 상충

* 외국인 관광객의 높은 쇼핑 지출을 고려할 때 의무휴업에 따른 영업 제한은 관광 수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 감소 요인

□ [개선방안]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 적용을 제외하는 「관광진흥법」상 특례 신설

○ 관광특구 내 일부 점포에 한정해 영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와 관광소비 확대를 지원

*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18, '26.6.8.)의 조속한 입법 추진 필요

○ 관광특구 실효성 제고와 함께 K-뷰티·K-푸드 등 국내 상품 판매 확대, 지역경제 및 협력 중소기업 매출 증대 효과 기대

56. 가맹점 점포 규제 완화로 유통서비스업 활성화

❖ 소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현황] 대기업 등이 경영하는 체인 사업형 점포는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대기업 또는 대규모점포 회사의 체인사업형 점포는 체인본부가 개별 점포의 상호, 판매방법, 매장운영 및 광고방법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

*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 대상이 됨

○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등록 제한(같은 법 제8조의3)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 적용

□ [문제점] 소상공인 운영 체인점포를 준대규모 점포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

○ 가맹사업자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로 운영하는 준대규모점포는 운영 주체가 소상공인인 경우가 많아 입지·영업제한 등 규제 적용은 부당

○ 운영 주체를 고려하여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 [개선방안] 준대규모 점포의 운영 주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장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

현행(유통산업발전법)	개 선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 -----.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u>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u>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u>다만,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한다.</u>

57. 공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9

□ [현황] TV방송·영화·OTT 등 영상 콘텐츠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콘서트·뮤지컬 등 실연되는 공연콘텐츠 제작비는 세액공제 제도 부재

□ [문제점] 오프라인 공연은 영상 콘텐츠(영화·방송)와 제작 구조가 유사함에도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문화콘텐츠 간 세제 지원의 형평성 미흡

○ 국내 창작 뮤지컬, K-POP 콘서트 등의 해외 성과로 공연 콘텐츠가 K-컬처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은 단발성 보조금 위주로 운영되어 민간 자본 유입 및 대규모 투자 유도에 한계

* 정부도 문화콘텐츠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 및 핵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

○ 공연 산업은 인적 자원 투입 비중이 높아 영상 산업 대비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공연 흥행이 관광·숙박·외식 등 지역 경제로 확산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세제지원을 통한 제작비 재투자 유도 필요

○ 영국 등 콘텐츠 강국이 공연 제작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도 문화콘텐츠 전반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필요

* ex. (英) 공연 관련 세금 우대 혜택 제도인 Theatre Tax Relief의 일몰 조항 삭제

□ [개선방안] 조특법 제25조의9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을 통해 공연콘텐츠 등 한류콘텐츠의 지속 성장 지원

현 행(조세특례제한법)	개 선 안
<u>< 신 설 ></u>	제25조의9(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연콘텐츠가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되어 관객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공연콘텐츠 가.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관람물로서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되는 관람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연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한국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규제 완화

❖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벤처투자법 제26조,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8조제4항

□ [현황] 대기업집단 소속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벤처투자회사(VC) 투자는 제한되며, 중소기업 수익지분 요건만 한시 완화

○ (원칙)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VC 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요건) 2개 이상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제작에 참여하고,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 비중이 60% 이상일 것

** 문화산업전문회사: 특정 문화콘텐츠 제작·투자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 (한시 완화) 중기부는 '26.4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최소 수익지분 요건을 60%에서 20%로 완화해 적용

□ [문제점] 한국영화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한시적 완화와 불명확한 운영기준으로 VC 투자 활성화 효과가 제한

○ (대상 축소) 한국영화 시장 위축과 중소 제작사의 대기업집단 편입으로 VC 투자 가능 대상이 줄어 신규 투자·제작 곤란

○ (불확실성) 3년 한시 조치인 데다 기존 펀드 적용 여부, 문체부 인정 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이 불명확해 활용 판단 곤란

□ [개선방안] 수익지분 요건 완화를 상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 명확화

○ (상시화) 중소기업 수익지분 요건의 3년 한시 완화를 상시화하거나 일몰기한을 연장해 중장기 투자 예측가능성 확보

○ (운영기준) 기존 펀드 적용 여부, 문체부 인정 절차·기준 명확화

[5] 공급망 재편·경제안보 대응

59. 공급망 보안강화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부 /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공정거래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하도급법 제18조

□ [현황] 공급망 협력사를 통한 사이버 침해·기술유출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

○ 최근 공급망 협력사(중소기업)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가 다발하고 있으며, 핵심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사례도 증가

* (해킹) 6,447건 중 5,286건(82%)이 중소기업에서 발생('21.1월~'25.8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기술유출) 668건 중 578건(86.5%)이 중소기업에서 발생('20~'25.7월, 경찰청)

○ 공급망 전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조기업은 협력사 보안기준 마련, 보안점검·컨설팅 등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상생활동을 추진

* (예) 사이버보안 컨소시엄 등을 통해 협력사 보안기준을 표준화하고 보안 컨설팅 제공

○ 한편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 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

*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하도급법」 제18조

□ [문제점]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사 보안 지원이 공정거래법·하도급법상 경영간섭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공급망 보안관리에 제약

○ 상생활동이라 하더라도 제조기업이 협력사에 특정 보안시스템 도입, PC 통제, 보안감사 기준 등을 제시할 경우 경영간섭으로 비취질 우려

○ 협력사 입장에서 보안설비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과, 협조하지 않을 시 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 존재

□ [개선방안] 기업의 자발적인 공급망 보안 강화 조치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협력사 보안투자 지원 확대

○ 공급망 보안을 위한 보안기준 제시·점검·지원 행위를 경영간섭 판단 시 정당한 사유로 고려하도록 관련 심사지침 등에 명시

○ 정부 차원의 보안 바우처 지원, 보안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60. 통신 분야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전문위원회 운영 합리화

❖ 소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현황] LTE·5G 일부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장기간의 국제표준화와 글로벌 상용화를 거치면서 기술·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

○ LTE·5G 시스템 설계 및 무선장치용 전력증폭기 설계 기술은 다수 글로벌 사업자가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등 상용화·표준화가 상당 수준 진행

* 에릭슨·노키아·화웨이·ZTE·삼성전자·NEC·Fujitsu 등 다수 글로벌 RAN(Radio Access Network, 무선접속망) 사업자가 LTE·5G 기지국 솔루션 공급

○ 반면, Baseband Modem(기저대역 모뎀) 설계 등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은 여전히 국가 차원의 전략적 보호 필요성이 존재

□ [문제점] 성숙 기술까지 국가핵심기술로 광범위하게 관리할 경우 AI 활용·해외 공동연구 등 글로벌 R&D 활동과 신속한 사업 수행에 제약 우려

○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의 해외 이전·활용 시 수출승인·신고 등 절차로 해외 AI 서비스 활용, 공동연구, 특허소송 등에 시간·행정 부담 발생 가능

* 생성형 AI 기반 설계·코딩·분석 도구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기술보호와 AI 활용 간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국가핵심기술 전문위원회 대응 과정에서 유사 자료의 반복 제출과 대면 설명 등이 요구돼 기업의 인력·행정 부담 발생

□ [개선방안] 기술의 전략적 가치·희소성·대체가능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성숙 통신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범위를 합리화

○ 글로벌 상용화·표준화가 충분히 진행된 LTE·5G 시스템 및 전력증폭기 설계 기술은 지정 해제를 검토, 전략적 가치가 높은 Baseband Modem 설계 기술은 보호 유지

* 상용화 기간, 글로벌 공급기업 수, 기술 대체가능성 등을 지정·해제 판단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

○ 보호대상을 차세대 6G, AI-RAN 융합, 위성통신 등 미래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

○ 국가핵심기술 전문위원회 정기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사로 간소화하고, 주요 기술 쟁점 발생 시 온라인·대면 심사를 실시하는 등 운영 방식 효율화

61.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개선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 [현황]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투자한 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 대상 투자 범위 : ❶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❷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외국자회사가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限)

□ [문제점] 자원개발사업은 광업권 취득 이후 탐사, 개발·생산을 위한 자산 취득 비용이 장기간 발생하나, 현행 제도는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초기 투자에 한해 세액공제를 인정하며 세액공제율도 낮은 수준

○ 시추에 성공한 자원을 국내로 적기 도입하기 위해서는 운송 전 정제·저장하는 시설이 필요하며 이후 국내 수송을 위한 자산 취득이 필요

○ 예를 들어 천연가스개발의 경우 탐사·채굴(상류) → 액화·수송(중류) → 기화·공급(하류)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갖는 사업으로, 생산된 가스를 액화하고 LNG선 수송을 하는 중류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

<천연가스개발 밸류체인>

상류	중류	하류
천연가스 매장지역을 탐사하고 채굴하는 액화 이전까지의 단계	▶ 천연가스를 액화하고 수송하는 단계	▶ 다시 기화시켜 전국 배관망을 통한 소비처에 공급하는 단계

○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 경쟁 요소이나, 해당 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제련 시설 투자는 광업권·조광권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 미포함

○ 또한 해외자원개발은 인프라가 전무한 오지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거나, 현재 사업용 자산 세액공제 제도 부재

○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3%로,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최대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 시 낮은 수준

□ [개선방안]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대상을 사업용 자산 투자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율 확대(3% → 10%)

○ LNG 액화·수송 인프라 등 중류 부문의 대규모 설비투자과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제련 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현행 3% → 개선 10%) 하되, 국가경제에 영향이 큰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광물(니켈, 구리, 아연, 망간, 코발트, 리튬 등) 개발 기업은 추가 공제율 적용

현 행(조세특례제한법)	개 선 안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① (생략)
1. 광업권과 조광권, <추 가>을 취득하는 투자	1. 광업권과 조광권, <추 가>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 <추 가>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이하 생략)	2. 광업권 또는 조광권, <u>사업용자산</u> 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이하 생략)
3. (생략)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생략)… 광업권 또는 조광권, <추 가>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생략)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생략)… 광업권 또는 조광권, <u>사업용자산</u> 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 추 가 >	4.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제련을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투자
5. < 추 가 >	5.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생략)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생략)…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u>100분의 3</u>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생략)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생략)…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u>100분의 10(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추가로 적용한다.)</u>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62. 고위험국 특별계정 금융지원 적용범위 확대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은 신규 사업 중심으로 금융 지원 하여, 불가항력 사유로 중단된 기존 계약사업의 정상화 지원에는 한계

○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은 거래상대국의 국가위험이 높아 일반계정으로 금융지원이 곤란한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19~)

* 특별계정 집행 사례 : 앙골라 원유운반선 수출사업('23년, 1억 960만 달러), 나이지리아 액화플랜트 건설사업('22~'23년, 약 3,153만 달러) (국회에산정책처)

○ 그러나 실제 운용은 신규 수주·사업 발굴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쟁·정치불안·발주국 지급능력 악화 등 국내외 불가항력 사유로 중단된 기존 계약사업의 정상화 지원에는 활용이 제한적

○ 고위험국의 장기 대형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면 국내 시공사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기자재·장비 공급사에도 대금 회수 지연 및 후속 발주 중단 등 피해가 확산될 우려

□ [개선방안] 기존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중단된 사업에도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마련

○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상 특별계정 지원대상에 “국내외의 불가항력적 사유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중단되어 정상화에 필요한 금융지원이 곤란한 기존 계약사업”을 포함하여 지원범위 확대

○ 다만, 무조건적 손실 보전·부실사업 연명으로 변질되지 않고 정상화 가능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도록 안전장치* 마련

* ① 사업 정상화 계획 및 상환재원 확인, ② 발주국의 서면 지원 또는 지급확약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 ③ 담보, 우선변제, 직접지급·에스크로 등 회수보전 장치 등

현 행(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 선 안
제16조의2(특별계정)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16조의2(특별계정)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 <u>또는 국내외의 불가항력적 사유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정상화에 필요한 금융지원이 곤란한 기존 계약사업</u> 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63.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추진으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소관 :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89조

□ [현황] 주요국은 WTO 민간항공기협정(TCA)을 통해 항공기 부품에 무관세 적용하나, 한국은 WTO TCA 미가입으로 인해 관세법에 따라 한시적('28년까지) 관세 면제 적용

○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특례 부여를 통해 '26년~'28년 항공기 부품의 수입 관세를 100% 감면하는 방법을 채택

* 완성 항공기에 비해 일부 항공기 부분품·원재료에 관세가 부과되는 세율 불균형을 완화하고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면제 특례 운영

< WTO TCA 가입국 현황 >

구분	국가
미주(2개국)	미국, 캐나다
유럽(27개국)	EU,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아시아·아프리카(4개국)	일본, 대만, 마카오, 이집트

□ [문제점] 항공기 부품 수입관세 감면 혜택의 '28년 말 일몰로 국내 항공사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 제기

○ 항공기 부품 시장의 공급자 우위 특성상 해외 업체들 대부분 원산지 증명을 거절하고 있어, 국내 항공업계의 FTA 활용률이 15~20%로 매우 저조

* 원산지 증명 : 수출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제도

** 원산지 증명 거절사유: 생산기지 다국화로 인한 원산지 정보 추적 불가, 원산지 확인에 별도 행정력·인력 투입 어려움, 원산지 증명에 대한 이해 부족 등

□ [개선방안] WTO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을 통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로 해외 경쟁국과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필요

○ 항공기 수리·정비에 소요되는 각종 부품에 대한 교역 자유화로 불공정 경쟁 여건 해소, 신성장동력인 항공 MRO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항공 안전 강화 기여

○ TCA 가입이 단기에 어려울 시, 현행 관세 면제 제도 일몰 연장('28년 → '30년)

64. 국가 식량안보 개념 명문화로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확립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관련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현황] 우리나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식량안보 개념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및 일본은 해당 개념을 법제화

○ 중국·일본은 러-우 전쟁 및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가격 폭등, 수급 부족 등의 식량 공급망 리스크 발생 이후 자국 식량안보를 위해 관련 법 제·개정 완료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국제 곡물가격지수는 173.5pt 정점 기록(유엔식량농업기구, '22.5월)

** (中) 식량안전보장법('24.6.1. 시행), 중앙-지방정부 간 절대적 식량안보 확보 목표 구체화
(日) 식료·농업농촌기본법('24.5.29. 시행), 식량자급률·식량안보 확보 목표 설정

□ [문제점] 한국의 경우 식량 공급망 리스크 등 외생변수로 인한 안정적 식량공급이 점차 어려워지는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함

○ 동법 제1조(목적) 내 식량안보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 미흡

* 이상기후 또는 국제분쟁 등으로 인한 식량 공급망 리스크 등에 대한 내용 없음

○ 한국의 경우 곡물 자급률이 주요국 대비 매우 미흡함에 따라, 식량안보를 위해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가 급선무

* 최근 3개년('21/22~' 23/24) 평균 곡물(옥수수·밀·대두·쌀) 자급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호주 338.8, ▶ 캐나다 169.9, ▶ 미국 122.4, ▶ 중국 92.2, ▶ 일본 27.6, ▶ 한국 19.5

□ [개선방안] 법령에 식량안보 개념 명문화

현행(농업식품기본법)	개 선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 추 가 >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u>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해외 식량 공급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u> 국민에게 안전한 (현행과 동일)

[6] 기업 제도의 합리적 정비

65. 규제 도입 전 사전심사 절차 마련

❖ 소관 : 국무조정실 / 정무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 관련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국회법

□ [현황] 기업활동 규제 수준이 높은 가운데,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음

○ (규제 수준) 한국의 규제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0위, 기업활동 개입 부문은 36위(OECD 제조업 규제지수, '23년)

○ (심사 공백) 정부입법에 적용되는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의원입법 규제안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규제영향분석: 규제 신설·강화 시 비용·편익과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 [문제점] 의원입법 규제는 체계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도입될 수 있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될 가능성

○ (사전심사 우회) 규제 신설의 상당 부분이 사전심사를 받지 않는 의원입법으로 이뤄져 규제 품질 관리에 공백 발생

* 공청회는 제정·전부개정안만 의무이고 생략도 가능해, 규제입법안이 충분한 토론 없이 통과되기도 함

○ (경직성) 법률로 정해진 규제는 사후 개정이 어려워 입법 경직성이 큼

□ [개선방안] 의원입법 규제안에 규제영향분석과 숙의 절차 마련

○ (숙의) 안전조정 등 입법과정의 숙의기간을 준수하고, 규제입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 (영향분석) 의원입법 규제안에 대해 심층적인 규제영향분석 실시

○ (평가 개선) 정당·국회의 의원활동 평가에서 법안 발의 건수 배제

66.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경제인 배임죄 개선

❖ 소관 : 법무부 / 법제사법위원회

❖ 관련 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상법 제622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현황]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배임죄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법무부는 정비 또는 폐지 후 대체입법을 검토 중

○ (적용 실태) ‘임무 위배’라는 막연한 구성요건과 손쉬운 고발 때문에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수사·기소가 빈번하게 발생

○ (정비 논의) 법무부가 현행 배임죄 정비(1안)와 폐지 후 대체입법(2안)을 검토 중이나, '26.10월 현재까지 입법 미완료

□ [문제점]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배임죄가 주요국보다 과도하게 적용돼 모험적 투자와 경영판단 위축

○ (국제 비교) 주요 6개국 중 일반·업무상·특별배임죄를 모두 두고 특정법상 가중처벌까지 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 6개국: 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 특경법은 이득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G5 등 주요국은 배임죄 처벌규정이 없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사기죄로 대응

○ (구성요건 불명확) 임무위배 개념이 모호하고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 기업인이 모험적 투자를 기피

□ [개선방안] 배임죄 폐지 또는 대체입법을 조속히 추진

○ (1안) 배임죄 폐지

○ (2안) 대체입법 시 ①목적범화(이득·가해 목적 입증 시에만 처벌) ②침해범화(명확한 손해 발생 요건) ③경영판단원칙 명문화

* 입법이 후순위로 밀리면 기업 부담이 지속되므로 정부안 마련·국회 논의 조속 진행

67. '경영판단의 원칙' 상법 명문화

❖ 소관 : 법무부 / 법제사법위원회

❖ 관련 법령 : 상법(회사편)

□ [현황] 경영판단의 원칙이 상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고 판례로만 인정돼,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적 보호 미흡

*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원칙

□ [문제점] 법적 근거가 없고 법원 적용도 소극적이어서, 배임죄와 결합해 기업인의 위험 감수와 적극적 투자 결정 위축

○ (소극적 적용) 대법원이 '04년 처음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용했으나, '15년까지 경영판단 관련 배임죄 판결 35건 중 18건에서만 고려

○ (주요국) 독일은 주식법 제93조에 명문화했고, 미국은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88년)로 확립해 일관된 판단기준으로 운용

○ (사후 판단) 법원이 경영 현장의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운데도 고도의 경영판단을 사후에 문제 삼아 위험 감수 유인 위축

□ [개선방안] 기업가정신을 높이고 광범위한 배임죄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

○ (명문화 요건) ①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판단 ②이해관계 없는 선의의 판단 ③회사 최선의 이익에 대한 합리적 신뢰

68.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 확보

❖ 소관 : 법무부 / 법제사법위원회

❖ 관련 법령 : 상법(회사편)

□ [현황] 국내 상장회사는 주요국에서 활용되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쓸 수 없는 반면, 경영권 공격수단은 계속 강화

○ (방어수단)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주식, 황금주 등 주요국이 인정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국내 상장회사에는 미도입

*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적대적 인수 시도 시 기존 주주가 신주를 낮은 가격에 인수하게 해 인수자의 지분을 희석하는 제도

** 차등의결권주식: 1주에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 / 황금주: 주요 경영사항에 거부권을 갖는 특별주식

○ (공격수단)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확대 논의 등 경영권 공격수단은 지속적으로 강화

□ [문제점] 공격수단은 강화되는데 방어수단은 사실상 없어, 경영권 분쟁 대응 비용과 혁신기업의 국내 상장 부담 증가

○ (비대칭) 국내 기업은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되나,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에 같은 전략을 구사하기는 곤란

○ (비용)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자사주 매입·우호지분 확보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돼 본업에 쓸 투자 여력이 축소

○ (해외 상장)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아, 성장 단계의 지분 희석을 우려한 혁신기업이 해외 상장을 선택하는 사례 발생

*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이 제한적으로 도입됐으나, 요건이 엄격하고 존속기간이 짧아 실효성 제한

- [개선방안] 포이즌필과 상장회사 차등의결권주식 등 방어수단을 도입하되, 지배구조 규제와 균형 있게 설계
- (포이즌필) 상법을 개정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근거 마련
- (차등의결권) 상장회사에도 발행을 허용하되, 일몰조항·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등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병행

69.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개선

❖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24조~제127조

□ [현황] 공정거래법은 담합, 부당지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36개 위반행위에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규정

○ (벌칙)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병과도 가능

* 제124조(징역 3년·벌금 2억원 이하), 제125조(징역 2년·벌금 1.5억원 이하) 등

○ (정비 동향) 정부가 범부처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3차례 정비방안을 발표했으나, 공정거래법은 일부만 반영

* 1차('25.9.29, 110개), 2차('25.12.30, 331개), 3차('26.4월, 230개) / 재정경제부·법무부·법제처 중심 추진

**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규제 관련 15개 형벌규정 중 10개만 폐지 결정(김남근 의원안, '26.2.26, 국회 계류)

□ [문제점] 주요국보다 형사처벌 범위가 넓고 경제력집중 규제까지 형벌을 적용하는데, 정부의 정비도 일부에 그침

○ (국제 비교) 담합·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외의 불공정행위와 경제력집중 규제까지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OECD 38개국 중 한국이 유일

* OECD 38개국 중 19개국은 경쟁법상 형벌규정이 없고, 10개국은 담합만, 8개국은 담합·시장지배적지위 남용까지만 처벌

○ (과잉 형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제력집중 규제(대기업집단 규제)는 신고·보고·자료제출 등 절차적 의무 위반만으로도 형사처벌

○ (경영 위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형벌규정이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수사·기소로 이어져 투자·전략 수립 등 경영활동 저해

○ (정비 미흡) 정부의 형벌 정비가 일부 조항에 그쳐, 지정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상에서 제외

* (폐지 대상) 지주회사 설립·행위제한 위반, 의결권 제한 위반, 상호·순환출자 금지 위반, 주식소유현황 신고의무 위반 등

□ [개선방안] 공정거래법상 형벌을 대폭 축소해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남은 형벌규정도 조속히 추가 정비

○ (1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전반적으로 삭제

○ (2안) 제재가 불가피하면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벌 부과

* 지정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

70. 형벌 폐지와 과징금 상향의 동시 입법으로 제재 중첩 해소

❖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 정무위원회

관련 법령 : 공정거래법 제124조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현황] 정부는 경제형벌을 줄이고 과징금을 높이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 중이나, 형벌 폐지는 지연되는 반면 과징금 상향은 먼저 시행

○ (형벌 정비) 공정위 소관 5개 법률·24개 위반유형의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으나('26.7월 당정), 관련 법 개정은 아직 미완료

○ (과징금 상향)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담합 부과기준율 하한을 0.5%에서 10%로 높이고, 조사 협조·자진시정 감경도 축소('26.4.30 시행)

* 과징금 법정 상한도 담합은 관련매출액의 20%→30%,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6%→20%로 높이는 법 개정을 함께 추진 중(공정위, '25.12.30 발표)

○ (부과 급증) '26.1~8월 과징금은 약 2.5조원으로, 8개월 만에 역대 연간 최대치('17년 1조 3,308억원)의 약 2배에 이미 도달한 상황

□ [문제점] 형벌은 그대로 둔 채 과징금만 먼저 높여, 제재의 ‘전환’이 아닌 ‘추가’로 귀결되면서 기업의 이중·삼중 부담만 가중

○ (중첩 제재) 하나의 위반행위에 과징금·형벌·시정조치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총 제재 수준이 위반 정도를 크게 초과할 우려

* 밀가루 담합(공정위, '26.5월) : 과징금 6,710억원에 더해 법인·임직원 형사고발과 가격재결정명령(시정조치)까지 동시에 부과되어 3중 제재

○ (비례원칙 이탈) '26년 담합 과징금이 해당 기업 연간 영업이익의 3~8배에 달해, 위반 억지를 넘어 기업의 존속까지 위협하는 수준

* '25년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 배수 : 한타 8.4배, 삼화제분 7.8배, 사조CPK 5.6배, 사조동아원 4.3배, 대한제분 2.9배(공정위 의결서, 금감원 DART)

○ (형사제재 확대) 형벌 폐지 취지와 반대로 지정자료 고발 대상 확대('26.8월 행정예고), 전속고발제 개편 등 형사제재는 강화

□ [개선방안] 형벌 폐지와 과징금 상향을 반드시 동시에 입법하고, 과징금이 위반 정도에 비례하도록 최종 상한 등 안전장치 마련

○ (동시 입법) 과징금 상한 상향 법안은 형벌 폐지 법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하고, 형벌이 남은 유형에는 상향 기준 적용을 유예

○ (중복 조정) 형벌과 과징금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벌금액을 과징금에서 공제하는 조정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새로 마련할 필요

* 일본은 과징금과 형사벌금이 병과되면 벌금액의 1/2을 과징금에서 공제(독점금지법)

○ (최종 상한) 과징금 최종 부과액이 사업자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최종 상한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고 분할납부도 확대

71.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명확화 · 처벌체계 합리화

❖ 소관 :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5조·제6조·제7조

□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강화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

○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

*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문제점]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와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가운데 높은 형사처벌을 부과해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경영활동 저해 우려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의 정의와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해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 ‘경영책임자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 도급·용역·위탁 시 원청의 책임 기준인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의 범위가 불명확해 원·하청 간 책임 구분에 한계

○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업의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한 감경·면책 기준은 미흡

□ [개선방안]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무 이행 수준을 고려해 처벌체계를 합리화

○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도급인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 ‘경영책임자등’ : 안전보건 조직·인력·예산을 총괄·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자

**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p.104(’21.11)에서 예시로 기재한 10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선원법 등)으로 한정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위반 시 감경·면책조항 신설* 및 형량 합리화**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의 이행 정도를 고려한 처벌 감경 또는 면책 규정 마련

** 사망자 발생 시 하한형의 징역 규정 폐지

현 행(중대재해처벌법)	개 선 안
제2조(정의)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2조(정의) 9. (현행과 같음) 가. ----- 또는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생 략>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차. <신 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 가. 산업안전보건법 나. 원자력안전법 다. 연구실안전법 라. 폐기물관리법 마. 선원법 바. 생활방사선법 사. 항공안전법 아. 선박안전법 자. 생활물류서비스법 차. 광산안전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다만,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로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u>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④ <신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 <u>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u> ②~③ < 현행과 같음 >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의 정도를 감안하여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u>
--	---

72. 승강기 유지관리비 ‘최저가격제’ 도입

❖ 소관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위원회

❖ 관련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5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5조, 제26조 등

□ [현황] 표준유지관리비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매년 공표하나 권고에 그쳐 강제력이 없고, 실제 계약가는 권장가의 절반 수준

○ 표준유지관리비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긴급출동·부품점검 등에 드는 비용을 반영해 매년 산정·공표하는 권장가격에 해당

○ 표준유지관리비는 매년 2~5% 인상되었으나 공동주택 평균 계약가는 권장가의 45~48% 수준에 머물러, 저가 계약이 시장 관행으로 고착

< 정부 권장가 대비 공동주택 평균 계약가 비교 >

연도	표준유지관리비	인상률	공동주택 평균가	권장가 대비
2023	18만 8,000원	2.2%	8만 6,654원	46.1%
2024	19만 7,000원	4.8%	8만 8,920원	45.1%
2025	20만 5,000원	4.1%	9만 9,200원	48.4%
2026	21만원	2.4%	-	-

*자료: 대한승강기협회

○ 유지관리업체 난립으로 품질보다 가격 중심의 수주 경쟁 심화

* 승강기 88만대를 유지관리업체 900여 곳이 관리 → 업체당 평균 약 980대('25년 기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문제점] 저가 계약 → 점검 인력·시간 축소 → 부실 점검 → 고장·사고 증가의 악순환 반복

○ 저가 계약만으로는 충분한 인력 투입 곤란

* 월 1회 정기점검 시 2인 출동, 대당 약 1시간 소요(일 평균 8대 점검, 점검항목 180여개) → 9만원대 계약은 월 정기점검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수준

○ 부실 점검에 따른 승강기 고장 신고·인명피해도 반복

* 고장 신고 2만3,358건('21) → 2만3,315건('25), 인명피해 사고 56건('22) → 43건('23) → 59건('2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 갑힘 고장의 주요 원인별 비중 〉

원인분류	비중	주요 내용
부품이상 · 관리소홀	46%	부품 교체 지연, 제어반 에러, 도어 오작동 등
조정불량 · 정비미흡	28%	점검 시 불량 파악 미흡, 원인 미상 등
이용자 과실	15%	무리한 충격, 이물질 끼임 등
외부요인	11%	낙뢰 · 침수 · 정전 등

*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개선방안] 유지관리비 ‘최저가격제’ 도입

- 최저 유지관리비 기준을 법제화하여, 유지관리업체 간 경쟁을 가격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
- 정부 · 대한승강기협회 공조로 유지관리업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업체 선정 시 기술인력 규모 · 경력 · 유지관리 실적 등을 함께 평가
- 유지관리비를 단순 절감 대상이 아닌 안전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관리주체가 적격업체와 계약하는 문화 확산

73. 승강기 ‘중대한 사고’ 판단기준 합리화

❖ 소관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위원회

❖ 관련 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등

□ [현황]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중대한 사고’ 기준이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 대비 엄격·포괄적

○ 승강기 사고는 사망자 1명 또는 부상자 1명(1주 이상 치료)만 발생해도 중대한 사고로 분류하며, 승강기 이용자 사고도 포함

*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즉시 통보 → 공단의 사고조사 및 행정안전부 등 보고 → 필요 시 사고조사위원회 추가 조사 → 후속조치

○ 반면 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 복수 또는 다수·중상 부상자 발생 시 중대사고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 적용

〈 주요 법령별 중대사고 기준 비교 〉

구분	승강기안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사망기준	1명 이상	3명 이상	1명 이상
부상기준	1명 이상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치료)	10명 이상	10명 이상(또는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중대사고 기준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5.7월)하였으나, 이후 개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

* 부상 기준: (입원) 1주 이상 → 2주 이상, (치료) 3주 이상 → 6주 이상

□ [문제점] 법령 간 기준 차이로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경미한 사고에도 행정력이 사후 조사에 분산

○ 복합공정 현장에서 동일 수준의 부상이라도 건설 현장이면 일반재해, 승강기 설치구역이면 ‘중대한 사고’로 처리되어 긴급 조사·작업 중지 등 수반

* (예)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부상자 발생 시 작업 위치에 따라 적용 법령과 대응 절차가 상이

○ 승강기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 대비 현저히 적음에도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승강기사고 사망자) 7명 vs (건설업 사고사망자) 286명 ('25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용노동부)

○ 경미한 사고에도 조사관·전문위원이 투입되어 장기간 조사·징계·고발이 이어지면서, 사고 예방에 집중해야 할 안전행정력이 분산

□ [개선방안] 승강기법상 중대한 사고 판단기준(특히 부상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 진흥법 수준으로 합리화

○ 기 입법예고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부상기준을 산업법·건설법 수준에 맞춰 조정

○ 범정부 차원의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업종별 균일한 중대사고 적용기준 마련

74. Negative 전환을 통한 규제 시스템의 혁신

❖ 소관 : 국무조정실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

□ [현황] 행정규제기본법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도입('19년)됐으나, 권고적 규정에 그쳐 네거티브 전환은 미흡

○ (규제 방식) 국내 규제는 열거된 사항만 허용하는 포지티브(원칙 금지) 방식이어서 신산업 수용과 기술 개발이 지연

* 네거티브 규제: 금지 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

○ (선언적 규정)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만 규정(제5조의2)

□ [문제점] 포지티브 규제와 한시적 규제특례에 의존하고 있어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입과 사업 지속성이 제약

○ (혁신 지연) 법·제도가 기술 혁신과 소비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혁신 기술의 사업화가 가로막힘

* (사례)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의료법 규제로 사업을 일본에 집중 /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이 20년 넘게 지연

○ (한계) 규제 샌드박스는 한시적 특례에 그쳐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함

*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신서비스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

○ (기득권) 포지티브 규제가 이익집단의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도 작용

* (사례) 로톡은 변호사협회와의 갈등으로 난항 / 타다는 택시업계 반발로 사업 무산

□ [개선방안] 임의규정인 네거티브 원칙(제5조의2)을 강행규정화

○ (제1항)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제2항)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와 제6조 절차 이행을 의무화

75. 규제개혁 추진체계 일원화 및 규제 차르(Czar) 임명

❖ 소관 : 국무조정실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 [현황] 역대 정부마다 별도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현 정부도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민관합동 추진단을 병행

○ (역대 정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마다 별도 기구를 신설해 병행 운영

* 노무현 규제개혁기획단, 이명박 국가경쟁력강화위, 박근혜 규제개혁장관회의, 문재인 규제개선추진단, 윤석열 규제혁신추진단

○ (현 정부)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현장 규제를 발굴하는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을 함께 운영

* (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개편, 대통령이 위원장, 국무총리와 민간 (성장·민생·지역 분과)이 부위원장, 총 35~50명

** (추진단) 경제6단체·기업 파견 인력으로 구성, 규제를 발굴·검토해 위원회에 개선과제 보고

□ [문제점] 추진체계 분산과 비상임 위주 운영으로 실효성 저하

○ (기능 중복) 한시적 별도 기구가 반복 설치돼 조직 간 기능이 중복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며 전문성 축적도 곤란

○ (비상임)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어서 상시적·집중적 과제 관리 곤란

□ [개선방안] 규제합리화위원회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상임 책임자를 두는 상설 추진체계로 전환·법제화

○ (일원화)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위원회 사무처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통합해 역량 집중

○ (상임화) 위원 일부를 상임화해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규제 차르' 역할을 부여하고, 정권 교체와 무관한 상설 체계로 법제화

* 차르(czar): 특정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책임자로, 美 오바마 행정부는 과학기술 정책국장을 '과학 차르'로 임명

76. 신산업 진입규제와 '덩어리' 규제의 혁파

❖ 소관 : 국무조정실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등

□ [현황] 기존 산업을 전제로 만든 규제가 기술·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

○ (진입규제) 도입 당시에는 타당했던 규제도 기술·산업환경이 바뀌면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진입규제로 변질될 가능성

○ (덩어리 규제) 여러 부처·법령이 동시에 얹힌 덩어리 규제는 개별 규제 개선만으로는 사업 제약을 해소하기 곤란

* 덩어리 규제: 다수 부처·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얹혀 있는 규제

□ [문제점] 시장진입 규제와 덩어리 규제에 대한 통합적 개선이 부족하고, 집행 과정의 지체도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 (부분 개선의 한계) 일부 절차 규제를 고쳐도 연계된 다른 규제가 남으면 실제 시장 진입과 사업 추진 효과는 제한적

○ (집행 지체) 소극적 규제 해석과 행정기관의 대응 지연은 속도가 중요한 사업화 단계에서 그 자체로 중대한 리스크

□ [개선방안] 시장진입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기존 규제 관리체계와 부처 규제개혁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

○ (규제 관리) 일몰 도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시적 규제유예를 주기적으로 적용해 관리 수단의 실효성 확보

○ (조정 기능)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실질적인 부처 간 조정 역할 강화

○ (성과평가) 진입규제·덩어리 규제 개선 실적의 반영 비중을 높이고, 개선 건수 중심 평가를 기업 체감도 중심으로 개편

77. 갈라파고스 규제 개혁 및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최소화

❖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금융위원회 등 /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 관련 법령 :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

□ [현황]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늘어나는 차별규제가 여러 법령에 다수 존재

○ (갈라파고스 규제)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금산분리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억제

* 갈라파고스 규제: 우리나라 또는 극소수 국가에만 있거나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

** (지주회사) 자회사 주식 50%(상장 30%) 이상 보유 의무, 계열사 외 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등 → G5는 지분율 규제 없음

*** (금산분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 EU는 산업·금융자본 간 상호 소유 허용, 일본은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허용

○ (규모별 차별규제)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규제가 61개 법령 342개('23.6월)로, '19.8월 188개에서 154개 증가

* 공정거래법 67개, 금융지주회사법 53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9개, 상법 22개 등

□ [문제점] 과도한 규제 준수비용과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규제 때문에 기업의 투자·성장 유인이 크게 저하

○ (준수비용)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매입 등 규제 준수비용 때문에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고 혁신 활동이 위축

* 16개 비(非)지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지분율 규제에 따른 자금 부담 30.9조원(한경협, '20년)

○ (성장 잠재력)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하면 부가가치 63.5조원, 일자리 92.3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한경협, '16년)

*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게임 셧다운제, 금산분리, 택배 증차규제

○ (성장 기피)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 규제가 늘어, 규제를 피하려고 스스로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확산

- * 적용 규제 수: 자산 1천억원 19개 vs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342개(한경협, '23년)
- **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축소·규제 강화 체감 77%,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고려 30.7%(대한상의, '23년)
- (경영판단 위축) 대주주 의결권 제한(상법), 출자 제한(공정거래법) 등으로 신사업 투자와 혁신적 경영전략 수립 제약
- [개선방안] 국제기준과 차이가 큰 규제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후규율 중심으로 전환
- (갈라파고스 규제)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등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G5처럼 독점 등 시장 실패 행위에 대한 사후규율로 전환
 - * 주요국 규제체계와의 정합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규제 정비
- (차별규제) 단지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는 규모별 차별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
 - * (국제기준) 지주회사 행위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대주주 의결권 제한(상법)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폐지
 - ** (사후규제) 진입규제·사전적 행위규제·소유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후규제·자율규제로 전환

78. 지주회사 출자·소유 규제 완화

❖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0조

□ [현황] 지주회사는 금융사 보유 금지, CVC 피투자기업 인수 제한,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 등으로 신산업 진출에 제약

○ (금융사) 일반지주회사는 카드사 등 여신금융사 보유가 원칙 금지

○ (CVC)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사는 CVC 피투자기업 지분 인수 제한

* 지주회사등: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공정거래법 제18조제7항)

**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투자 전문회사로, 계열사·외부 출자자의 자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

○ (공동출자) 복수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도 금지

□ [문제점] 출자·소유 규제가 신산업 투자와 자금 운용 효율성 저해

○ (투자 제약) CVC 투자성과의 그룹 내 회수가 막히고 자회사 간 공동투자도 불가능해 그룹 차원의 성장전략 실행력 저하

○ (부담 집중) 대규모 투자 시 자금 부담이 특정 법인에 집중돼 부채비율 상승·신용등급 하락 등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 (국제 비교)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는 G5 등 주요국에 없는 규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6개 비(非)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지분율 규제 준수에 30.9조원 소요(한경협, '20년)

□ [개선방안] 금융사 보유·CVC 후속 인수·손자회사 공동출자를 허용하고, 사전적 지분율 규제는 폐지해 사후규율로 전환

○ (허용 확대) ①지주회사의 여신금융사 보유 ②비(非)지주 계열사의 CVC 피투자회사 주식 인수 ③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 (규율 전환) G5 국가처럼 사전적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기업 행위에 대한 사후규율로 전환

7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완화

❖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공정거래법 제25조

□ [현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은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

□ [문제점] 획일적 의결권 제한이 금융사의 신사업 진출과 공익법인 주식 기부를 제약하고 재산권 침해 우려도 존재

○ (신사업 제약) 핀테크 등 금융 유관업도 비금융업으로 분류돼,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실질적 사업 참여 차단

○ (재산권 침해) 산업분류만으로 의결권을 일률 제한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유사한 해외 입법례도 찾아보기 어려움

○ (기부 위축) 공익법인 보유 지분은 대부분 총수 등이 증여한 것이나, 의결권 제한으로 활용 가치가 낮아져 주식 기부 유인 약화

□ [개선방안] 기업 현실과 국제 기준에 맞게 의결권 제한 제도 개선

○ (금융·보험회사) 핀테크 등 금융 유관업 계열사 주식 의결권 허용

○ (공익법인) 보유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폐지

80. 동일인관련자 범위 개선

❖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 [현황] 계열회사·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력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관련자에 일률 포함

* 동일인관련자: 동일인(총수)과 합산해 기업집단의 범위를 판단하는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

○ 계열회사, 동일인 측이 30% 이상 출연한 최다출연자이거나 설립자인 비영리법인·단체와 이들의 임원을 동일인관련자로 규정

* ①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②동일인 측이 30% 이상 출연한 최다출연자이거나 설립자인 비영리법인·단체

** ③동일인이 임원 구성·사업운용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④①~③의 사용인(법인은 임원)

□ [문제점] 동일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독립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까지 동일인관련자로 규율하는 과잉 규제

○ (독립이사) 대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동일인이 아닌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독립적 지위에서 직무 수행

* 독립이사: 경영에 대한 독립적 견제를 위해 이사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대학교수·변호사·회계사 등)

○ (겸직 임원) 임원 겸직이 잦은 비영리법인 특성상,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겸직 임원까지 모두 동일인관련자로 규제

□ [개선방안] 동일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독립이사와 비영리법인의 동기임원은 동일인관련자 범위에서 제외

81. 하도급법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 형벌규정 개선

❖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하도급법 제18조제2항, 제30조제2항

□ [현황]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위 고시로 정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 (금지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

* 하도급법 제18조제2항제3호

○ (벌칙) 위반 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하도급법 제30조제2항제2호

□ [문제점] 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하고 그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무엇이 범죄인지 예측 곤란

○ (위임 문제) 처벌 대상인 경영상 정보의 범위를 공정위 고시에 맡기고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

○ (포괄성) 고시가 정한 정보 유형이 광범위해 원사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움

* (고시상 5개 유형) ①원가 정보 ②다른 사업자에 대한 매출 정보 ③경영전략 정보 ④영업 정보 ⑤거래 전산망 접속 정보

** 예: 원가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제품 개발·생산·판매·신규투자 계획, 거래처 명부, 납품조건·가격, 전산망 ID·비밀번호

□ [개선방안] 경영상 정보 요구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과징금·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

○ (형벌 삭제) 하도급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벌칙 적용 대상에서 부당한 경영상 정보 요구행위(제18조제2항제3호)를 제외

○ (행정제재) 과징금·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를 활용해 원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정보도 보호

82. 하도급법 자진시정 면책제도 확대 적용

❖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 [현황] 하도급법은 자진시정 시 과징금·벌점을 감경·배제하나, 주로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등 대금지급 관련 위반에 적용

○ 서면 미교부, 기술자료 요구절차 미준수 등 절차적 위반은 자진시정을 하더라도 과징금·벌점 면책 근거가 불명확

*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III.21.마

** 기술자료: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 방법 자료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정보(요구 시 사전협의·서면 교부 필요)

□ [문제점] 소액·일회성 거래나 단순 착오에 따른 경미한 절차 위반도 과징금·벌점 대상이나, 자진시정 유인은 부족

○ (행정력 분산) 과징금 고시 개정('26.8월)으로 제재가 강화된 가운데, 실질 피해 없는 절차 위반까지 제재해 중대 사건 대응에 한계

* 5년 내 위반 전력 1회만으로 최대 50%, 반복 횟수에 따라 100%까지 과징금 가중

** (사례)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 A사, 협력업체 기술자료 3건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로 과징금 3,600만원(공정위, '26.2월)

○ (구분 모호) 일반 업무자료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경계가 모호해 실무자의 절차 준수 부담과 분쟁 가능성 증대

○ (유인 부족) 절차 위반은 자진시정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가 없어 기업의 내부 준법점검과 오류 시정 유인 저하

□ [개선방안] 서면 교부·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을 자진시정 면책 대상에 포함하고, 요건 충족 시 경고 또는 사건 종결

○ (면책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경고 또는 사건 종결

* ①공정위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서면 교부·절차 보완 완료 ②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기술유출 등 실질 피해 미발생 ③소액·일회성 거래이거나 단순 업무 착오에 따른 위반

○ (벌점) 시행령상 벌점 면제·감경 기준도 함께 정비

83. 산재은폐행위 형벌규정 개선

❖ 소관 : 고용노동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 [현황] 산재 은폐와 산재 발생 미보고는 형사처벌·과태료로 각각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 형사처벌,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 ▶ 산재 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산안법 제170조 제3호
- ▶ 산재 미보고: 1,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안법 제175조 제3항 제2호

○ 법원은 산재은폐행위 요건으로 산재 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에 더하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함을 제시

- * ex. 공상(公傷) 처리 조치: 근로자가 업무 중 경미한 부상을 당했을 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대신, 회사가 치료비와 휴업손실 등을 직접 보상해주는 조치

□ [문제점] 산재 은폐 판단기준 모호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확대

○ 산재 은폐와 산재 발생 미보고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유사한 행위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부과될 우려

○ 특히,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목적인 공상처리도 산재 은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주의 형사처벌 위험을 가중

○ 이에 사업주가 공상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사례가 늘며, 신속한 보상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 보상 제도까지 위축 우려

□ [개선방안] 산재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산재 발생 보고 의무 위반 제재체계의 과태료 일원화

○ 산재 은폐와 미보고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은 만큼, 산재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는 은폐행위와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미보고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

- * 위반행위 경중·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

현 행(산업안전보건법)	개 선 안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삭제>

84.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기부금 수증 시 공시의무 완화

❖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공정거래법 제29조·제37조·제130조,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 [현황]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기부받으려면 수증 전에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함

○ (의무)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취득·처분을 대규모내부거래로 보아 거래상대방·금액과 무관하게 사전 의결·공시의무 부과

* 공정거래법 제29조·제37조

○ (제재)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허위로 공시하면 과태료 부과(공정거래법 제130조)

□ [문제점] 수증 시점과 조건을 공익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데도 사전 의결·공시를 요구해 이행이 곤란하고 행정부담 발생

○ (이행 곤란) 기부는 공익법인 의사와 무관하게 수시로 발생해, 수증 전에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계열회사 주식은 거래상대방과 무관하게 1주만 취득해도 의무가 발생하며, 일반주주의 주식 기부는 사전 파악도 곤란

○ (형식적 절차) 수증은 공익법인이 거래조건을 정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이사회 개최를 요구해 이사회 운영의 비효율 초래

○ (중복 공개)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은 이미 국세청 공시와 자체 공지로 공개하고 있어 별도 사전공시의 실익이 낮음

○ (기부 위축) 규제 준수 부담이 공익법인의 기부 수증 자체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기업집단의 사회공헌 활동을 제약

□ [개선방안] 계열회사 주식 수증은 사후 공시로 전환하고, 계열회사로부터의 기부금 수증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

○ (주식) 사전 의결·공시를 분기 종료 후 45일 내 사후 공시로 변경

* 공시 항목·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감시 기능의 실질적 약화는 없음

○ (기부금) 거래조건을 정할 수 없는 일방적 수증은 대규모내부거래 규율 취지와 무관하므로 공시 대상에서 전면 제외

85. 보험회사 수직계열 자회사 관련 이중규제 해소

❖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115조,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

□ [현황]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상 승인·신고를 거쳐 경영효율 목적의 자회사를 보유하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규제도 적용

○ (보험업법) 비용 절감·전문성 활용을 위해 금융위 승인 또는 신고를 거쳐 보험업 밀접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보유(제115조)

○ (공정거래법) 공정위는 '보험회사만 적용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자회사 거래에도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동일 적용

□ [문제점] 수직계열 자회사와의 거래에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이 이중으로 적용돼 분사 효과와 경영효율이 저하

○ (분사 효과 저하) 사내 사업부문일 때는 제한이 없던 거래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로 분리한 뒤에는 부당지원 규제 대상

○ (주요국)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모(母)-자(子)회사 간 협조적 행위를 반경쟁·반독점 행위로 보지 않고 규제에서 제외

* (미국)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 합의는 셔먼법 제1조 미적용 / (EU) 동일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협조 행위는 EU조약 제101조 미적용

** (일본) 모-자회사 간 거래는 실질적으로 동일기업 내 행위에 준해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 규제 미적용

○ (제도 간 부정합) 세법은 '13년 개정으로 경영효율 목적 수직계열화에 따른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 [개선방안] 개별법상 감독을 받는 경영효율 목적의 수직계열 모자회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원 규제 적용을 완화

○ (적용 제외) ①개별법에 따라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②경영 효율화를 위한 수직계열 모자회사이면 부당지원 규제 제외

* 공정위도 비용 절감·품질 향상 등 효율성 제고 목적의 수직계열화는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보아 예외를 인정(가이드라인)

○ (심사지침) ' 25.4월 행정예고 후 진행이 멈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예측가능성 제고

86. 가업승계 목적 신탁주식 의결권 제한 개선

❖ 소관 :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자본시장법 제112조

□ [현황] 신탁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가업승계 목적 예외도 입법 미완료

○ (의결권 제한) 신탁재산인 주식의 동일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넘으면 신탁업자는 초과분의 의결권 행사 불가

* 자본시장법 제112조제3항(신탁을 통한 우회적 지분 취득 방지 목적)

○ (개선 지연) 정부가 '22년 「신탁업 혁신 방안」에서 가업승계신탁 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진전 없음

*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24.11월, 김상훈 의원안)은 국회 계류 중

□ [문제점] 의결권 제한과 가업상속공제 적용 불확실성 때문에 가업승계신탁의 활용이 미미하고 경영 안정성도 저해

○ (의결권)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하면 15% 초과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승계 기업의 경영 안정성 훼손

* 가업승계신탁은 유류분·경영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 승계수단이나, 의결권 제한 등으로 활용 미미

○ (세제) 신탁을 활용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과세당국의 명확한 해석 부재

* 공제 요건(피상속인이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 판단 시 신탁회사의 보유기간·지분율을 위탁자의 것으로 볼지 불분명

□ [개선방안] 가업승계 목적 신탁주식은 온전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신탁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명확화

○ (의결권) 자본시장법 제112조에 가업승계 목적 신탁의 예외 신설

○ (세제) 신탁을 통한 상속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유권해석 마련

[7] 투자 R&D 세제 경쟁력 강화

87.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현황]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 신설('26년 정부 세제개편안)

○ (지원분야)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을 충족하는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세부 품목은 대통령령 규정)

□ [문제점] 6대 분야 외에도 정부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 필요

○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미래형 자동차(전기차)*,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바이오의약품·백신, 액화수소** 등 핵심 국가전략기술 포함 필요

* 中 업체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점유율은 62.3%(KAMA)에 달하고, 국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도 2.0만대('23년)→7.0만대('26.上)로 3배 이상 급증

** 기체 수소를 극저온(-253℃)으로 냉각하여 액화한 수소, 수소차 보급 등의 핵심 수단

○ 에너지·전력 효율 제고,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지속가능항공유*(SAF), 히트펌프** 포함 필요

*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배출을 줄인 친환경 연료

** 외부 열에너지(공기, 수열, 지열 등)를 흡수, 이동시키는 고효율 열 생산·냉난방 설비

□ [개선방안]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분야 확대

* ex.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 액화수소, SAF, 히트펌프 등

현 행(조특법 세제개편안)	개 선 안
제29조(국내생산세액공제) ② 적격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1.~3. (생략)	제29조(국내생산세액공제) ② 적격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추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 히트펌프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1.~3. (생략)

88.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개선① : 국내판매 요건 제외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현황]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 및 국내 판매할 것을 주요요건으로 포함 (2026년 세제개편안)

○ 국내판매가 되지 않고 수출되는 경우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제외

□ [문제점] 제도의 목적이 국내 생산기반 강화에 있는 만큼, 판매처에 따라 공제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 존재

○ 미국·일본의 유사 제도*도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적용 중

* 미국 IRA 중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 일본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 국내 판매분만 지원하면 혜택이 국내 시장에 집중돼, 수입 제품과의 공정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통상분쟁 소지를 높일 우려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협정)은 보조금으로 다른 회원국 상품의 수입이 배제·방해되는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제5조, 제6.3조)

□ [개선방안]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요건에서 ‘국내 판매’ 요건을 삭제

○ 국내에서 생산한 적격품목은 판매지역과 관계없이 공제 적용하여 내수·수출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국내생산을 지원

○ 국내생산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제도 취지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제도 활용 제약 및 통상분쟁 소지 완화

현 행(조특법 세제개편안)	개 선 안
제29조(국내생산세액공제)	제29조(국내생산세액공제)
① (생 략) 1. 생산요건 (생 략) 2. 판매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할 것 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공급받은 적격품목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생 략) 1. 생산요건 (생 략) 2. 판매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할 것 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공급받은 적격품목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9.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개선② :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현황]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 (2026년 세제개편안)

○ 적자 기업 등에 발생하는 미공제액의 환급이나 제3자 이전은 미포함

□ [문제점] 대규모 선행투자 단계에 있거나 초기 적자가 발생하는 첨단산업 내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적기에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움

○ 법인세는 이익을 바탕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구조로, 대규모 CAPEX와 초기 적자 기업은 공제받을 법인세가 없으므로 세액공제가 즉시 현금 유입으로 연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제한

○ 이월공제를 통해 향후 이익 발생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은 현(現) 시점의 투자재원 확보가 중요

○ 미국(IRA 45X)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등에 현금 지급 또는 제3자 이전을 허용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현금처럼 활용 가능

□ [개선방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현금 직접 환급 제도를 도입하거나, 공제액의 제3자 이전 또는 조기 현금화 허용

○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고, 기술·인력·시설 등에 대한 재투자 선순환 효과 기대

* 추가로 적용대상을 최근 3개년 영업손실 기업에 한정하는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제시

세제개편안(조세특례제한법)	개 선 안
<신 설>	<신 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생산세액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29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5(생산세액공제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제29조의4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90.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개선③ : 중복적용 허용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현황]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동 제도 적용 시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제한(2026년 세제개편안)

□ [문제점]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신규 설비투자,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각각 정책목적 상이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에도 불구하고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병행할 수 없어 투자와 생산 지원 효과가 약화될 우려

○ 또한 정부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 신청(수정신고)한 후 공제액 및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자금 부담 발생

□ [개선방안]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허용

○ 투자액과 생산량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각각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필요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복 배제 시에는 대규모 투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 필요
(ex. 당해연도 소득세·법인세의 50% 이상 등 과감한 세액공제 한도 설정)

현 행(조특법 세제개편안)	개 선 안
제127조 제④항 (중복지원의 배제)	제127조 제④항 (중복지원의 배제)
☐ 중복배제 되는 공제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 통합투자세액공제, <u>국내생산세액공제</u> 등	☐ 중복배제 되는 공제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 통합투자세액공제, <삭 제> <u>국내생산세액공제</u> 등

9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현황] 기업의 일반기술 연구·인력개발(R&D)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공제율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

< 기업 규모별 R&D 세액공제율(%)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술	0~2%	8~20%	25%

□ [문제점] AI 등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국내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 보완 필요

○ R&D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성공이 불확실한 고위험 투자임에도,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3~6%('13년)에서 0~2%까지 축소

○ 기업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과도하게 차등하고, 사전에 지정된 기술*에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일반 R&D 분야의 투자 유인 저하

* R&D 세액공제율(대기업, %) : 신성장·원천기술 20~30, 국가전략기술 30~40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R&D 투자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만큼, 우리도 차등 지원을 완화할 필요

* 미국(3%), 영국(18%), 프랑스(36%), 중국(32%) 등

□ [개선방안] 대·중견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확대하여 규모별 격차 완화

○ 일반 R&D 공제율 확대 : 대기업 0~2% → 5%, 중견기업 8% → 15%

* 현재 국회에는 대기업 0~2% → 10%, 중견기업 8% → 1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계류 중(구자근(국) 의원안, '24.10.30)

현 행(조세특례제한법)	개 선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① (좌동)

1. ~ 2. (생 략) 3.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1) 중소기업인 경우 :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0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u>100분의 8</u>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 (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1. ~ 2. (좌 동) 3. (좌 동) 가. (생 략) 나. (생 략) 1) (좌 동)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u>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0</u> ~~(삭제)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u>100분의 15</u>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u>100분의 5</u>
---	--

92.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관 확대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 [현황]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관에 산학협력단 미명시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며, 외부 위탁연구개발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관에 맡긴 경우에 한해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 현행 규정은 위탁기관으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과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은 명시하지 않음

* 일반 R&D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는 산학협력단이 포함(조특법 시행령 별표6)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대학의 산학연 협력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업과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대학 산학협력 연구개발의 계약·수행 주체로 활용되고 있음

□ [문제점] 동일 대학의 연구인력·시설을 활용한 동일 연구개발임에도 계약 상대방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져, 실제 산학협력 구조와 괴리

○ 대학과 직접 계약한 연구개발비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일 연구를 산학협력단과 계약한 경우 고율공제 적용 제한

○ 산학협력 연구개발이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산학 공동연구 및 첨단기술 R&D 투자 유인을 저해

□ [개선방안]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관에 산학협력단을 명시

93. 국가전략기술 등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현황]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의 법인세액이 과세표준의 10~17%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은 세액공제·감면 적용 배제

□ [문제점] 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R&D 및 시설투자에 고율의 세액공제가 허용되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세액공제 확대효과 제한

○ 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R&D와 시설투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래 성장성 및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높은 세액공제 혜택 적용

* (R&D세액공제, 대기업 기준) 국가전략기술 30%~40%, 신성장·원천기술 20%~30%

* (시설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기준) 국가전략기술 15%~25%, 신성장·원천기술 3%~13%

○ 그러나 최저한세로 인해 정부 지원이 100%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상황

○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기업규모 별로 동일 항목에 대해 차별을 두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

□ [개선방안]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법인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한해 최저한세 적용 제외

현 행(조세특례제한법)	개 선 안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생략)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 (이하 생략)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좌동)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로 한정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하 생략)

94. 국내 최저한세를 인하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현황]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 시 조세감면 등을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일정수준(17%) 이상의 조세 부담

* 과세표준 100억 이하 10%, 1,000억 이하 12%, 1,000억 초과 17%

□ [문제점]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17%(지방세 포함 18.7%)은 글로벌 기준인 15%보다 높아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국가 간 조세 경쟁과 세원잠식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OECD 및 G20 합의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15%) 제도 시행

*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의무 발생

○ 국내 최저한세율을 15%로 인하하더라도 법인 지방소득세를 고려하면 실질 부담세율은 16.5%로 글로벌 최저한세(15%)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

○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R&D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최저한세율 17%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여 대규모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기업일수록 공제·감면의 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 발생

□ [개선방안] 국내 최저한세율 제도를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에 맞춰 조정

○ 과세표준 1,000억 초과 시 최저한세율 17% → 15%로 하향

현 행(조세특례제한법)	개 선 안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 …(생략)…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 받은 후의 세액이 …(생략)…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u>100분의 17</u> [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생략)…에 미달하는 경우 …(생략)…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 …(생략)…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 받은 후의 세액이 …(생략)…(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u>100분의 15</u> [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생략)…에 미달하는 경우 …(생략)…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95.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한 연장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현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규정

□ [문제점] 대규모 선행투자 후 장기간 적자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은 납부할 법인세가 부족하여 세액공제를 10년 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우려

○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 후 수익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초기 적자 등이 지속되면 10년 내 세액공제 활용이 어려움

* 바이오 생산시설은 설비투자 이후에도 GMP 적합 판정 등 인허가 및 상업 생산까지 상당기간 필요, 투자 시점과 수익 발생 시점 간 장기간의 시차 존재

○ 흑자 전환 이후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 가능액이 제한되어, 누적된 미공제액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이월 기간 만료 우려

* 최저한세 :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미국*·캐나다에서 R&D 세액공제 미사용액을 20년간 이월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 세제지원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

* 일반사업세액공제 미사용액을 1년 소급·20년 이월 허용(美 연방법전 IRC §39)

□ [개선방안]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10년 → 20년 이상으로 확대

○ 특히 장기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이월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여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필요

현 행(조세특례제한법)	개 선 안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중 략)…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u>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u> 이내에 끝나는 각	① …(중 략)…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u>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년</u>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 (이하 생략).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 (이하 생략). [부칙]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	---

96. 핵심 자산인 토지·건물 투자 세제혜택 대상 포함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현황] 기업 시설투자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이하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 규모·시설 유형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등에 한정하며, 토지·건축물, 항공기·선박 등(이하 ‘토지·건물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단, 일부 업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토지·건물 등 투자에도 공제 허용

업종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자산
운수업(중소기업 限)	차량·운반구, 선박
어업	선박
건설업	건설용 기계장치(지게차, 기중기 등)
유통업	유통산업합리화시설(창고시설, 운반용 차량·장비 등)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종합·전문휴양업	숙박·휴양시설

□ [문제점] 시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산인 토지·건물 등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투자를 촉진한다는 제도 취지와 실효성을 저해

○ 공장 신·증설을 위해 토지·건물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해 실질적인 공제 효과가 미흡

*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총 시설투자 중 토지·건물 투자 비중이 30~50%에 달함

○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토지·건물 등 자산’ 이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사업 영위를 위한 필수시설로서 생산과 관련성이 높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

산업계 애로
· (항공운수업) 신규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공기가 공제 미대상, 타 산업 대비 실질적인 수혜 미미 * 항공운수업은 항공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산업으로, 안전운항 증진 및 탄소중립을 위해 국적항공사의 저탄소 첨단항공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 (바이오산업) 건물 준공 시 일반 건물과 달리 특수설계*·시공이 필요하고 해당 건물은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아 건축물이 본질적으로 기계장치와 유사 * cGMP, 무균시설 등 건축물

○ 해외 주요국은 주요 전략산업의 공장 등 건물 투자에도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보조금 혜택을 제공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 중

* ex)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건물을 포함한 유형자산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 일본은 공장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

□ [개선방안] 사업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토지·건물·항공기 등 자산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1안) 사업용 토지·건축물과 항공기·선박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현 행(조세특례제한법)	개 선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생략)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u>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좌동)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운반구 및 각종 공·기구 및 부품 등은 제외한다.</u>

○ (2안) 국가전략산업 및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에 한해 토지·건물 등의 투자에도 세액공제 허용

현 행(조세특례제한법)	개 선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생략)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u>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좌동)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단,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건축물 등 자산에도 적용한다).</u>

[8] 노동시장 안정과 일자리 지원

97.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근무지 이전 제외

❖ 소관 : 고용노동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노동조합법 제2조

□ [현황] 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 판단기준에 대한 시행지침'을 통해 공장 신설·이전 시 근무지 이전 등 배치전환을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제시

○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범위(교섭대상)에 추가(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26.3.10일 시행)

○ 이에 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공장 신설·이전 결정 자체는 경영 판단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나, 이에 따른 근무지 이동은 교섭대상임을 발표(9.3일)

* [지침상 교섭대상 예시] 구조조정에 따른 신설 공장으로의 배치전환(근무지·직무 등 변동),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수당, 통근·이주비 지원 등)

□ [문제점] 공장 신설·이전 시 인력 운영을 둘러싼 노사분쟁 확대 우려

○ 메가특구 등 비수도권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는 초기 가동 안정화 및 숙련 인력의 적기 배치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

○ 반도체 공장 이전·신설 시 단기간 내 충원이 어려운 공정·연구 전문 인력을 기존 사업장에서 순환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

○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인력 배치를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으로 볼 경우, 배치 시기·규모를 둘러싼 노사분쟁 상시화 우려

○ 인력 배치를 둘러싼 노사분쟁으로 적기 배치가 지연될 경우, 공장 가동 및 투자 지연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 [개선방안] 사업장 이전·신설에 따른 근무지 이전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

○ 공장 이전·신설에 따른 근무지 이전은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임을 명확화

○ 사업장 이전·신설에 따른 근무지 이전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 대상이 아님을 노동조합법에 명시할 필요

98.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정책 마련

❖ 소관 : 고용노동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등

□ [현황] 여당 정년연장 특위*를 중심으로 65세 정년연장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25.12월 3가지 정년연장(案)** 제시, 연내 입법 추진 전망

* 위원장(소병훈 의원), 경영계(경총·중기중), 노동계(민·한노총), 학계, 청년 등 구성

** 1안 : ▶ '28년 61세 ▶ '30년 62세 ▶ '32년 63세 ▶ '34년 64세 ▶ '36년 65세

2안 : ▶ '29년 61세 ▶ '32년 62세 ▶ '35년 63세 ▶ '37년 64세 ▶ '39년 65세

3안 : ▶ '29년 61세 ▶ '32년 62세 ▶ '35년 63세 ▶ '38년 64세 ▶ '41년 65세

○ 특위는 노동계·경영계·학계 의견을 수렴했으나, 정년연장 시기와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차 지속***

*** [경영계] 직무·성과를 고려한 선별적 재고용 허용, 임금체계 개편 법제화

[노동계] '33년까지 65세 정년 법제화, 이외 임금·근로조건은 노사자율 합의

○ 정부·여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가 있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문제점] 획일적인 정년연장은 노동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 신규일자리 위축 등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

○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업무 태도, 근로의지, 직무 역량 및 성과가 낮은 인력까지 동일하게 고용을 연장시켜, 조직 생산성을 하락시킬 우려

○ 호봉급 임금체계가 지배적인 상황(300인 이상 기업 58.0%, '24년)에서 정년연장 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위축돼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

○ 정년연장 효과는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부 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본래 취지와 달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

□ [개선방안]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 및 퇴직 후 재고용·정년 연장 등 기업의 선택권 부여 등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정책 마련 필요

99.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후속 과제

❖ 소관 : 고용노동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 [현황] 기업 실적 연동형 성과급·투자·공장 신설 등의 교섭대상 여부에 대한 노사 갈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교섭 범위에 대한 지침 발표

○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이전 교섭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경영권 관련 사항도 단체교섭 대상(노동쟁의)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추가(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 '26.3.10일 시행)

○ 이후 노조가 기업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 지급과 대규모 투자·공장 신설까지 교섭을 요구하자, 정부가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

○ 정부는 지침을 통해 경영상 결정*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배치는 교섭대상으로 판단하는 기준 제시

* 기업 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 투자, 신기술 도입,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 그 자체(「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고용노동부, 9.3일)

□ [문제점] 지침의 한계 및 교섭범위 불명확에 따른 노사분쟁 우려

○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노조가 기업 실적 연동형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지속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법적 분쟁도 이어질 우려

○ 지침상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배치뿐 아니라 인사권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인력배치도 교섭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분쟁 심화

* 특히, 호남 반도체 팹 신설, 공공기관 이전 등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의 대규모 인력배치도 교섭대상에 포함될 소지, 교섭 결렬로 파업 시 사업 진행에 차질 우려

□ [개선방안] 노조법 개정을 통해 단체교섭 대상 범위 명확화

○ 경영·인사권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모적 분쟁을 완화

* ❶ 경영 실적에 연동해 일정 비율 및 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익 배분형 성과급의 도입·지급·기준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❷ 사업 양도·합병·분할·매각, 투자, 인력배치 등 경영권·인사권에 관한 사항

100.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 소관 : 고용노동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근로시간제도 하에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근무형태 다변화에 따른 근로시간 자율성 확보가 어려움

○ 주요국들은 연장근로시간을 월(月)·년(年) 단위로 유연하게 관리하는 반면, 한국은 주(週)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절에 애로

〈 주요국 근로시간제도 비교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주 48시간	주 35시간
연장 근로 시간	단위	주	제한 없음	월, 년	반기	년
	한도	주12시간		월 45시간, 년 360시간 *특별협정 시 월100시간, 년720시간	24주(6개월) 평균 일 총 10시간 [※] *단협시, 1년 평균 1주 48시간 이내 초과 가능	년 220시간 * 단협시, 초과 가능

※ 주 :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의미(독일은 연장근로시간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형태로 운영)

※ 자료 : 고용노동부,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제도('19년)

○ 독일은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제좌제*를 도입해 기업은 경기상황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 교육 등의 사유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

*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두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 근로시간을 소진하는 제도로, 단위기간은 월·반기·년 이상으로 활용

□ [개선방안]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주 단위 → 월·분기·반기 단위 이상)

현 행(근로기준법)	개 선 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생 략) <신 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 1개월, 3개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월, 6개월, 1년으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기간 및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과 제53조제3항의 연장 근로시간을 합하여 1주간에 64시간(제51조제1항의 경우에는 1주간에 60시간으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하 생략)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⑦ 사용자는 제2항·제3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1. 고소득 전문직종 근로시간 제한 면제

❖ 소관 : 고용노동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

□ [현황] 근로기준법은 농림수산업 등 일부 업종* 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주52시간 제한 등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

* 농림수산업, 감시·단속적 업무, 관리·감독 또는 기밀 취급업무 종사자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 [문제점] 산업·직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긴급한 업무수요 대응과 첨단산업 전문인력 활용에 한계

○ 현행 근로시간 규제*는 제조업 중심의 시간관리에 기반해, 성과·전문성이 중요한 연구개발 및 전문직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특별연장근로,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보완제도가 있으나, 사유·기간 제한과 사전 인가·노사합의 등 복잡한 요건으로 긴급 대응에 한계

* 특별연장근로 : 재해·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 발생 시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하며, 연간 90일 이내 제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근로 최대 6개월, 선택근로 원칙 1개월(R&D 3개월)로 기간이 제한되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근로기준법 제51조·제52조)

* 재량근로시간제 : R&D 등 법정 대상업무에 한정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업무수행 방법·시간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시 제한(근로기준법 제58조)

○ 반도체·배터리·AI 등 첨단산업은 일정 기간 전문인력의 집중 투입이 필요하나, 현행 규제로 탄력적 인력운용이 어려워 글로벌 R&D 경쟁력 저하 우려

□ [개선방안]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과 성과 간 연계성이 낮은 고소득 전문·사무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 고도의 전문성·자율성이 요구되는 전문·사무직 중 일정 직종·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 적용 제외

○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하고 집중적인 R&D가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적용 범위 확대 검토

102. 중소기업 대상 청년 채용 · 역량개발 지원 연계 강화

❖ 소관 : 고용노동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황] 중소기업 등의 청년 채용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및 청년 대상 지원 제도인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운영 중 (고용노동부)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일반 비수도권(480만원)·우대지원지역(600만원)·특별지원지역(720만원)으로 지역별 차등

○ 청년에게는 6·12·18·24개월 근속 시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기업에는 1년간 인건비를 보조하는 성격에 그침

□ [문제점] 채용 이후 청년의 직무경험 · 역량개발 기회가 부족할 경우 중소기업에서의 지속적인 경력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한계

○ 청년들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지원뿐 아니라 직무경험 기회 확대와 역량교육 강화에도 높은 수요를 보임

* 청년 선호 일자리 정책: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23.8%), 신입·초급 직무 경험 기회 확대(23.7%), 청년 대상 AI 활용 역량 교육 강화(19.8%) 등 ('26, 한경협)

○ AI 확산으로 초기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순 채용지원만으로는 청년이 새로운 업무방식에 필요한 역량개발을 충분히 유도하기 어려움

* 신규 채용자 중 청년층 비중(%): 33.6('06) → 25.2('25) (국가데이터처)

□ [개선방안] 현행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에 청년의 직무경험 · AI 역량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채용 청년에게 정부가 인정 · 관리하는 직무훈련 · AI 역량개발 교육*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 지급

* 한국산업인력공단 체계적 현장훈련(S-OJT),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 과정, AI+역량 Up 프로젝트 등

○ 청년 채용과 역량개발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 채용지원이 청년의 실질적인 직무경험 및 AI 역량 축적으로 이어지도록 개선

103.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현황]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2026년 세제개편안)

-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기업규모·채용대상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운영 중
- 대기업은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등 우대근로자 고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를 제외할 예정

□ [문제점] 대기를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경우 청년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 유인이 약화될 우려

- 현재 제도에서도 대기업은 우대근로자 증가분에 한정하여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대비 공제액*도 낮은 수준

* 대기업은 청년 근로자 1명당 2년간 800만원 세액공제, 중견·중소기업은 일반근로자도 공제대상이며, 우대 근로자 채용 시 각각 3년간 최대 2,300만원, 4,900만원 세액공제

- '25년 세법개정으로 최소고용증가인원수(10명)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요건도 강화되어, 대기업은 이미 지원대상과 요건이 제한적

□ [개선방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대기를 현행과 같이 유지

- 대기업이 청년 등 우대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 시 세액공제 적용

* 추가로, 대기업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확대 및 일몰 연장 필요

세제개편안(조세특례제한법)						개 선 안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생 략)						① (생 략)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 (중 략) --의 증가 인원 수(-- (중 략) --)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 (중 략) --의 증가 인원 수(-- (중 략) --)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이하 생략)						가. 중소기업의 경우(이하 생략)					
나. 중견기업의 경우(이하 생략)						나. 중견기업의 경우(이하 생략)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삭제)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유지)					
공제액 (인당 만원)		대	중견	중소		공제액 (인당 만원)		대	중견	중소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일반	1년	-	300	400	700	일반	1년	-	300	400	700
	2년		500	900	1,200		2년		500	900	1,200
	3년		500	1,000	1,300		3년		500	1,000	1,300
우대*	1년		500	700	1,000	우대*	1년	300	500	700	1,000
	2년		900	1,600	1,900		2년	500	900	1,600	1,900
	3년		900	1,700	2,000		3년	-	900	1,700	2,000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9] 자본시장 활성화

104.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금융투자업자 결제·수탁 근거 마련

❖ 소관 : 금융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 [현황]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발행 단계 규율에 집중

○ (정책방향) 금융위는 「토큰증권 정책방향」('26.9.4)에서 인프라 구축 3단계로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제시

* 온체인(on-chain) 결제: 증권 이전과 대금 결제를 블록체인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현재 대금은 예탁결제원 시스템으로 결제)

○ (입법 논의) '26년 하반기 국회 논의가 예고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 인가·준비자산·이용자 보호 등 발행 규율 중심

□ [문제점] 토큰증권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직접 취급할 수 없어 온체인 결제 구현에 제약

○ (규제 분절) 토큰증권은 금융투자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은 은행·가상자산 사업자 등 다른 업권이 취급하는 분리 체계 형성 우려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 결제 목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보관·관리·이전할 명확한 법적 근거 미비

○ (비용·효율) 토큰증권을 중개해도 대금 결제는 은행·가상자산 사업자를 거쳐야 해 결제·운영비용이 늘고 거래 효율 저하

□ [개선방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토큰증권 결제수단 활용과 금융투자업자의 결제·수탁 참여 근거 마련

105. 기금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진입 여건 마련

❖ 소관 : 고용노동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현황]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수탁법인 인가 기준 및 방식 논의

○ 노사정 합의에 따라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외 다양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가입자 선택권 확대와 운용 효율성 제고 추진

* 설립·운영 주체와 참여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으로 구분

○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의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기금 난립 방지와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 수탁법인 수를 제한(5~8곳)하는 방안 논의

* 호주 퇴직연금 수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은 소규모 기금 통합을 통해 관리비용 절감

□ [문제점] 수탁법인 수를 기존 사업 규모 중심으로 제한할 경우,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의 참여가 제한되고 가입자 선택권이 축소될 우려

○ 수탁법인 수를 사전에 획일적으로 제한(5~8곳)할 경우, 운영역량을 갖춘 기관의 진입과 경쟁이 제약되고 가입자의 선택권이 축소될 우려

○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 규모만으로 수탁법인 인가 여부를 판단할 경우, 기금형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장기 자산운용·위험관리·독립적 의사결정 역량 등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실질적 운영역량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 인가기준 마련

○ 재무건전성, 전문인력, 장기 운용실적, 위험관리체계, 기금 규모 확보계획 및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요건을 갖춘 다양한 금융기관 참여를 허용하여 사업자 간 경쟁과 가입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각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 기금 운용 및 제도 활성화 도모

106. 폐쇄형 사모펀드의 멀티클로징 허용

❖ 소관 : 금융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자본시장법 제2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1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7-21조제1항

□ [현황] 폐쇄형 펀드는 추가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해외에서 일반적인 멀티클로징(투자자 추가 모집) 활용 곤란

○ (국내)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폐쇄형 펀드)는 시행령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가능

* (예외) ①이익분배금 범위 내 발행 ②신탁업자 확인 ③기존 투자자 전원 동의 ④기존 투자자 우선매수기회 부여 ⑤금융위 고시 사유

** (고시 사유) 기존 투자자가 우선매수하지 않은 물량을 제3자에게 매수기회로 주는 경우로 한정(금융투자업규정 제7-21조제1항)

○ (해외) 모집 단계에서 ‘추가 발행 가능’ 조항에 사전 동의를 받고,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제3자에게 추가 발행하는 방식이 일반적

□ [문제점] 최초 모집 때 필요자금 전액을 확보해야 해,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해외 운용사에 넘겨주는 사례 발생

○ (일시 납입) 실물자산 투자는 단계별 자금 규모·시점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데도 최초 모집 때 전액 확보·납입을 사실상 강제

* 실물자산 펀드는 ‘투자처 발굴 → 실사 → 계약 → 거래 종결’ 순으로 진행

○ (딜 무산) 목표액에 미달하면 모집 자금을 반환하고 펀드를 포기해야 해, 유망 자산을 발굴하고도 해외 운용사에 기회 상실

○ (형평성)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단계적 납입(캐피탈 콜)과 투자자 추가 가입이 가능하나, 일반 사모 폐쇄형 펀드는 불가능

□ [개선방안]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 폐쇄형 펀드에 한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멀티클로징 허용

현 행(금융투자업규정)	개 선 안
제7-21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영 제24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영 제2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매수되지 아니한 집합투자증권이 있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21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영 제24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영 제2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매수되지 아니한 집합투자증권이 있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u> <u>2.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u> <u>가. 집합투자규약에 추가 발행이 가능한 기간, 한도 및 발행가액의 산정방법이 정하여져 있을 것</u> <u>나. 가목의 사항에 관하여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을 것</u> <u>다. 추가 발행으로 인하여 기존 투자자와 새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 간의 손익이 형평에 맞게 배분되도록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할 것</u> <u>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부터 2주 이내에 발행가액, 발행수량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정산의 내역을 기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107.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 소관 : 금융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현황] 보험회사 자회사는 법령에 열거된 업무만 영위 가능

○ 자회사 업무는 금융위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뉘며, 열거되지 않은 업무는 금융위가 인정한 경우에만 승인받아 영위

* (승인) 금융업, 신용정보업,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업무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법 제115조제1항)

** (신고) 손해사정, 보험대리, 보험업 관련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대여·판매 및 컨설팅 등 15개(시행령 제59조제3항)

□ [문제점] 데이터·AI 등 신산업 업무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해 신규 서비스 개발이 지연되고 소비자 편익도 함께 저해

○ (열거 한계) 데이터 분석, AI 모델 개발·운영 등 융합업무는 열거 항목에 없어 자회사 설립·전환 때마다 유권해석 필요

* "보험업과 관련된", "보험에 관한" 등 한정 표현 때문에 같은 역량을 쓰는 업무도 대상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짐

○ (범위 불명확) 데이터·AI 자회사의 자체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외부 고객 대상 서비스가 허용 범위인지 불분명

*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영 제59조제3항) 해당 여부

□ [개선방안] 데이터·AI 등 신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법령에 확대 반영

○ (대상업무) 시행령 제59조제3항제7호의 "보험업과 관련된" 요건을 완화하고, 데이터 분석·AI 모델 개발·운영을 허용 업무에 명시

○ (자회사 요건) 보험업법 제115조의 "주로 하는 회사" 요건 완화

* (현행)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 → (개선) "...업무를 하는 회사를..."

108. 보험회사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 합리화

❖ 소관 : 금융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현황] 보험회사의 자회사 발행 주식·채권 보유는 자기자본의 60%와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

* (자회사) 보험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해 소유하는 회사 (보험업법 제2조제18호)

** (근거) 보험업법 제106조제1항제6호가목

○ 자산 대비 자본이 탄탄한 보험사일수록 자기자본 60%보다 총자산 3%가 먼저 한도로 작용해 추가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

* 보험업 밀집업무 완전자회사, 해외 업무 수행 회사, 벤처투자회사·조합, 집합투자기구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영 제50조제2항)

□ [문제점] 자본 여력이 충분해도 총자산 3% 한도에 묶여 국내 금융회사 인수·지분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

○ (투자 제약) 보험시장 성장 둔화로 자산운용·비보험 수익원 확보가 핵심 경쟁력이 됐으나, 한도 탓에 국내 지분투자·M&A 제약

* (사례) 국내 자산운용사 인수 시 한도 제약으로 합작투자 구조를 택하고 입찰가도 낮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패

○ (역차별) 해외사업 자회사는 한도 산정에서 제외되나, 국내 금융회사 자회사는 한도가 적용돼 국내 투자가 불리

□ [개선방안] 총자산 3% 기준 삭제 또는 상향(자기자본 기준 유지)

현 행(보험업법)	개 선 안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생략) 6. 제115조에 따른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단서 조항 삭제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3 상향)

109.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 소관 : 금융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제7-1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 [현황]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23년)과 함께 신설된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신계약에서도 계속 쌓여 약 3년간 25조원 증가

○ (제도) 책임준비금이 해약환급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으로 쌓도록 해 전환이익의 사외유출 제한

*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생긴 전환이익이 배당 등으로 한꺼번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청산·대량해약 시 계약자를 보호

○ (적립 규모) 도입 당시 예상과 달리 전환 이후 신계약에서도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발생해 준비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누적

* 28조원('23.3월말) → 53조원('25.12월말)

○ (완화 조치) '24년 지급여력비율(K-ICS) 요건을 충족한 보험사의
적립비율을 80%로 낮췄으나, 신계약·변액보험은 여전히 적립대상

* K-ICS(신지급여력제도): 예상치 못한 손실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을
보유했는지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

□ [문제점] 신계약·변액보험까지 준비금 적립대상에 포함돼 이익잉여금
소진이 빨라지고 보험사 자본건전성 악화 초래

○ (주주환원 제약) 보험사가 매년 벌어들인 이익이 준비금으로 계속 묶여
배당 등 주주환원 여력이 지속적으로 축소

* (신계약) 신·구 회계기준의 계산방식(적용가정, 부리이율, 음(-)의 부채 인정 등)
차이로 부족액이 항상 발생해 매년 누적

** (변액보험) 특별계정 자산을 외부신탁·분리보관해 이미 계약자 보호장치가 있음에도
적립대상에 포함(중복규제)

○ (건전성 부담) 이익잉여금이 소진되면 K-ICS상 기본자본이 감소해
'27년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 규제에 대한 부담 확대

□ [개선방안] 전환 이후 신계약과 변액보험을 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하고, K-ICS 산정기준도 연계해 정비

○ (적립대상) 전환 이후 신계약과 변액보험을 적립대상에서 제외

○ (K-ICS 연계) 적립대상 조정이 기본자본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K-ICS 지급여력금액 산정기준을 함께 개정

* (1안)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의 산정대상을 준비금 적립대상과 동일하게 변경

** (2안) 경제적 실질이 같은 '감독회계 조정준비금 중 보험부채 관련 금액'으로 대체

110. 예금보험료를 합리적 조정

❖ 소관 : 금융위원회 / 정무위원회

❖ 관련 법령 : 예금자보호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현황] 예금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재산정이 추진 중이며, 저축은행은 0.40%→0.54% 인상안 제시

○ (현행 요율) 업권별로 차등 적용 중이며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시행령 제16조·별표1)

* 타 업권은 '09년 이후 요율을 유지했으나, 저축은행만 '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0.35%→0.40%로 인상

○ (조정 일정) 금융당국은 업권·민간전문가 논의를 거쳐 '26년 말 요율을 확정하고, '28년 납입분부터 새 요율을 적용할 계획

* (연구용역 중간결과) 은행 0.13%, 금융투자 0.22%, 생명보험 0.40%, 손해보험 0.50%, 저축은행 0.54%

**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을 반영한 예보료율 인상 관련」('26.8.20)

□ [문제점] 이미 최고 요율을 부담하는 저축은행에 추가 인상이 적용되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 여력 위축 우려

○ (부담 편중) 저축은행 요율은 이미 은행의 5배로, '25년 예보료 납부액(4,183억원)이 은행 다음으로 많은 수준

* 보험업권보다 1천억원 이상 많은 금액

○ (서민금융 위축)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을 담당해, 예보료 부담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서민금융 공급 축소 우려

□ [개선방안]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단계적 조정과 충분한 경과기간 부여

[10] 지역 및 국민생활 안정

111.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소관 :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11

□ [현황]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여금을 매칭하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제도 운영 중

○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6% vs 12%*)하여 제도상 저소득 청년을 우대하는 구조로 운영

* 우대형 12%→15%,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 12%→25%로 상향 추진('27년 정부 예산안)

□ [문제점] 자산형성 지원이 본인의 안정적 소득과 저축을 전제로 해, 저축 여력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이 실질적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

○ 현행 제도는 많이 저축할수록 정부기여금의 절대액도 증가하는 구조로, 저축 여력이 낮은 청년은 우대 매칭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액은 적을 수 있음

* 예) 20만원 납입 x 12%(우대형) = 기여금 2.4만원 < 50만원 납입 x 6%(일반형) = 기여금 3만원

○ 저소득·미취업·비정규직 노동 청년은 정책 필요도는 높지만, 실직·소득감소 등으로 납입을 지속하지 못해 혜택 상실 가능성이 높음

* 청년희망적금('22년 출시)의 경우, 최초 가입자 286.8만명 중 84.9만명이 중도해지(금융위)

□ [개선방안] 저소득 청년 중심으로 매칭 소득구간을 3단계로 세분화

○ 현행 이원화된 매칭체계(일반형·우대형)에 최저임금 수준(약 2,684만원, 월 209시간 기준)에 준하는 저소득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로 개편

* (1구간) 총급여 2,700만원 이하: 20%, (2구간) 2,7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5%('27년 예산안 우대형 수준), (3구간) 3,600만원 초과: 6%(현행 일반형 수준)

** '23년 청년도약계좌(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도 도입 당시에도 최저임금 연환산액(약 2,413만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 우대구간(2,400만원 이하) 설정

○ 저소득 청년이 일반형 만액(월 50만원) 납입자와 같은 기여금을 받기 위한 월 납입액을 25만원(현행)에서 15만원으로 낮춰, 중도해지 위험이 높은 저액 납입 청년의 지원 강화

* 예) **현행 일반형**: 50만원 납입 $\times$ 6% = 기여금 3만원, **현행 우대형**: 25만원 납입 $\times$ 12% = 기여금 3만원, **개선 우대형**: 15만원 납입 $\times$ 20% = 기여금 3만원

○ 자산형성 지원의 혜택이 안정적 소득을 가진 청년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저소득·불안정 노동 청년도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누리도록 보완

112. 국민 투자 자산 형성 지원: ①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 ②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 도입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95조

□ [현황]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되었으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부재

○ '25년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기업으로 적용대상이 제한되고 한시적***으로 운영

* (세율)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14% ~ 50억원 초과 30%

**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 등

***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적용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대상 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되어,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45%의 세율 적용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일부 정책 금융상품에만 장기투자 세제혜택이 도입돼 있고, 일반 상장주식의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재

□ [문제점] 제한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 부재로 배당 및 장기투자 활성화에 한계

○ 분리과세 적용 여부가 기업의 배당성향·배당증가율 등에 따라 결정되고 적용기간도 한시적이어서, 개인이 배당투자를 할 세제유인으로는 부족

○ 주요국 대비 높은 배당소득 세부담(최대 45%, 지방세 포함 시 49.5%)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효과를 제약하고 국내 자본시장 투자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

* 프랑스·이탈리아·영국·독일 등은 배당소득에 전면 분리과세 시행, 미국(61일 이상 보유 주식)·일본(상장주식)은 특정 주식에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주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체계가 적용되어, 단기매매보다 장기보유를 유도할 세제상 유인이 부족

* 미국은 장기보유 주식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부여(1년 이상 보유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0~20% vs. 일반 소득세율 10~37%)

□ [개선방안] ①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 ② 주식 장기보유 세제 인센티브 도입

○ (배당소득) 고배당기업에 한정된 분리과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상시화 검토

○ (장기보유) 일정 기간(예: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장기투자 유도

* 부동산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소득세법 제95조)에서 장기 보유 기준을 3년으로 규정

113.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현황]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투자·생산 및 본사 이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비수도권 본사 이전 법인은 감소 추세

○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통합투자·R&D 비용 세액공제와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지방우대 방안을 포함

* 예: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역별 지방우대계수 적용 (수도권 1.0~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등 한시적 감면 특례가 있으나, 최근 비수도권 본사 이전 법인 수는 감소 추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비수도권 본사 이전 법인 수: ('22년) 110개 → ('23년) 95개 → ('24년) 70개(국세청)

□ [문제점] 현행 지방 세제지원은 신규 투자·생산 또는 본사 이전에 집중돼, 지역에 장기간 정착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발전에는 미집중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신규 투자 규모에 따라 혜택이 결정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도 일정 생산실적을 전제로 해 기존 지방기업 전반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에는 한계

○ 본사 이전 감면 역시 이전 이후 일정 기간에 한정돼, 이미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에는 별도 세제상 유인이 부족

□ [개선방안]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는 내국법인에 법인세율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상시적 인센티브를 부여

* 예: 비수도권 법인은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대비 10% 감면

** 형식적 본점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 상시근무 인원 등 실질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114. 산업위기지역·인구감소지역 등 세액공제 시 지방우대 강화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24조, 제29조

□ [현황]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적용 시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 적용 (2026년 세제개편안)

* R&D세액공제 : 2~40%,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 1~30%

〈 지방우대계수 〉

구분	계수
① 수도권	1.0
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1.1
③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문제점] 산업위기지역에 생산 효율화,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강화 필요

○ 포항·광양은 철강산업 위기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나, 향후 시행령에서 지방우대계수의 세부지역을 일률적으로 구분할 경우 산업위기 상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

* 정부도 2025년 포항·광양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과 같이 투자 유치 및 산업기반 유지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 고려 필요

□ [개선방안] 산업위기지역·인구감소지역 등에 지방우대계수 최고 수준 적용

○ 추후 시행령에서 세부지역을 규정할 때, ▶ 포항·광양 등 산업위기지역의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지방우대계수를 1.5로 적용

115. 산업위기지역 활력 부여 : 설비투자 세제혜택 강화

❖ 소관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제30조의3

□ [현황] 기업 규모·시설 유형별로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 기업의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 투자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율 〉

구분	기본공제율(당기투자분)				추가공제율 (투자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위 해제 후 3년간	그 외		
일반 시설	1%	7.5%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R&D 및 사업화시설	3%	9%	6%	12%	
국가전략기술 R&D 및 사업화시설	15%	20%	15%	25%	
반도체 R&D 및 사업화시설	20%	25%	20%	30%	

□ [문제점]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필요

-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
- 무엇보다 위기지역 내 사업 기반인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긴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기여 기대

□ [개선방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 위기지역 내 기업 설비투자(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현 행(조세특례제한법)	개 선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생략) 2. 공제금액 가. (생략) 1) (생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좌동) 2. 공제금액 가. (좌동) 1) (좌동)

가) 중소기업의 경우: <u>100분의 12</u>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u>100분의 9</u>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u>100분의 6</u>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u>100분의 3</u> 4) 1)부터 3)까지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u>100분의 10</u>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u>1000분의 75</u>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u>100분의 5</u>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u>100분의 1</u>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18)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u>100분의 9(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12)</u>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u>100분의 6(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u>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u>100분의 3(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6)</u> 4) (좌 동) 가) 중소기업의 경우: <u>100분의 10(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12)</u>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u>1000분의 75(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u>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u>100분의 5(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7)</u>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u>100분의 1(사업장이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u>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⑤ (생략)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u>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⑤ (좌 동)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u>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u>

116. 산업위기대응지역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51조

□ [현황] 산업위기대응지역* 및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전력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다수 발의 및 상임위 계류 중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구분(지역산업위기대응법)

대표발의자 (발의일)	세부내용
박성훈(국) (‘25.12)	산업위기선제대응/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이재관(민) (‘26.01)	상동(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외)
정진욱 (‘26.06)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추진

※ 국정과제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 [문제점]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석유화학·철강산업은 전력사용량이 많은 장치산업으로 중국·중동 등 경쟁국 대비 원가경쟁력 지속 악화

○ 정부는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 등의 주력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전환 및 사업재편 추진 중

○ 반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재편 효과 및 기업 경쟁력 회복에 한계 존재

□ [개선방안] 국회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병합·조정하여 산업위기 대응지역 내 산업용 전기요금 중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근거 명시

현 행(전기사업법)	개 선 안
제51조(부담금) <신 설>	제51조(부담금) <중 략> <u>⑧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u>

117. 청주국제공항 민간자본 유치사업 지원 실효성 제고

❖ 소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위원회

❖ 관련 법령 :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8조

□ [현황]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민간 자본 유치 및 민간사업자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

○ 특별법안 제17조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를 규정, 제18조는 민간개발자에 대한 공공시설 점용허가·토지매입 업무 대행·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등의 지원을 규정

*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6, 2025.2.24.) 후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

○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자본 활용을 위해서는 투자비 회수구조의 예측가능성 확보가 중요

□ [문제점] 민간사업자 지원 여부와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의 구체적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성 사전 판단 및 자금조달에 한계

○ 제18조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지원 요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움

*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장기간 투자회수가 필요한 만큼 지원 여부와 수익보완 구조의 불확실성이 PF 등 민간자금 조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가능

○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의 구체적인 부여 규모·산정기준 등이 법률상 제시되지 않음

* 유사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도 관광단지·도시개발·산업단지·주택·택지개발 등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권의 규모·산정 방식까지는 구체화하지 않음

□ [개선방안]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요건과 투자비 회수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제18조에 민간자본 유치사업 지원의 객관적인 요건·절차 및 지원기준을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의 예측가능성 강화

○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의 종류뿐 아니라 투자규모·적정수익·사업위험 등을 고려한 사업권 부여 규모 및 산정원칙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 「공항시설법」 제22조가 국가 귀속 공항시설 투자자에게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투자비 연동기준을 두고 있는 입법례 참고

118. 노인복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 소관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 [현황] 고령자의 주거 대안으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호 필요성 증대

○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에게 주거와 의료·여가·생활지원 등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형 주거시설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위한 대안

○ 입지·시설·서비스 수준 및 비용 부담 방식 등에 따라 보증금 규모가 다양하며, 일부 시설은 고액*의 보증금을 장기간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영

* 의료·여가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해야 하므로 일반 아파트보다 사업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도 높게 형성

□ [문제점] 현행 보호장치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의 적기 반환을 보장하는 데 한계

○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는 입소보증금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보증보험의 최소 가입기준과 가입 예외 등으로 보증금 전액 보호에 한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설치자는 입소보증금 반환을 위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보증가입금액은 입소보증금 합계의 50% 이상이며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가입 예외 인정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반환보증도 보증금 상한, 담보가치 및 상품별 이용요건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어 임대보증금 보호에 한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노인복지주택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나, 가입대상 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로 제한

□ [개선방안] 사업자의 반환책임 강화와 시설 특성에 맞는 보증체계 마련

- 기존 인·허가보증보험의 가입·유지 실태와 보장 범위를 점검하고, 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보증 인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전액 보호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노인복지주택의 계약구조와 보증금 반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증상품 또는 기존 상품의 특례를 검토하고, 실제 보증금 분포·가입 제한 사유·보증위험을 토대로 가입 범위와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
- 이를 통해 고령 입주자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완화하고 노후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노인복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조성

119.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 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관련 법령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 [현황]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구매 예산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 선정

*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유사 물품의 단가계약을 맺어 쇼핑물에
등록하고, 수요기관이 선택·구매하는 제도

** 2단계경쟁 기준금액: 일반 제품 5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 최근 AI 제품은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4배로 올려, 수요기관이 추가
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일반 제품 5천만원→2억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4억원(조달청, '26.8월)

□ [문제점] 장기간 동결된 기준금액이 물품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수요기관의 행정부담이 늘고 제도 현실성 저하

○ (행정부담) 물가·원자재가격 상승으로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하는 구매
건이 늘어 수요기관의 행정부담이 지속 증가

* (예) A사 노트북 평균 계약가격: '12년 110만원 → '26년 229만원

○ (형평성) AI 제품의 기준금액은 대폭 올렸으나, 일반 품목은 ' 12.3월
시행 이후 14년간 기준금액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

□ [개선방안] 물가·조달환경 변화를 반영해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 2억원 이상

○ 그 밖의 제품: 5천만원 → 1억원 이상

현행(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 선 안
제49조(2단계경쟁 대상)	제49조(2단계경쟁 대상)
① (생략)	① (생략)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2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1억원 이상